

# 2016



캘리포니아  
이미용 법률 및  
규정집

## 공 지 사 항

이 출판물은 2016년 1월에 발효된 법률에 따라 개정된 이미용 종사자들의 이해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령 및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 및 전문업법과 캘리포니아 규정집 상의 각 항의 제목은 법률의 일부가 아니며, 참조의 용이성과 편의성을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이 출판물의 정확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으나 이 출판물은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차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2016

## 이미용 법률

및

## 이미용 규정



2016 이미용 법률 및 이미용 규정집의  
재판매를 금지합니다. 모든 사본은 반드시  
무상으로 배포되어야 합니다.

### 디지털 에디션 사용법

목차로 돌아가시려면, 각 페이지  
하단에 있는  를 클릭하십시오.

# 이미용법

##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업법 3절 10장

### 전문업 및 직업 일반

<b>1 조.</b>	<b>관리</b>	
7301.	장의 인용	3
7302.	정의	3
7303.	캘리포니아주 이미용위원회 - 행정관	3
7303.1.	위원회의 최우선 사항 - 공중 보호	4
7303.2.	승인된 연구 및 평가 - 보고	4
7305.	연례 간부의 선출	4
7309.	본부 및 지소	4
7311.	인장	5
7312.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5
7313.	시설, 이동 설비차, 학교에 대한 출입 및 점검 - 위반사항의 통지	5
7314.	기록	6
7314.3.	보건 안전 자문위원회	6
7315.	권한을 행사하는 다수의 힘	6
<b>2 조.</b>	<b>장의 적용</b>	
7316.	이발행위 - 미용 행위	7
7317.	영업을 위한 무면허 이발, 미용 또는 전기분해요법 행위	8
7318.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장애의 경우, 허가 시설 밖에서 이미용 행위 가능	9
7319.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9
7319.5.	학생의 적용 면제	10
7320.	의료 시술 또는는 수술의 승인	10
7320.1.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시술시 금속 기구의 사용	10
7320.2.	엑스레이 장비의 불법 사용	10
7320.3.	미용사 사칭	10



7320.4.	이발사 사칭 .....	10
7320.5.	레이저 치료 경범죄 .....	10
<b>3 조.</b>	<b>시험 자격</b>	
7321.	시험 응시 자격 .....	10
7321.5.	이발사 시험 응시 자격 .....	11
7324.	피부미용사 응시 자격 .....	12
7326.	매니큐어사 응시 자격 .....	12
7330.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응시 자격 .....	13
7331.	타주 지원자의 면허 인정 .....	13
<b>4 조.</b>	<b>도제</b>	
7332.	“도제” .....	14
7333.	도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	14
7334.	이발, 미용, 스킨케어, 네일케어, 또는 전기요법의 도제 면허를 취득한 사람 .....	14
7335.	도제 면허의 만료 .....	15
7336.	도제가 시술을 할 수 있는 요건 .....	15
<b>5 조.</b>	<b>시험</b>	
7337.	공식 지원 요건 - 수수료 .....	15
7337.5.	규정의 채택 - “예비 지원서” 및 면허 시험 .....	16
7338.	시험 내용 .....	16
7340.	시험 준비, 관리와 채점 .....	17
7341.	시험 불합격시 취득 총점의 우편 통지 .....	17
7342.	면허의 교부 .....	17
7344.	시험 시설의 계약 .....	17
7345.	시험 불참과 응시료의 몰수 .....	18
<b>6 조.</b>	<b>시설</b>	
7346.	“시설” .....	18
7347.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 신청 .....	18
7348.	면허 소지자에 대한 시설의 책임 .....	18
7349.	면허 미취득자의 고용 .....	18
7349.1.	불공정 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발소 표시등 불법 사용 .....	19
7350.	주거 목적으로 시설 일부 사용 .....	19
7351.	적절한 시설의 제공과 유지 관리 .....	19
7352.	세수 시설 .....	19



7353.	시설의 규정 준수 점검.....	20
<b>7 조.</b>	<b>이동 설비차</b>	
7354.	시설의 규정 준수 점검.....	20
7355.	면허 신청 .....	20
7356.	소유권 이전과 사용권의 신청 .....	21
7357.	규정의 준수 - 필수 설비.....	21
7358.	면허 소지자에 대한 이동 설비차의 책임.....	22
7359.	면허 미취득자의 고용 .....	22
7360.	주거 목적으로 이동 설비차의 부분 사용 .....	22
7361.	이 장의 규정 적용.....	22
<b>8 조.</b>	<b>학교, 강사 및 커리큘럼</b>	
7362.	“위원회 승인 학교” .....	23
7362.1.	미용학교 승인 요건 .....	24
7362.2.	이발학교 승인 요건 .....	24
7362.3.	전기분해 요법 학교의 승인 요건 .....	24
7362.5.	실습 교육 및 기술 교육 시간 .....	25
7364.	스킨 케어 과정 - 실습 시간 .....	25
7365.	네일 케어 과정 - 실습 시간 .....	25
7366.	전기분해 요법 과정 - 실습 시간.....	25
7367.	학점의 이전 .....	25
7368.	학생의 서비스를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정 .....	25
7389.	위험 물질에 대한 보건 안전 과정 .....	25
7389.5.	연방 또는 주립 교정 당국에서 개설한 이발 과정 또는 미용 과정 .....	26
7395.1.	미용 시설의 인턴 .....	26
<b>9 조.</b>	<b>(보류)</b>	
<b>10 조.</b>	<b>면허</b>	
7396.	면허의 형식과 내용 .....	28
7396.5.	감호 처분된 면허 .....	28
7397.	면허증의 게시 .....	29
7398.	면허증의 재발급.....	29
7399.	임시 면허 .....	29



7400.	면허 갱신 시 필요한 정보.....	29
7401.	면허 갱신 시 필요한 정보.....	29
7402.	이 장의 규정 위반.....	30
7402.5.	개인적인 서비스 허가증.....	30
<b>11 조.</b>	<b>징계 절차</b>	
7403.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거절.....	31
7403.2.	면허의 일시 정지와 감호 처분된 면허 기간, 회복.....	32
7403.5.	보건 및 안전 규정 위반 시 시설의 폐쇄.....	33
7404.	징계 조치의 사유.....	34
7404.1.	이 장의 규정 위반.....	35
7405.	“유죄 판결” - 면허에 대한 영향.....	35
<b>12 조.</b>	<b>행정 벌금 및 과태료 통지서</b>	
7406.	위반에 대한 행정 벌금의 부과.....	36
7407.	행정 벌금의 요율표.....	36
7408.	소환.....	36
7409.	위반의 시정.....	36
7410.	징계재심위원회에 이의신청.....	37
7411.	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7
7413.	이의신청의 시기 - 최종 결정.....	37
7414.	행정 벌금 미납의 영향.....	38
<b>12.5 조.</b>	<b>태닝 시설</b>	
7414.1.	1988 필란테 태닝 시설법(Filante Tanning Facility Act)에 의거하여 보존 해야하는 점검 기록.....	38
7414.2.	1988 필란테 태닝 시설법의 위반 행위가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처벌.....	38
7414.3.	출석 통지서 발부 권한 -발부 책임.....	39
7414.4.	시설을 대상으로 한 1988 필란테 태닝 시설법(Filante Tanning Facility Act) 준수에 관한 정보 배포.....	39
7414.5.	주의 적용 범위.....	39
7414.6.	규정의 채택.....	39





**13 조. 수입**

7415. 면허 만료 ..... 39

7417. 만료된 면허 갱신 기간 ..... 39

7418. 취소된 면허 ..... 40

7419. 정지된 면허의 갱신 ..... 40

7420. 취소된 면허의 만료 ..... 40

7421. 수수료의 결정 ..... 40

7422. 수수료 관련 회계 감사관에게 보고 ..... 40

7423. 수수료 ..... 41

7424. 시설 운영과 관련된 수수료 요율표 ..... 42

7425. 이동 설비차와 관련된 수수료 요율표 ..... 42

7426. 면허 재발급 수수료 ..... 42

7426.5. 처리 직무 기준 수수료 종별 분류 -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의  
물수 ..... 42

**1.5절.**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업법 1.5절 1장**

**면허의 거절, 일시정지 및 취소**

**1 장. 일반 규정**

475. 절의 적용 ..... 43

476. 면책 ..... 43

477. “위원회” 및 “면허” ..... 43

478. “신청서” 및 “자료” ..... 44

**2 장. 면허의 거절**

480. 거절의 근거 및 재할 증명서 취득의 효력 ..... 44

480.5. 면허 교부의 신청 - 수감의 경우 ..... 45

481. 범죄 및 직업 적합성 기준 ..... 45

482. 재할 기준 ..... 45

484. 신청자의 도덕성 증명 ..... 45

485. 면허 거절 시 절차 ..... 46

486. 결정 또는 통지의 내용 ..... 46

487. 청문 및 시간 ..... 46

488. 청문 요청 ..... 47



489. 청문 없이 신청의 거부 ..... 47

**3 장. 면허의 정지 및 취소**

490.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 ..... 47

490.5.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 불이행 시 면허의 일시 정지 ..... 48

491.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절차 ..... 48

492. 징계 조치 또는 면허 거절에 대한 약물 치료 프로그램의 영향 48

493. 비도덕적 범죄 유죄 판결 기록의 증거 효과 ..... 49

494. 일시 정지 또는 제한 명령 ..... 49

494.5. 면허 소지자가 확인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을 때 기관의 조치, 정의, 확인 명단 정보의 수집과 배포, 시기, 통지, 응시자와 면허 소지자의 이의제기, 배포 양식, 기관 간의 협정, 수수료, 구제 수단, 정보에 대한 문의와 정보 공개, 법규정의 분리가능성... 52

494.6. 노동법 위반 - 면허증 관련 처벌의 근거 ..... 59

**4 장. 공개 견책**

495.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정지나 취소의 근거를 구성하는 면허 취득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행위에 대한 공개 견책 및 법적 절차 ..... 59

**5 장. 시험의 보안**

496. 면허의 거절, 취소 또는 취소의 사유 ..... 59

498. 면허 관련 처벌 조치의 사유로서 사기, 기만, 또는 허위 사칭 .60

499. 타인의 신청 관련한 면허 취득자의 행위에 따른 면허 관련 처벌 조치 ..... 60



# 이미용 규정

## 캘리포니아 규정집 16편 9절

### 이미용위원회

<b>1 조.</b>	<b>관리</b>	
901.	시험 신청 및 면허의 처리 시간	62
902.	도제 신청의 처리 시간	62
903.	시설 신청의 처리 시간	63
904.	시행	64
905.	소비자 정보 메시지의 게시	64
<b>2 조.</b>	<b>시험 자격</b>	
909.	교육 이수 증명서	65
910.	타주의 신청자	66
<b>3 조.</b>	<b>도제 프로그램</b>	
913.	도제 교육 프로그램의 승인	67
913.1.	승인의 취소: 도제 프로그램 스폰서	68
914.	도제 프로그램 신청서 제출 및 처리 시간	69
914.1	도제 신청 접수 및 신청 자격	70
914.2	도제 신청 접수 및 재등록	70
915.	관련 교육	70
916.	교육 시간 및 일정	71
917.	예비 도제 교육	72
918.	도제 교육 강사의 행위 범위	72
919.	위원회 승인 강사 및 시설	72
920.	도제 훈련의 기록	74
921.	이발사 도제 과정의 커리큘럼	74
921.1.	미용사 도제 과정 커리큘럼	76
921.2.	전기분해요법 과정 커리큘럼	79
922.	전학 또는 전과	81
923.	면허의 반납	81



924.	도제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82
925.	교사 책임에 대한 진술	82
926.	사전 교육의 도제 학점	83
<b>4 조.</b>	<b>시험</b>	
928.	시험의 예비지원서	83
931.	통역사 및 통역사/모델	85
932.	시험의 합격 점수	86
934.	시험 점수 이의신청	87
<b>5 조.</b>	<b>이동 설비차</b>	
937.	면허 교부 및 운영	87
<b>6 조.</b>	<b>학교</b>	
940.	미용 학교의 장비	88
941.	학교의 승인	90
<b>7 조.</b>	<b>평생 교육</b>	
950.1.	이발사 과정의 커리큘럼	90
950.2.	미용 과정의 커리큘럼	92
950.3.	스킨케어 과정의 커리큘럼	96
950.4.	네일케어 과정의 커리큘럼	98
950.5.	전기분해요법 과정의 커리큘럼	100
950.10.	특수 면허와 교육 전과에 대한 학점	102
950.12.	유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업무 수행	103
961.	온라인 교육과 교재 및 학생용 참고서	104
<b>8.5 조.</b>	<b>인턴 프로그램</b>	
962.	정의	104
962.1.	미용 인턴 프로그램의 참여 통지	105
962.2.	코칭된 학교 신분증	106
<b>9 조.</b>	<b>면허</b>	
965.	면허증의 게시	106



<b>10 조.</b>	<b>징계 절차</b>	
969.	특정 직무의 위임 .....	107
970.	밀접한 관련성 기준 .....	107
971.	재활의 기준 .....	107
972.	징계 지침 .....	108
973.	즉각적 정지의 사유 .....	109
973.1.	즉각적인 정지 절차 .....	109
973.2.	즉각적 정지 통지서의 내용 .....	109
973.3.	감호 기간 및 조건 .....	110
973.4.	교정 교육 .....	110
973.5.	교정 교육 과정의 승인 .....	110
973.6.	이의신청 과정 .....	111
<b>11 조.</b>	<b>행정 벌금 및 과태료 통지서</b>	
974.	행정 벌금 요율표 .....	112
974.1.	징계재심위원회 .....	116
974.2.	징계재심위원회에 이의신청 .....	116
975.	합당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 .....	117
976.	소환 및 무면허 활동 .....	118
<b>12 조.</b>	<b>보건 및 안전</b>	
977.	보건 및 안전 관련 용어의 정의 .....	118
978.	최소 장비 및 용품 .....	119
979.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의 소독 .....	120
980.	전기 기구의 소독 .....	121
980.1.	월풀 풋스파와 공기방울 족욕기 청소와 살균 절차 .....	121
980.2.	파이프 없는 풋스파의 청소 및 소독 절차 .....	123
980.3.	월풀이 아닌 발대야 또는 발욕조의 청소 및 소독 .....	124
980.4.	일회용 발대야 또는 발욕조용 라이너 .....	125
981.	기구 및 용품 .....	126
982.	전기분해 요법 기구의 살균 .....	126
983.	개인 청결 .....	127
984.	질병 및 감염 .....	127
985.	넥스트립 .....	128
986.	목털이개 및 브러시 .....	128
987.	수건 .....	128



988.	액체 용품, 크림, 파우더, 화장품 .....	129
989.	금지된 유해 물질/제품의 사용 .....	129
990.	머리받이, 샴푸트레이, 대야 및 트리트먼트 테이블 .....	130
991.	침습적 시술 .....	130
992.	피부 각질제거 .....	130
993.	금지된 기구 .....	131
994.	청결 및 유지보수 .....	131
995.	건물 표준 .....	131
998.	수수료 요율표 .....	132
<b>13 조.</b>	<b>수입</b>	
999.	부도 수표에 대한 수수료 .....	133



# 이미용법

50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업법 3절 10장**

**및**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업법 1.5절 1장**

**2016년 1월까지의 수정 조항 포함**







# 10 장 이미용

## 1 조. 관리

### 7301. 장의 인용

이 장은 머리, 피부, 손톱 관리 및 전기분해요법에 관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용법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미용법이라고 인용 될 수 있다.

### 7302.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 (a) “당국”은 소비자국을 의미한다.
- (b) “국장”은 소비자국의 국장을 의미한다.
- (c) “위원회” 또는 “협회”는 캘리포니아주 이미용위원회를 의미한다.
- (d) “행정관”은 캘리포니아주 이미용위원회 행정관을 의미한다.

### 7303. 캘리포니아주 이미용위원회 - 행정관

(a) 캘리포니아 주 법률 2편, 2절, 1부, 1.5장, 8조(9148 항에서 시작)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국 산하에 이 장의 행정 권한이 부여된 캘리포니아 이미용위원회를 둔다.

(b) 이미용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명은 공익 위원이며 4명은 업계 종사자를 대표한다. 주지사가 3 명의 공익 위원과 4명의 업계 대표를 임명한다. 규칙에 관한 상원 위원회와 의회 의장이 각각 1 명의 공익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다만 주지사가 임명한 2 명의 공익 위원과 2 명의 업계 대표의 초임 임기는 2년이다. 모든 위원은 연속적으로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c) 위원회는 공직에 종사하지 않는 행정관을 임명해야 한다. 행정관은 위원회에서 위임하고 이 장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의무를 수행한다. 행정관은 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새로 승인된 위원회로 기존 또는 이전 위원회가 교체될 경우 국장은 새 위원회가 행정관을 임명할 때 까지 임시로 행정관직을 수행할 임시 행정관을 임명할 수 있다.



(d) 행정관은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심사관과 검사관 및 기타 인원을 임명한다.

(e) 이 항은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추후 발효된 법, 즉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된 법률에서 이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2020년 1월 1일부로 폐기된다.

**7303.1. 위원회의 최우선 사항 - 공중 보호**

이미용위원회가 허가, 규제, 및 징계 직무를 수행할 때 최우선 사항은 공중의 보호이다. 공중 보호와 그 외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공중의 보호가 항상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7303.2. 승인된 연구 및 평가 - 보고**

위원회는 다음의 평가를 수행하고 2018년 11월 1일까지 결과와 권고안을 의회 사업 및 전문업 위원회, 상원 사업, 전문업 및 경제개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a) 위원회는 139항에 의거하여, 1,600 시간의 미용사 교육 요건을 검토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미용업에 대한 직업적인 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국가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이 캘리포니아 미용사를 위해서 중요한 기술에 대한 평가에 적합한지 또한 전문적인 시험 기준에 맞는지 평가하기 위해 두 시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b) 만약 2016년 1월 1일까지 스페인어 사용자의 합격률이 2016년 1월 이전 2년 동안 다른 언어 시험의 평균 합격률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위원회는 스페인어 시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7305. 연례 간부의 선출**

매년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해야 하며 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임원은 두 번까지만 특정 임원직에 연임할 수 있다.

**7309. 본부 및 지소**

위원회는 본부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소와 시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7311. 인장**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록의 진위를 명시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인장을 채택하고 사용해야 한다.

**7312.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수행해야 한다.

- (a)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이 장을 보충 또는 이행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한다.
- (b) 면허 지원자의 시험을 실시하고 관리한다.
- (c) 그에 따라 자격이 있는 지원자에게 면허를 교부한다.
- (d) 이 장 또는 이장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징계한다.
- (e) 이 장에 규정된 시설과 위원회가 인가한 학교에서 또한 이 장에 규정된 직종의 종사자의 업무 수행에서, 공중 보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위생 조건과 예방 조치에 관한 규칙을 채택한다. 이 규칙은 주정부 법전 2편 3.5장(11340 항에서 시작)의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제정되어야 하고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주주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모든 규칙의 사본은 각 면허 소지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7313. 시설, 이동 설비차, 학교에 대한 출입 및 점검 - 위반사항의 통지**

(a)(1) 이 장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행정관과 공식 담당관은 159.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 시간 또는 이발 또는 미용 전기 분해 요법이 수행되는 시간에 시설 또는 이동 설비차에 출입하고 점검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단체 협약과 공부 규정에서 허용할 경우 주중 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주 의회의 취지이다.

(2) 위원회는 공중 보건 안전과 시설의 행위와 운영에 관한 해당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설에 대한 무작위 표적 검사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해당 공식 담당관은 시설 점검을 통해서 규제 준수 수준을 합리적으로 확인하고, 표적 집행이 필요한 시장 상황을 식별해야 한다. 위원회는 현장 운영과 관련해서 무작위 검사, 표적 검사, 조사 활동에 배정된 직원 수를 당해 예산법에 의거하여 배정되고 해당 예산서에 명시된 수준 이하로 감축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검사 및 조사 목적에 배정된 자금 또는 인원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b) 위원회가 채택한 보건 및 안전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관과 공식 담당관은 159.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발, 미용, 전기분해요법이 시행되는 모든 학교와 그 건물에 출입권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고객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의 위반시 해당 위반 사항을 학교에 통지해야 한다. 각 통지서에는 위반 조항과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위반 통지서의 사본을 사립 중고등 이후 교육 및 직업 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and Vocational Education)에 제출해야 한다.

(c)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또는 행정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위원 자격으로 영업 시간 또는 이발 또는 미용, 전기분해요법이 수행되는 시간에 언제든지 모든 시설에 출입하고 방문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의 방문은 위원회 공식 업무 수행이 목적이어야 하며 위원회의 면허 관련 징계 조치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d) 검사관이 시설의 소유주나 매니저 또는 직원과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위원회는 시설 점검을 위한 규약을 채택한다. 위원회는 매 2년마다 규약을 점검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7314. 기록

위원회는 공청회,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관한 기록과 면허의 교부, 거절, 갱신, 정지, 취소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름, 주소, 면허 면허, 발급 일자가 기재된 각 면허의 등록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기록에는 면허 시험 지원서에 지원자가 기재한 모든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 7314.3. 보건 안전 자문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 앞에서 보건 안전 문제에 관한 권고와 추천을 수행하는 보건 안전 자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 7315. 권한을 행사하는 다수의 힘

위원회의 다수가 베글리킨 공개회의법(Bagley-Keene Open Meeting Act)에 따라 적절하게 통지된 모든 회의에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2 조 장의 적용

### 7316. 이발행위 - 미용 행위

(a) 이발 행위는 다음 행위 전체 또는 그 조합이다.

(1) 면도, 턱수염 손질, 헤어 커팅.

(2) 손이나 기계적 기구를 사용하는 얼굴과 두피 마사지 또는 손이나 기계적 기구를 사용하여, 오일, 크림, 로션 또는 기타 재료를 바르는 얼굴과 두피 트리트먼트.

(3) 잔털을 태워 제거하기(Singeing), 샴푸, 머리 정리, 헤어드레싱, 컬링, 웨이빙, 파마, 헤어릴렉싱, 머리 염색, 헤어토닉 바르기.

(4) 화장품, 향균제, 파우더, 오일, 머드, 로션을 두피, 얼굴, 또는 목에 바르기.

(5) 헤어스타일링 당시 유행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모든 질감의 헤어 스타일링.

(b) 미용행위는 다음 행위 전체 또는 그 조합이다.

(1) 머리 정리, 헤어드레싱, 컬링, 웨이빙,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웨이빙, 파마, 클린징, 커팅, 샴푸, 헤어릴렉싱, 잔털을 태워 제거하기(Singeing), 탈색, 턴틴, 컬러링, 스트레이트닝, 염색, 헤어토닉 바르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헤어를 아름답게 하거나 손질하는 행위.

(2) 화장품, 향균제, 로션 또는 크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손 또는 장치, 기구, 기기로 사람의 두피, 얼굴, 목, 팔, 또는 상반신을 마사지, 세정, 자극하는 행위.

(3) 화장품, 향균제, 토닉, 로션, 크림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 목, 팔 또는 상반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행위.

(4) 보통 레이저라고 알려진 광파의 사용을 제외하고, 제모제, 족집게, 화학약품, 조제약품, 장치, 또는 모든 유형의 기기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인체의 체모를 제거하는 행위.

(5) 사람의 손발톱 깎기, 다듬기, 광내기, 턴팅, 컬러링, 세정 또는 매니큐어.

(6) 사람의 손발 마사지, 세정, 트리트먼트 또는 미용 행위.

(c) 미용 영업에는 스킨케어와 네일케어라는 전문 분야가 있다.

(1) 스킨케어는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행위이다.

(A) 사람을 대상으로 페이스케어, 화장, 스킨케어, 또는 제모제, 족집게, 왁싱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체모를 제거하는 행위 또는 속눈썹 붙이기.



(B) 화장품, 향균제, 토닉, 로션, 크림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 목, 팔 또는 상반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행위.

(C) 화장품, 향균제, 로션 또는 크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손 또는 장치, 기구, 기기로 사람의 두피, 얼굴, 목, 팔, 또는 상반신을 마사지, 세정, 자극하는 행위.

(2) 네일케어는 사람의 손발톱 깎기, 다듬기, 광내기, 튜닝, 컬러링, 세정 또는 매니큐어, 페디큐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또는 무릎에서 발가락 끝까지의 마사지, 세정, 미용 행위.

(d) 다음은 이발과 미용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가발 또는 헤어피스의 단순한 판매, 피팅, 또는 스타일링.

(2) 자연모 브레이딩. 자연모 브레이딩은 머리카락 꼬기, 감싸기, 엮기, 헤어연장, 머리 땀기 등으로, 손 또는 기계적 기구를 사용해서 머리카락 또는 모근을 팽팽하게 효과를 주는 서비스이며, 이 서비스에는 염색약, 반응성 화학약품, 또는 기타 조제 약품을 사용해서 헤어커팅, 염색, 스트레이트, 컬링, 또는 머리 구조를 바꾸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실면도. 실면도는 불필요한 털 주위에서 실을 꼬은 다음 당겨서 털을 제거하고 부수적으로 눈썹을 정리하는 기술이다.

(e) (d)호의 (2)목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이발 또는 미용 행위에서 정의된 서비스나 시술과 함께 헤어 브레이딩 서비스 규정에서 정의된 헤어 스타일링을 하는 사람은 이 장에 따른 규정이 적용되며, 제공하거나 수행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이발 또는 미용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f) 전기분해요법은 전기침을 사용하여 털을 제거하거나 모근을 제거하는 행위이다.

이 장에서 말하는 “전기분해요법”은 전기분해요법 또는 열분해요법을 포함한다.

**7317. 영업을 위한 무면허 이발, 미용 또는 전기분해요법 행위**

2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또는 회사와 법인이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즉 만료되지 않은 면허 없이 또는 위원회에서 면허를 발급한 장소 이외의 시설이나 이동 설비차에서 이발, 미용, 또는 전기 분해요법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이 장에 의거하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이발, 미용, 또는 전기 분해요법의 행위를 하는 시설 또는 기타 영업 장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장에 의거하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 해당 지역에서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 벌금이 부과되고 경범죄로 처벌 될 수 있다.



**7318.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장애의 경우, 허가 시설 밖에서 이미용 행위 가능**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 시설의 목적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이미용 행위를 할 경우에, 이 장에서 규정한 이미용 행위를 허가 시설의 밖에서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7319.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다음 사람은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a)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근거하여 의료, 외과, 치과, 약국, 정골의학, 카이오프랙틱, 자연요법, 족의학, 간호 행위를 인가 받은 모든 사람 또는 이와 같은 면허를 받은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
- (b) 미국 육군, 공군, 해병대의 장교, 미국 공중위생국 직원 및 그들의 공식 임무 수행중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직원.
- (c) 연극,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영화 제작 사업 분야에서 일하는 고용주의 사업상 또는 그 사업에 부수적인 필요에 의하여 이발, 미용, 및 전기분해요법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고용된 사람.
- (d) 보수없이 허가 시설 외부에서 이미용 행위를 할 때 그 범위 내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
- (e) 헤어, 스킨, 네일 제품을 추천하거나 시연 또는 판매 목적으로만 헤어, 스킨, 네일 제품을 다루는 사람.
- (f) 피수용자, 죄수, 범죄 용의자의 감금 또는 구속시, 감금 또는 구속에 관련된 부수적인 기관의 프로그램에 따라 이발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하지만,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1) 그러한 사람은 교정국에서 개발하고 소비자국에서 승인한 교육 과정을 통해 기구의 적절한 관리와 전염병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2) 그러한 사람은 교정국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구의 적절한 관리와 전염병 방지에 관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3) 교정 기관에 설치된 모든 이용 시설은 교정국에서 정한 적절한 보건 안전 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7319.5. 학생의 적용 면제**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에 재학중 학생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재학중인 승인받은 학교에서 해당 서비스를 수행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7320. 의료 시술 또는 수술의 승인**

이 장에서는 의료 또는는 수술 행위를 승인하지 않는다.

**7320.1.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시술시 금속 기구의 사용**

매니큐어나 페디큐어 시술시, 손발톱이나 각피 자르기, 다듬기,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에 필요한 금속 기구 또는 손과 발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마사지하는데 필요한 금속 기구를 제외하고 금속 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7320.2. 엑스레이 장비의 불법 사용**

면허 소지자가 사람의 치료 또는 얼굴이나 몸의 불필요한 털을 제거할 목적이나 의도로 엑스레이기기, 기구, 기계를 사용하거나 10 퍼센트 이상의 페놀 용액, 부식성 승화물 (수은), 또는 해당 재료를 이용한 조제물, 파생물, 또는 1/500 이상으로 용해시킨 화합물을 인체에 바르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7320.3. 미용사 사칭**

미용사의 모든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미용사라고 칭할 수 없다.

**7320.4. 이발사 사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발사의 모든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이발사라고 칭할 수 없다.

**7320.5. 레이저 치료 경범죄**

면허 소지자가 사람의 치료에 레이저를 사용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3 조  
시험자격**

**7321. 시험 응시 자격**

위원회는 해당 지원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장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지불한, 다음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미용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미용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 한다.





- (a) 17세 이상.
- (b)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을 마쳤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 (c) 480 항의 거절 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
- (d) 다음 중 하나를 마친 사람
  - (1) 위원회에서 승인한 학교에서 미용 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위원회가 채택한 요건에 따른 커리큘럼의 미용 과정을 이수한 유자격자에게 학교에서 받는 교육과 훈련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캘리포니아주 이외의 지역에서 이 장에서 정의한 미용 행위를 수행한 사람. 이러한 행위를 수행한 때 3개월은 각각 이 호의 (1) 목에 규정된 자격 취득을 위한 훈련 100 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캘리포니아주의 이발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용 교차과정을 이수한 사람.
  - (4)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에서 이발사 과정을 이수하고, 미용 교차과정을 이수한 사람.
- (5) 4조 (7332 항에서 시작)에 규정된 미용 도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7321.5. 이발사 시험 응시 자격**

위원회는 해당 지원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장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지불한, 다음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이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이발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 한다.

- (a) 17세 이상.
- (b)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을 마쳤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 (c) 480 항의 거절 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
- (d) 다음 중 하나를 마친 사람.
  - (1) 위원회에서 승인한 학교에서 이발 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1939 셸리말로니 도제노동기준법(Shelley-Maloney Apprentice Labor Standards Act of 1939)과 노동법 3절 4장(3070항에서 시작)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도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3) 위원회가 채택한 요건에 따른 커리큘럼의 미용 과정을 이수한 유자격자에게 학교에서 받는 교육과 훈련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캘리포니아주 이외의 지역에서 이 장에서 정의한 이발 행위를 수행한 사람. 이러한 행위를 수행한 때 3개월은 각각 이 호의 (1) 목에 규정된 자격 취득을 위한 훈련 100 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캘리포니아주의 미용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발 교차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에서 미용사 과정을 이수하고, 이발 교차과정을 이수한 사람.

(6) 군경력 및 훈련 인증서(V-MET)의 제출로 입증되는 동등한 군사훈련을 이수한 사람.

**7324. 피부미용사 응시 자격**

위원회는 해당 지원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장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지불한, 다음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피부관리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피부미용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 한다.

(a) 17세 이상.

(b)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을 마쳤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c) 480 항의 거절 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

(d) 다음 중 하나를 마친 사람.

(1) 위원회에서 승인한 학교에서 스킨케어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위원회가 채택한 요건에 따른 커리큘럼의 스킨케어 과정을 이수한 유자격자에게 학교에서 받는 교육과 훈련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캘리포니아주 이외의 지역에서 이 장에서 정의한 스킨케어 행위를 수행한 사람. 이러한 행위를 수행한 때 3개월은 각각 이 호의 (1) 목에 규정된 자격 취득을 위한 훈련 100 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4조 (7332 항에서 시작)에 규정된 스킨케어 도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7326. 매니큐어사 응시 자격**

위원회는 해당 지원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장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지불한, 다음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네일케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매니큐어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 한다.

(a) 17세 이상.

(b)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을 마쳤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c) 480 항의 거절 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

(d) 다음 중 하나를 마친 사람.

(1) 위원회에서 승인한 학교에서 네일케어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위원회가 채택한 요건에 따른 커리큘럼의 네일케어 과정을 이수한 유자격자에게 학교에서 받는 교육과 훈련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캘리포니아주 이외의 지역에서 이 장에서 정의한 네일케어 행위를 수행한 사람. 이러한 행위를 수행한 때 3개월은 각각 이 호의 (1) 목에 규정된 자격 취득을 위한 훈련 100 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4조 (7332 항에서 시작)에 규정된 스킨케어 도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7330.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응시 자격**

위원회는 해당 지원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장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지불한, 다음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전기분해요법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전기분해요법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 한다.

- (a) 17세 이상.
- (b)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을 마쳤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 (c) 480 항의 거절 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
- (d) 다음 중 하나를 마친 사람

- (1) 위원회에서 승인한 학교에서 전기분해요법 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위원회가 채택한 요건에 따른 커리큘럼의 네일케어 과정을 이수한 유자격자에게 학교에서 받는 교육과 훈련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인 18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주 이외의 지역에서 이 장에서 정의한 전기분해요법 시술 행위를 수행한 사람. 이러한 행위를 수행한 때 3개월은 각각 이 호의 (1) 목에 규정된 자격 취득을 위한 훈련 100 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4조 (7332 항에서 시작)에 규정된 스킨케어 도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7331. 타주 지원자의 면허 인정**

위원회는 지원자가 다음의 모든 항목을 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지원자에게 면허를 교부해야 한다.

- (a) 작성 완료한 지원서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수료.
- (b)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주에서 발급한 면허 발급 증명서.
  - (1) 면허 취소, 정지, 또는 다른 제한 사항이 없다.
  - (2) 면허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 (3) 지원자가 징계 조치 또는 형사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기간 중에서 최근 3년간 면허가 유효하였다.



## 4 조 도제 프로그램

### 7332. “도제”

도제는 위원회에서 승인한 면허 소지자의 감독 아래 미발, 미용, 스킨케어, 네일케어, 전기분해요법을 배우거나 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면허를 위원회로부터 받은 사람이다.

### 7333. 도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도제 교육 프로그램은, 1939캘리포니아주 도제 노동기준법 3절 4장(3070 항에서 시작)에 의거하여, 도제 교육 프로그램 관리자가 승인한 도제 교육 프로그램 표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법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 7334. 이발, 미용, 스킨케어, 네일케어, 또는 전기요법의 도제 면허를 취득한 사람

(a) 위원회는 해당 지원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장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지불한, 다음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이발, 미용, 스킨케어, 네일케어의 도제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1) 16세 이상.

(2)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을 마쳤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3) 480 항의 거절 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

(4) 위원회가 승인한 면허 소지자의 감독 아래 면허가 교부된 시설에서 법률로 규정된 도제가 이수해야 할 교육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사람.

(b) 위원회는 해당 지원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장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지불한, 다음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전기분해요법의 도제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1) 17세 이상.

(2)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12학년을 마쳤거나, 인가 받은 고등학교의 학업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3) 480 항의 거절 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

(4) 위원회가 승인한 면허 소지자의 감독 아래 면허가 교부된 시설에서 법률로 규정된 도제가 이수해야 할 교육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사람.

(c) 이발 도제에 지원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일반 대중에게 이발 행위를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승인된 시설에서 예비 도제 교육을 최소 39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d) 미용, 스킨케어, 네일케어, 또는 전기분해요법 도제에 지원하는 모든 사람은 일반 대중에게 해당 행위를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승인된 시설에서 최소 예비 도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 도제는 기술 교육을 받은 서비스만 일반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f) 도제는 노동법 3074항 과 3078 항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면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각 과목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각 최소 시간과 최소 횟수 이상 이수해야 한다.

**7335. 도제 면허의 만료**

(a) 도제 면허가 교부된 날로부터 2년 후 또는 도제가 면허 시험에 응시한 후 면허를 교부받은 날이나, 도제가 면허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두 번째 시험 성적이 발표된 날에 만료된다.

(b) 도제 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면허 시험에 지원하여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경우,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후 3개월이상 근무할 수 없다.

(c) 위원회는 도제의 질병이나 미국 군대 복무에 따른 시험 신청과 응시의 지연을 포함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그러나 이에 국한 하지 않고 (a) 및 (b) 호에 명시된 2년 또는 3개월이라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336. 도제가 기술을 할 수 있는 요건**

도제는 오직 허가 시설에서, 위원회에서 승인한 면허 소지자가 직원인 상태에서, 면허소지자의 감독 아래에서만 면허를 받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5 조  
시험**

**7337. 공식 지원 요건 - 수수료**

모든 시험 및 면허 교부 신청은 서면으로, 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서 작성해야 한다.

각 신청서에는 규정된 수수료가 있으며 시험 및 면허 교부 지원자의 자격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지원서는 지원자의 서약으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되어야 한다. 모든 지원자는 시험장에 입장하기 위해서 합당한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합당한 신분 증명서는 유효하고 아직 만료되지 않은 운전 면허증 또는 주정부, 연방 정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고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이어야 한다.



**7337.5. 규정의 채택 - “예비 지원서” 및 면허 시험**

(a) 위원회는 필수 과정 수업 시간과 커리큘럼 필수 과목을 75퍼센트 이상 (매니큐어사 과정 학생의 경우 60 퍼센트) 이수한, 허가받은 미용, 전기분해요법, 또는 이발 학교의 학생과, 필수 도제 교육 시간의 75 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이발, 미용, 스킨케어, 네일케어 도제 면허 취득자의 시험 지원서 제출에 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지원자가 시험을 보기 전에 모든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있다.

(b) 이 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미용, 전기분해요법, 또는 이발 학교 학생이 제출하는 시험 지원서는 “학교 예비 지원서” 라고 칭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예비 지원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c) 이발, 미용, 스킨케어, 또는 네일케어의 도제 면허 소지자의 시험 지원서는 “도제 예비 지원서” 라고 칭하며 추가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d) 위원회는, 예비 지원 절차에 따라, 시험 지원서를 제출한 학생은, 승인을 받은 미용, 전기분해요법, 이발 학교 졸업 후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또는 도제 면허 소지자의 경우, 승인 받은 이발, 미용, 스킨케어, 네일케어 도제 프로그램 이수 후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면허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7338. 시험 내용**

면허 지원자의 시험은 실기와 필기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승인한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험은 특정 시스템이나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시험은 실용적 요구와 기술적 요구를 모두 반영하여야 하며, 지원자는 면허의 대상인 직업의 행위 또는 직업의 기술과 지식 면에서 위원회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야 한다.



시험의 실시와 채점에서 필기보다 실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시험의 범위는 이 장에서 규정된 면허 행위의 정의와 일치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하는 바를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시험은 명확히 직업 관련 문제, 행위, 실질적 서비스로 한정되어야 한다. 시험에는 이발, 미용, 전기분해요법 행위에 사용되는 기계적인 기구와 전기 기구의 사용, 소독, 살균, 위생에 관한 필기 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실기와 테스트가 시험에 포함될 수 있다.

**7340. 시험 준비, 관리와 채점**

모든 시험은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준비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관리와 채점에 관한 표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준수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7341. 시험 불합격시 취득 총점의 우편 통지**

위원회는 이장에서 규정한 시험에 불합격한 모든 사람에게 시험 총점을 우편 등의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불합격한 지원자는 시험 성적이 발표된 후 90일 이내에 시험을 본 도시에서 본인의 시험지를 검사할 권리를 가진다.

**7342. 면허의 교부**

위원회는 시험에 합격한 지원자, 법에서 요구하는 다른 자격증의 소지자, 이장에서 규정한 면허 수수료를 송금한 지원자에게 해당 직업 행위를 승인하는 면허증을 교부해야 한다. 면허는 면허를 받은 시설에서만 해당 직업 행위를 할 권리를 소지자에게 부여한다. 위원회는 지원자가 시험에 합격한 당일 날에 면허를 교부해야 한다.

**7344. 시험 시설의 계약**

위원회는 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합당한 건물과 시설을 계약하거나 예약할 수 있다.



**7345. 시험 불참과 응시료의 몰수**

지원자가 지원서 접수 후 1년 이내에 지원을 완료하지 않거나, 시험 자격을 갖춘 후 1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때 그 지원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되며 수수료는 몰수된다. 지원의 포기 후에 제출하는 지원서는 새로운 지원서로 취급되며, 최초 면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 조  
시설**

**7346. “시설”**

- (a) 이 장의 목적상 “시설” 이라고 함은 이 장에서 규정한 면허 행위가 실행되는 모든 구내, 건물, 또는 그 건물의 일부를 말한다.
- (b) “시설” 에는 또한 보수를 받고 헤어스타일링이 실시되는 구내, 건물, 또는 그 건물의 일부가 포함된다.

**7347.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 신청**

시설을 운영하려는 모든 개인, 회사, 법인은 위원회에 면허를 신청해야 하며, 면허신청 시 이 장에서 규정하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이 새로운 시설을 운영하거나 기존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모두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가 기존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 장에서 규정한 수수료보다 적은 수수료 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신청자, 신청자가 개인이 아닐 경우, 각 임원, 이사, 파트너는 480 항에 의거하여, 새로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면허 교부 거절의 사유가 되는 행위 또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교부된 면허로 면허가 교부된 장소에 있는 시설만 운영 할 수 있다. 이전 면허 교부와 동일하게 이 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다른 장소의 시설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새 장소에 있는 시설의 운영은 불법이다.

**7348. 면허 소지자에 대한 시설의 책임**

항상 시설은 도제를 제외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관리하여야 한다.

**7349. 면허 미취득자의 고용**

모든 개인, 회사, 법인이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이 장에서 규정된 직업 행위를 시설에서 하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러한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근무를 허락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단 면허를 취득한 미용 시설이 7395.1 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 인턴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항을 위반한 사람은 7406 항에 따라 소환과 벌금의 처분을 받으며 그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7349.1. 불공정 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발소 표시등 불법 사용**

이 장에서 규정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회사, 법인이 이발소 표시등이라고 알려진, 줄무늬가 있는 세로 원통으로 상단에 구가 있는, 전통적 상징물을 이발 행위가 실행되고 있거나 면허를 취득한 이발사를 고용하지 않은 시설에서 면허를 취득한 이발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믿도록 대중을 오도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상행위이다.

**7350. 주거 목적으로 시설 일부 사용**

소유자이든 종업원이든 이동 설비차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장에서 규정한 직업 활동을 영위하거나 행위를 실행하는 모든 공간 또는 일부를 주거 목적 또는 비위생적으로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하게 하거나, 이용하는 공중일반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시설에는 개인 숙소와 연결된 출입구와 별도로 분리된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이 항의 위반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7351. 적절한 시설의 제공과 유지 관리**

모든 시설은 구내에 또는 가까운 곳에 하나 이상의 고객용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1992 년 7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설치한 화장실은 면적이 18ft<sup>2</sup> (1.67m<sup>2</sup>) 이상이어야 한다. 화장실 출입구는 화장실 칸막이가 작업실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려져야 한다. 화장실은 청결하고 보수 상태, 조명 상태, 외부로 환기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벌레나 쥐가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타일, 도화 벽돌 또는 기타 비흡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모든 하수구는 승인된 하수 시설에 연결되어야 하고 적절히 배수 방취 트랩이 설치되어야 한다. 화장실은 창고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7352. 세수 시설**

모든 시설에는 상수도와 비누, 수건 또는 손건조기 등 적절하고 편리한 세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353. 시설의 규정 준수 점검**

(a) (1) 시설 면허의 교부 후 90 일 이내에 위원회 또는 대리인이나 보조 직원이 이 장의 해당 규정과 이 장에 의거하여 채택한 위원회의 해당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면허 교부 전에 면허가 신청된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b) 위원회는 공중 보건 및 안전과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해당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무작위 및 표적 검사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c) 위원회 또는 공식 담당관은 시설 점검을 통하여 규정 준수 수준을 합리적으로 확인하고 표적 집행이 필요한 시장 상황을 식별해야 한다.

(d) 위원회는 현장 운영과 관련하여 무작위 검사, 표적 검사, 조사 활동에 배정된 직원 수를, 당해 예산법에 따라 배정되고 해당 예산서에 제시된 수준 이하로 감축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검사 및 조사 목적에 배정된 자금 또는 인원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7 조  
이동 설비차**

**7354. “이동 설비차”**

이 조의 목적 상, “이동 설비차” 는 길이가 24ft(7.32m) 이상이고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직업 행위를 실행하는 시설로 면허를 취득하고 이 조항과 위원회에서 정한 모든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자급자족, 자립, 폐쇄형 이동 설비차를 말한다.

**7355. 면허 신청**

(a) 이동 설비차를 운영하려는 개인이나 회사, 법인은 (b)호에 규정된 데이터와 정보를 기재한 면허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신청자, 신청자가 개인이 아닐 경우, 각 임원, 이사, 파트너는 480 항에 의거하여, 새로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면허 교부 거절의 사유가 되는 행위 또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교부된 면허는 위원회가 지정한 지역에서만 이동 설비차의 운영을 승인한다. 전례의 면허 교부에 적용된 이 조를 준수하여 확장된 지역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면허 교부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동 설비차의 운영은 불법이다.

(b) 각 신청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 조에 따른 문, 창, 화장실 시설, 싱크, 승강 시설, 환기구, 장비, 이동 설비차의 치수 등을 표시한 자세한 평면도.
- (2) 이동 설비차와 영업 장비의 구매 또는 임대 증명서.
- (3) 규정된 수수료.
- (4) 이동 설비차를 운영하려는 카운티 및 도시, 서비스가 제공될 장소에서 이동 이발 또는 미용, 전기분해 요법 서비스의 제공을 허락하는 해당 카운티와 도시의 면허 또는 허가증 사본.
- (5) 해당 도시, 카운티, 주의 배관, 전기 및 소방법 준수 증명서.
- (6) 이동 설비차를 운전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발급된 유효한 캘리포니아주 운전 면허 증명서.
- (7) 이동 설비차를 운영할 영구적 주소.

(c) 평면도와 신청서의 최초 승인 후 신청자는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위원회 또는 위원회 담당관에게 이동 설비차를 보여줄 일정을 정해야 한다.

**7356. 소유권 이전과 사용권의 신청**

면허가 교부된 기존 이동 설비차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이전하려면 구매 후 10 일 이내에 구매자 또는 임대인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신청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문, 창, 화장실 시설, 싱크, 승강 시설, 환기구, 장비, 이동 설비차의 치수 등을 표시한 자세한 평면도.
- (b) 기존 장비 및 이동 설비차의 구매 또는 임대를 입증하는 매도증서 또는 임대 서류.
- (c) 기존 이동 설비차 면허.
- (d) 규정된 수수료.
- (e) 새 소유자 이름으로 발급된, 각 운영 카운티와 도시에서 모바일 서비스의 제공을 허락하는, 해당 도시 및 카운티의 면허 또는 허가증 사본.
- (f) 해당 도시, 카운티, 주의 배관, 전기 및 소방법 준수 증명서.
- (g) 이동 설비차를 운전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발급된 유효한 캘리포니아주 운전 면허증.

**7357. 규정의 준수 - 필수 설비**

- (a) 이동 설비차는, 이동 설비차의 청결과 보수, 이 조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b) 각 이동 설비차는 다음 각 기능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자급자족형 음용 가능한 상수도. 음용수 탱크 용량은 100 갤론 (378.52 리터) 이상이어야 하고 오수 탱크 용량은 적절하여야 한다. 음용수가 고갈될 경우 보충될 때까지 운영을 중지하여야 한다.

(2) 필요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온수 탱크의 용량은 6 갤론(22.71 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오수 탱크가 설치된 자급자족 순환형 화학 수세식 화장실.

(4) 머리카락 또는 음식물 쓰레기, 기타 쓰레기를 담기 위한 뚜껑 달린, 아연 도금 또는 스테인레스, 기타 부식 방지 금속 용기.

(5) 원격 시동기, 머플러, 외부와 연결된 환기구가 설치된 분할 리드 발전기.

(6) 외부 환기구가 설치된 차폐 연소형 난방기.

**7358. 면허 소지자에 대한 이동 설비차의 책임**

항상 이동 설비차는 도제를 제외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관리하여야 한다.

**7359. 면허 미취득자의 고용**

모든 개인, 회사, 법인이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이 장에서 규정된 직업 행위를 시설에서 하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러한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근무를 허락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 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7360. 주거 목적으로 이동 설비차의 부분 사용**

소유자이든 종업원이든 이동 설비차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장에서 규정한 직업 활동을 영위하거나 행위를 실행하는 모든 공간 또는 일부를 주거 목적 또는 비위생적으로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하게 하거나, 이용하는 공중일반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면허가 교부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직업 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이동 설비차를 사용할 경우 이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7361. 이 장의 규정 적용**

이 장에 따른 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은 6 조(7346 항에서 시작)를 제외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동 설비차에 적용된다.



## 8 조 학교, 강사, 및 커리큘럼

### 7362. “위원회 승인 학교”

(a) 위원회에서 승인한 학교는 우선,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사립 중고등 이후 교육 및 직업 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and Vocational Education)에서 인가 받은 학교 또는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이며 위원회에서 승인한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하지만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와 사립 중고등 이후 교육 및 직업 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and Vocational Education)은 동시에 학교의 승인 신청을 처리 할 수 있다.

(b) 위원회는 규정에 의거하여 각 과목의 최소 기술 교육 시간과 최소 실습 횟수를 포함하여 승인된 모든 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필수 교육 과목을 결정하고 유료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c) 하지만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소유주나 직원이 (1) ~ (8) 목 전체에 명시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주정부 법전 2편 3절 1부 5장(11500 항으로 시작)에 의거하여 절차를 진행중에, 학교의 승인을 취소, 정지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비직업윤리적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 되지 않는다.

(A) 이발, 미용, 전기분해요법 시술 행위의 보편적인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반복적인 실수 및 고객의 보건과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를 포함한 무능력이나 중과실 행위.

(B) 유사한 종류의 업무 태만 행위의 반복.

(C) 승인 받은 학교의 소유주의 자격 기준, 역할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그러한 경우 유죄 판결 기록 또는 공증 사본은 유죄 판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2)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학교의 규제를 위해 위원회가 채택하고 보건국에서 승인한 보건 안전 규칙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

(3)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학교의 규제를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

(4) 감염되는 질병이나 전염병이 있다고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시술하는 행위.

(5) 알코올 중독 및 규제 약물의 습관적인 또는 중독적인 사용.

(6) 사칭을 통해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이 장에 따라 관리하는 직업 행위를 보수나 어떤 형식으로든 댓가를 받고 수행하거나 하려고 시도한 경우.



- (7) 이 장에서 승인한 점검을 허용하지 않거나 방해한 행위.
- (8) 학교의 승인을 거절을 하게 할 수 있었던 모든 행위 또는 활동.

**7362.1. 미용학교 승인 요건**

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미용 학교는 다음 모든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미용 학생 25 명 또는 과정에 등록한 학생 수 중 더 많은 수를 대상으로 종합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공간을 보유한다.
- (b) 해당 미용 학교 학적부에 25 명 이상이 미용 과정 정규 학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항의 목적 상 정규 학생은 해당 미용 학교 학적부에 등록하고 미용학 전과정을 수강하기로 한 학생을 말한다.
- (c) 이 장과 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미용 전과정에 실습 교육과 기술 교육 과정을 유지한다. 모든 미용학 분야의 교육 과정은 미용 학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7362.2. 이발학교 승인 요건**

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이발 학교는 다음 모든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이발 학생 15 명 또는 과정에 등록한 학생 수 중 더 많은 수를 대상으로 종합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공간을 보유한다.
- (b) 이발 과정의 정규 학생으로 15 명 이상이 해당 이발 학교 학적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항의 목적 상 정규 학생은 해당 이발 학교 학적부에 등록하고 이발학 전과정을 수강하기로 한 학생을 말한다.
- (c) 이 장과 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이발 전과정에 실습 교육과 기술 교육 과정을 유지한다.

**7362.3. 전기분해 요법 학교의 승인 요건**

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전기분해 요법 학교는 다음 모든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전기분해 요법 학생 5 명 또는 과정에 등록한 학생 수 중 더 많은 수를 대상으로 종합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공간을 보유한다.
- (b) 전기분해 요법 과정의 정규 학생으로 5 명 이상이 해당 전기분해 요법 학교 학적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항의 목적 상 정규 학생은 해당 전기분해 요법 학교 학적부에 등록하고 전기분해 요법 전과정을 수강하기로 한 학생을 말한다.



(c) 이 장과 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전기분해 요법 전과정에 실습 교육과 기술 교육 과정을 유지한다.

**7362.5. 실습 교육 및 기술 교육 시간**

(a) 학교에서 개설한 미용 과정은 7316 항에서 정의된 미용의 실습 교육과 기술 교육 시간이 최소 1,500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b) 학교에서 개설한 미용 과정은 이 장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7316 항에서 정의된 미용의 실습 교육과 기술 교육 시간이 최소 1,600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7364. 스킨케어 과정 - 실습 시간**

학교에서 개설한 스킨케어 과정은 위원회 규정에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실습 교육과 기술 교육 시간이 최소 600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7365. 네일케어 과정 - 실습 시간**

학교에서 개설한 네일케어 과정은 위원회 규정에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실습 교육과 기술 교육 시간이 최소 350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7366. 전기분해 요법 과정 - 실습 시간**

학교에서 개설한 전기분해 요법 과정은 위원회 규정에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실습 교육과 기술 교육 시간이 최소 600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7367. 학점의 이전**

학생이 다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른 과정에 필요한 과정과 동일한 교육을 받아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7368. 학생의 서비스를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정**

학교는 미용 또는 미용, 전기분해 요법 서비스를 학생이 수행한다고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매체에도 그러한 서비스를 광고하지 않아야 한다.

**7389. 위험물질에 대한 보건 안전 과정**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승인한 학교에서 교육할 위험물질에 대한 보건 및 안전 과정을 개발 또는 채택하여야 한다. 과정 개발에는 강사들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교육 수업과 과정의 시범 수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7389.5. **연방 또는 주립 교정 당국에서 개설한 이발 과정 또는 미용 과정**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또는 주 교정 기관이 개설한 이발 또는 미용 교육  
 과정이 본 법과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한다면, 이 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발 또는 미용 면허 교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7395.1. 미용 시설의 인턴**

(a) 사립 고등교육 및 직업 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and Vocational Education)에서 승인한 미용 학교에서 위원회 승인을 받아  
 개설한 과정에 등록한 학생이 그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수업 시간의 최소  
 60 퍼센트를 이수하였을 때 그 학생은 미용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미용 시설에서 무급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다.

(b) 인턴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졸업에 필요한 수업 시간 학점을 취득하나  
 그 학점은 주당 8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과정 이수에 필요한 총 수업  
 시간의 1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c) 인턴 프로그램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미용 시설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1) 위원회에서 면허를 교부한 시설.

(2) 직원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최소 4 명의 면허 소지자가  
 근무하고 있다.

(3) 시설의 모든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4) 그 시설에 근무하는 면허 소지자는 공간 임대 기준이 아니라 월급제  
 또는 커미션제로 근무한다.

(5) 시설에서 근무하는 면허 소지자 4 명당 1 명 이상의 인턴이  
 근무하지 못한다. 시설에 인턴을 배치하기 위해 정규 고용된 면허 소지자를  
 해고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인턴 배치 전에 시설은  
 면허 소지자의 현재 근무 일정이 단축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학교와 관련된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보내야 한다. 그렇지만 면허  
 취득자가 자발적으로 근무 일정을 줄이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 인턴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동안 항상 학교 신분증을 알아보기  
 쉽게 착용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승인한 형식으로 제작 및 코팅되고 사진이  
 부착된 학교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d) (1) 인턴의 책임과 의무의 90 퍼센트 이상이 7316 항에 정의된 미용 행위에 포함된 행위들로 구성된다.

(2) 시설은 무급 실습 기간 동안 인턴의 능력 발전에 대해 학교와 상의하여야 한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감독을 담당하는 면허 소지자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으로 학생의 능력 발전을 모니터하고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인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운 인턴의 학습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학교는 인턴 프로그램을 통한 인턴의 교육 경험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인턴의 학습 결과가 어떻게 학점으로 전환되는지를 나타내는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 학교에서 제공하는 인턴 프로그램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언제든지 학생이 중단할 수 있으며 졸업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

(f) 인턴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미용 시설은 미용 사고 책임 보험과 더불어 인턴의 종합 책임 보험을 부보할 책임이 있으며 시설은 두 책임 보험에 가입하였고 인턴 또한 그 보험이 적용된다는 증명서를 프로그램 참여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g)(1) 이 항에서 승인한 인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 태도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형식화된 강의 교육을 확장하는데 있다.

(2) 교육은 교육이 실시되는 미용 분야의 기술과 지식, 태도, 수행 수준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3) 면허 소지자가 직접 인턴의 행위를 감독하는 조건 하에서 인턴은 7316 항의 미용 행위에 대한 정의에 기술된 행위만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승인된 미용 학교에서 화학 트리트먼트 교육을 적절히 받지 않은 경우 인턴은 화학 트리트먼트를 사용 또는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인턴은 유료 고객의 경우 보조원으로서 그리고 면허 소지자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감독 하에서만 미용 행위를 할 수 있다.

(4) 인턴은 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아야 한다.



**9 조  
(보류)**

**10 조  
면허**

**7396. 면허의 형식과 내용**

위원회가 교부하는 면허의 형식과 내용은 164 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면허에는 소지자가 이발사, 미용사, 피부미용사, 매니큐어사,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도제 면허를 취득하였음을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면허 소지자의 사진이 부착되어야 한다.

**7396.5. 감호 처분된 면허**

(a) 위원회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과 조건이 부과된 감호 처분된 면허를 신청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 (1) 지속적인 의료 또는 정신과 치료, 심리 치료.
- (2) 지정된 재활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참여.
- (3)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의 자제.
- (4) 이 장의 모든 규정 준수.

(b) (1)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목적상, 감호 처분된 면허를 교부할지 결정할 때 위원회는 공소가 기각된 신청자에게 기각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형법 1203.4 항이나 1203.4a항에 의거하여 공소 기각이 된 신청자의 청원을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또한 다른 합당한 서류나 신청자가 제출한 개인적인 성격에 대한 참고 자료를 참작하고 고려할 수 있다. 이 서류들은 위원회에서 경쟁의 증거로서 적절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c) 위원회는 신청자나 면허 취득자의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 감호 처분된 면허에 부과된 기간과 조건을 수정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d) 자격을 갖춘 새로운 신청자에게 감호 처분된 면허를 교부하는 목적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나 그에 국한되지 않는 표준 감호 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 (1) 감호 처분된 면허의 유예 기간은 3년 이내.
- (2) 감호 처분된 면허를 발급받은 신청자가 보통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 (3) 보호감독 여건.
- (4) 규정 준수와 분기별 보고 의무.



**7397. 면허증의 게시**

모든 면허 취득자는 자신의 영업 장소 또는 고용 장소 안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면허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7398. 면허증의 재발급**

분실에 대하여 설명하는 진술서를 신청자가 사실임을 서약으로 확인해서 제출하고 이 장에서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면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7399. 임시 면허**

어떠한 경우에도 임시 면허는 교부되지 않는다.

**7400. 면허 갱신 시 필요한 정보**

시설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모든 면허 소지자는 주소 변경 시 30 일 이내에 새 주소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는 그러한 통지의 접수 시 등록부의 해당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7401. 면허 갱신 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정보 - 주 의회에 위원회 보고**

(a) 7396항에 의거하여 면허를 취득한 개인은 면허 갱신 시 다음 중 하나가 명시된 자신의 시술 행위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 (1) 캘리포니아에서 상근 시술
- (2) 캘리포니아 이외 지역에서 상근 시술
- (3) 캘리포니아에서 시간제 시술
- (4) 이 업계에서 근무하지 않음
- (5) 은퇴
- (6) 기타 시술 행위 상태 - 위원회에서 추가 정의될 수 있다.

(b) 7396항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개인은 면허 갱신 시 다음 중 하나로 신청서에 자신의 고용 상태를 밝혀야 한다.

- (1) 피고용인.
- (2) 독립적 도급업자 또는 부스 임차인.
- (3) 살롱 소유자.



(c) 7347항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개인은 면허 갱신 시 다음 중 어느 사항이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시설에서 운영하는 부스 임차인이 있다.
- (2) 시설에서 운영하는 독립적 도급업자가 있다.

**7402. 이 장의 규정 위반**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개인이나 회사, 협회, 법인은 별도로 규정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을 경우 경범죄 행위자로 \$2,500 이하의 벌금이나, 카운티 교도소에서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7402.5. 개인적인 서비스 허가증**

(a) 이 항의 목적상, “개인적인 서비스 허가증” 은 이 장에 의거하여, 7346항에 기술되어 있는대로, 위원회가 제정한 규율에 따라, 개인이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를 시설의 밖에서 수행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허가증을 말한다.

(b) 위원회는 규정에서 진술한 개인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에게 개인적인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c) 위원회는 개인적인 서비스 허가증에 관한 규정을 발행해야 한다. 이 규정을 수립할 때 최소 두번 이상의 관계자 회의를 열어야 한다.

(1) 위원회는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인 서비스 허가증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면허 교부 범주를 결정해야 한다.

(2) 위원회는 개인적인 서비스 허가증 소지자가 허가 시설 밖에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

(3) 위원회는 개인적인 서비스 허가증 소지자를 보건 안전 규정이나 요건으로부터 면제하지 않아야 한다.

(4) 위원회가 소비자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개인적인 서비스 허가증 소지자가 시설에 고용되도록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5) 규정에 따라 개인적인 서비스 허가증 신청자는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와 무전과 기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d) 개인적인 서비스 허가증은 2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한다. 개인적인 서비스 허가증 수수료는 \$5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적인 서비스 허가증 갱신 수수료는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한 경과 과태료는 갱신 당일 현행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이어야 한다.

(e) 위원회는 개인적인 서비스 허가증의 규제 과정과 발급 진행 상황을 2017년 7월 1일 또는 해당 날짜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보고는 정부법전 9795항에 의거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2) 이 호에 의거한 의회에 대한 보고 요건은 정부법전10231.5항에 따라 2021년 7월 1일에 폐기된다.



## 11 조 징계 절차

### 7403.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거절

(a) 다른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조에서 규정한 징계 조치의 사유가 있을 때 이 장에서 규정한 면허를 언제든지 취소 또는 정지, 거절할 수 있다. 이 조에 의거한 절차는 정부 법전 2 편 3 절 1 부 5 장(11500 항에서 시작)에 따라 실시되며 위원회는 그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

(b) 위원회는 480 항을 근거로 신청자의 면허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c) 485 및 486 항의 요건 이외에, 신청자에게 면허 교부를 거절할 경우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는 거절 사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재할 증거에 대한 평가.

(2) 482 항에 의거하여 수립된, 재할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준을 제공한다. 참조 기준은 나이와 범죄의 심각도, 치료 또는 기타 재할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거 등이다.

(3) 만약 위원회의 결정이 신청자의 이전 범죄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위원회의 면허 거절이 타당한 결정임을 보여주어야 하며, 왜 이전의 범죄 유죄 판결이 이발사나 미용사의 자격조건, 역할, 또는 의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d) 2009년 7월 1일부로 다음 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1) 만약 면허 거절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신청자의 주정부 또는 연방 정부의 범죄 기록 때문이라면, 또한, (c)호 (3)목에 의거하여 제공된 정보 때문이라면, 신청자가 서면으로 위원회에 배달 받을 주소지를 밝히고, 범죄기록 사본을 요청할 경우, 신청자에게 본인의 범죄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A)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범죄기록은 사법부에서 제공받은 양식이나 내용의 수정이나 변조가 불가하다.

(B) 범죄기록은 신청자의 범죄기록의 기밀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며, 위원회는 범죄기록을 고용주에게 제공할 수 없다.

(C) 위원회는 신청자의 서면 신청서와 신청자에게 발송한 답변서를 보관해야 하며, 답변서에는 보낸 날짜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사법부나 연방 수사국의 요청이 접수될 경우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 487 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신청자의 청문회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면허 거부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그외 모든 청문회 요청은 위원회가 청문회 날짜와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f) 행정법 판사가 위원회에게 면허를 취소, 정지, 거절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면 행정법 판사는 면허 소지자에게 합당한 조사 및 판결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 상 “비용”에는 위원회의 사건 조사 수수료와 검찰청의 사건 조사 및 기소 수수료, 행정 청문회 사무국의 청문회 및 권고안 결정 비용이 포함된다.

(g) 부과할 비용은 행정법 판사가 확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회가 그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위원회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그 사건을 행정법 판사에게 반송할 경우 행정법 판사는 권고안에서 부과된 비용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h) 위원회는 행정 청문회가 열린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지불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권은 비용 지불 명령을 받은 면허 취득자에 대한 위원회의 기타 다른 권리에 추가되어야 한다.

(i) 비용 회수에 대한 사법 조치에서 위원회 결정의 증명서가 지불 명령 및 지불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최종 증명서이어야 한다.

(j) 다른 모든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의거하여 회수되는 모든 비용은 예정된 변제로서 비용이 실제로 회수되는 회계연도의 예비비에 적립된다.

**7403.2. 면허의 일시 정지와 감호 처분된 면허 기간, 회복**

(a)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관 또는 피지명자는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장비와 관련된 보건 및 안전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소환장이 발부된 시설의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관 또는 그 피지명자가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면허 일시 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청문 없이 이 장에 의거하여 교부된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일시 정지는 행정관 또는 그 피지명자가 면허정지 사실을 면허 소지자에게 서면 통지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b) 이 항에 따른 면허의 정지는 즉시 효력을 발해야 한다. 면허는 정지일로부터 1 년 동안 감호 처분되며 다음 조건이 부과된다.

(1) 해당 면허 소지자는 시설에 해당되는 보건 및 안전법과 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승인한 교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해당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설의 소유자는 모든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3) 해당 면허 소지자는 모든 벌금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면허 소지자는 정기 분할로 벌금을 납부하기로 위원회와 약정할 수 있다.

(c) 이 항에 의거 면허가 정지된 면허 소지자는 정지와 감호 기간 및 조건의 수정이나 파기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징계재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면허 정지 유효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징계재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이의신청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7410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7411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d) 면허 소지자가 이 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감호 기간 및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의 감호 처분 취소를 청원할 수 있다. 그 절차는 정부 법전, 2 편 3 절 1 부 5 장(11500 항에서 시작)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e) 면허 소지자가 감호 기간 및 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 시 위원회는 면허를 회복시켜야 한다.

**7403.5. 보건 및 안전 규정 위반 시 시설의 폐쇄**

(a) 494 및 7403 항에서 규정한 권한 외에도 행정관은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검사 결과, 보건 및 안전 규정 위반이 매우 심각하여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시설을 즉시 서면 통지하여 폐쇄할 수 있다.

(b) 행정관은 시설 면허의 정지 사실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통지서와 폐쇄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폐쇄 통지서는 일반 대중과 고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시설에 게시되어야 한다.

(c) 시설 면허의 정지에 대한 서면 통지 교부 시, 일반 대중과 고객에 대하여 시설을 폐쇄하고 행정관이 정지를 취소하거나 면허 정지가 만료되거나 또는 494 항의 권한에 따른 명령으로 대체되거나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운영을 그만 둘 때까지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d)(1) 행정관은 적절할 경우 이 항에 의거 정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시설에 통지하고 청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면허 정지 명령서 교부 전에 청문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시설은 면허 정지 명령이 내려진 후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2) 전화 또는 팩스나 상황이 허용하는 기타 전자 수단을 이용한 통지 및 청문이 가능하며 또한 이 항에 따른 통지와 청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e) 위반 사항의 시정 시 시설은 면허 정지의 서면 통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관은 48 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 면허 정지의 서면 통지를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면허 정지의 서면 통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이 항에 따른 각 후속 검사마다 \$100 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f) 면허 정지 통지는 행정관이 제거할 때까지 계속 게시되어야 하고 30 일까지 유효하다. 시설 면허 정지 서면 통지 교부 시, 행정관 또는 지명된 대리인 이외의 사람이 면허 정지 통지서를 제거하거나 시설 폐쇄를 거부하는 행위는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 장에서 승인한 어떠한 처벌도 내릴 수 있다.

**7404. 징계 조치의 사유**

징계 조치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a) 다음을 포함하는,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직업윤리적 행위.
  - (1) 이발 또는 미용, 전기분해요법 행위의 보편적 표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고객의 보건 및 안전 무시 등의 무능력 또는 중과실.
  - (2) 유사한 종류의 업무 태만 행위의 반복.
  - (3) 면허 소지자의 자격, 직무 또는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그러한 경우 유죄 판결 기록 또는 공증 사본은 유죄 판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 (4) 고의적인 거짓 또는 기만적인 문구를 사용한 광고.
- (b)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c) 시설을 규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에서 승인한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규칙 또는 이 장에 의거하여 면허가 교부되고 관리되는 모든 행위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d) 시설을 규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 또는 이 장에 따라 면허가 교부되고 관리되는 모든 행위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e) 감염되는 질병이나 전염병이 있다고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시설하는 행위.
- (f) 알코올 중독 및 규제 약물의 습관적인 또는 중독적인 사용.
- (g) 사칭을 통해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이 장에 따라 관리하는 직업 행위를 보수나 어떤 형식으로든 댓가를 받고 수행하거나 하려고 시도한 경우.
- (h)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면허 또는 보건 및 안전 규칙을 게시하지 않는 행위.
- (i) 면허 시설의 외부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보상을 얻기 위하여 이 장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모든 행위에 종사하는 행위. 단 서비스 수혜자의 질병이나 기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때문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와 면허 시설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취득한 면허 소지자가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j) 면허 소지자가 직접 그리고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
- (k) 선서 또는 진술서에서 이 장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에 관한 거짓 진술.
  - (l) 이 장에서 승인된 시설 점검의 거절 또는 방해.
  - (m)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모든 조치 또는 행위.
  - (n) 잘못하여 또는 실수로 교부된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행위.

**7404.1. 이 장의 규정 위반**

별도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는 한, 개인, 회사, 협회, 또는 법인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7405. “유죄 판결” - 면허에 대한 영향**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혹은 불항쟁의 답변 후 유죄 판결은 이 조에서는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항소 기간이 경과하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유죄 인정을 취소하고 무죄를 주장하거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고발이나 약식 기소, 기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법 1203.4 항에 따른 후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유예 명령이 내려질 때, 위원회는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명령하거나 면허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 12조 행정 벌금 및 소환

### 7406. 위반에 대한 행정 벌금의 부과

위원회는 이 장에 의거한 징계 절차를 실시하는 권한 이외에 공식 담당관을 통하여 이 장의 항에 대한 위반 또는 이 장에 의거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과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행정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 7407. 행정 벌금의 요율표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이 장 위반에 대한 행정적 벌금 요율표를 확정해야 한다. 이 항에 의거하여 징수한 모든 벌금은 위원회 예비비에 적립되어야 한다.

요율표는 각 위반 유형마다 위원회 자체 판단에 따라 위반이 시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2005년 1월 1일까지 위반에 대한 행정 벌금 요율표를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와사립중고등 이후 교육 및 직업 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and Vocational Education)이 동일한 위반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7408. 소환

위원회는 공식 담당관을 통하여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위반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모든 소환장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위반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여 자세히 위반 내용을 기술되어야 한다. 소환장이 작성될 때 행정 벌금이 있을 경우 첨부되어야 한다. 소환장에는 7406 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정해야 할 조건이나 위반을 시정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 7409. 위반의 시정

소환장을 발부 받은 면허 소지자는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 증명서를 위원회 또는 행정관에게 제출하여 관련된 행정적 벌금의 납부를 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이 장 또는 이 장에 의거하여 채택된 규칙과 규정의 어느 한 조항에 대하여 3년 동안 면허 소지자가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정 증명서는 위원회 행정관을 통하여 위원회가 규정한 시간 내에 규정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할 때 위반을 시정할 시간을 합당한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정해진 날짜가 지난 후 제출된 시정 통지는 수락되지 않으며 행정 벌금은 납부되어야 한다.



**7410. 징계재심위원회에 이의신청**

위반 또는 소환 통지서를 발부 받고 행정 벌금이 부과된 사람은 위원회에서 설치한 징계재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모든 이의신청은 소환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시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소환에 대한 이의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시간 내에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행정 벌금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판결이 날 때까지 벌금의 납부가 유예된다.

소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나 그 지명된 대리인은 징계재심위원회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은 발부된 소환과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서면 증거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징계재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징계재심위원회는 조사한 사실을 근거로 소환장에 기재된 혐의를 확인 또는 축소, 기각,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 벌금을 증액할 수 없다.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과 관련된 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을 담고 있는 문서 사본이 제공된다.

**7411. 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서면 요청서를 프로그램 행정관에게 제출하여 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청문회 이후 국장이 조사한 사실을 근거로 소환장 또는 처벌을 확인하거나 수정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적절한 구제를 지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 벌금을 증액할 수 없다. 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청문회는 정부 법전 2 편 3 절 1 부 5 장(11500 항에서 시작)에 따라 실시되며 국장이 그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

**7413. 이의신청의 시기 - 최종 결정**

소환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 하고 이의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지정된 시간에 징계재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환은 최종 결정으로 판결되며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행정적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7414. 행정 벌금 미납의 영향**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행정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수수료 또는 갹신 수수료, 기한 경과 과태료 외에 모든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면허가 교부되지 않거나 교부 받은 면허가 갹신되지 않는다.

**12.5조  
태닝 시설**

**7414.1. 1988 필란테 태닝 시설법(Filante Tanning Facility Act)에 의거하여 보존해야하는 점검 기록**

서면 경고문과 게시해야 할 간판, 시설 운영자의 자격, 승인서, 부모 동의서, 부상 보고서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Filante Tanning Facility Act(Filante 태닝 시설법 1988) 8 절, 23 장(22700 항에서 시작함)에 따라 태닝 시설에서 보존하도록 법에서 규정된 모든 기록은 모든 검사 또는 태닝 시설이 1988 필란테 태닝 시설법(Filante Tanning Facility Act)을 위반하였다는 고발로 인하여 시작된 모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위원회 또는 공식 담당관의 검사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공식 담당관이 요청할 때 즉시 그러한 모든 기록의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7414.2. 1988 필란테 태닝 시설법의 위반 행위가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처벌**

(a) 법률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1988 필란테 태닝 시설법(Filante Tanning Facility Act) 8 절 23 장(22700 에서 시작)의 위반은 형법 19.6 및 19.7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경범죄에 해당한다.

(1) 형법 2 부 3 편 5c 장(853.5 항에서 시작)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라는 서면 통지서 또는 고발장이 경범죄를 다루는 법원에 제출되었을 경우.

(2) 피고와 검찰의 동의를 받아, 법원이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서, 피고가 경범죄로 소환된 경우처럼 처리해야 하는 경범죄라고 결정할 경우.

(b) 법률의 다른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범죄에 해당하는 1988 필란테 태닝 시설법(Filante Tanning Facility Act)의 위반은 \$250 에서 \$1,000 사이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c) 이 항은 1994 년 7 월 1 일부로 시행된다.



**7414.3. 출석 통지서 발부 권한 - 발부 책임**

(a) 국장이 임명한 위원회 담당관은 형법 2 부, 3 편 5c 장(853.5 항에서 시작)에 따라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발부할 권한이 있다. 이와 같이 임명된 담당관은 경찰관이 아니며 그러한 임명의 결과로 공무원 연금 자격을 부여 받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관의 권한은 1988 필란테 태닝 시설법(Filante Tanning Facility Act)의 경범죄 위반에 대하여 출석 통지서 발부로 제한되며 담당관 앞에서 그 위반이 행해진 경우로 한정된다.

(b) (a)호에 따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합법적 체포 또는 담당관이 체포 당시에 합법적이라고 판단할 합당한 사유가 있는 체포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잘못된 체포 또는 잘못된 구금에 대하여 담당관은 민사 책임이 없으며 해당 담당관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c) 이 항은 1994 년 7 월 1 일부로 시행된다.

**7414.4. 시설을 대상으로 한 1988 필란테 태닝 시설법(Filante Tanning Facility Act) 준수에 관한 정보 배포**

위원회와 그 공식 담당관은 1988 필란테 태닝 시설법(Filante Tanning Facility Act) 준수에 관한 정보를 태닝 시설에 배포할 수 있다.

**7414.5. 조의 적용 범위**

이 조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교부된 시설과 공동으로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태닝 시설에만 적용된다.

**7414.6. 규정의 채택**

위원회는 면허 시설 내에서 태닝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13 조  
수입**

**7415. 면허 만료**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면허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유효 기간은 2 년이며 위원회가 면허를 교부한 달의 말일 자정에 만료된다.

**7417. 만료된 면허 갱신 기간**

이 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서 정한 시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만료된 면허는 만료 후 5 년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미납 갱신 수수료와 과태료를 지불하면 갱신할 수 있다. 만료 후 면허를 갱신할 경우 갱신 전제 조건으로 면허 소지자는 기간 경과



과태료를 지불하고, 해당되는 경우, 이 장에서 규정한 현행 평생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갱신은 신청서 제출일 또는 발생한 갱신 수수료 납부일, 있을 경우, 기간 경과 과태료 납부일 중 가장 늦은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 면허가 갱신될 경우 면허는 갱신 효력 발생일 이후 면허가 다시 갱신되지 않을 경우 면허가 만료되는 다음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7418. 취소된 면허**

이 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료 후 5 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은 면허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이후에 갱신 또는 회복, 재교부될 수 없다. 취소된 면허의 소지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된 모든 수수료를 납부하고 처음 면허 신청을 할 때와 동일하게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어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새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7419. 정지된 면허의 갱신**

정지된 면허는 만료될 수 있고 또한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하더라도 면허가 정지 상태이고 면허가 회복되지 않는 한, 면허의 대상인 행위를 개시하거나 면허 정지 명령 또는 판결을 위반하는 기타 모든 활동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

**7420. 취소된 면허의 만료**

취소된 면허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만료될 수 있으나 갱신될 수 없다. 면허가 만료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회복될 경우, 면허 소지자는 회복 전제 조건으로서 현행 갱신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복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7421. 수수료의 결정**

수수료는 위원회가 이 조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 장에서 정한 의무를 수행할 때 위원회의 경비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7422. 수수료 관련 회계 감사관에게 보고**

매월 초에 전월분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수납한 모든 수수료와 각종 영수증은 회계 감사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동시에 전체 수납액을 주 재무국에 납입하고 이 항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이용 및 미용 예비비에 적립해야 한다.



예비비의 자금은 연례 예산법에 따라 위원회에 배정되고 그 자금에서 이장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모든 급여와 기타 모든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

**7423. 수수료**

각 전문직 종사자의 면허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 (a)(1) 미용사 지원 및 시험 수수료는 시험의 개발과 구매, 채점, 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 (2) 미용사 최초 면허 수수료는 \$5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b)(1) 피부미용사 지원 및 시험 수수료는 시험의 개발과 구매, 채점, 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 (2) 피부미용사 최초 면허 수수료는 \$4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c)(1) 매니큐어사 지원 및 시험 수수료는 시험의 개발과 구매, 채점, 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 (2) 매니큐어사 최초 면허 수수료는 \$3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d)(1) 이발사 지원 및 시험 수수료는 시험의 개발과 구매, 채점, 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 (2) 이발사 최초 면허 수수료는 \$5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e)(1) 전기분해 요법 시술사 지원 및 시험 수수료는 시험의 개발과 구매, 채점, 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 (2) 전기분해 요법 시술사 최초 면허 수수료는 \$5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f) 도제 지원 및 면허 수수료는 \$2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g) 갱신 대상의 각 전문직 종사자 면허 갱신 수수료는 \$5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h) 163.5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허 갱신 기한 경과 과태료는 갱신 당일에 현행 갱신 수수료의 50 퍼센트이다.
- (i) 모든 예비 지원 수수료는 예비 지원의 처리 및 관리 비용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7424. 시설 운영과 관련된 수수료 요율표**

이 장에 의거하여 납부해야 하는 시설 운영 면허와 관련된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 (a) 지원 및 최초 면허 수수료는 \$8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b) 갱신 수수료는 \$4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c) 면허 갱신 기한 경과 과태료는 갱신 당일에 현행 갱신 수수료의 50 퍼센트이다.
- (d) 기존 시설의 소유권 변경 시 지원 및 최초 면허 수수료는 새 시설보다 적으나 지원을 처리하고 면허를 교부하는 비용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7425. 이동 설비차와 관련된 수수료 요율표**

이 장에 의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동 설비차 운영 면허와 관련된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 (a) 지원 수수료는 \$5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b) 최초 검사 및 면허 수수료는 \$10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c) 갱신 수수료는 \$4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d) 면허 갱신 기한 경과 과태료는 163.5 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당일, 현행 갱신 수수료의 50 퍼센트이다.

**7426. 면허 재발급 수수료**

7398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면허 재발급 수수료는 \$10 이다.

**7426.5. 처리 직무 기준 수수료 종별 분류 -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의 몰수**  
 위원회는 처리 직무의 통합 수수료가 면허 종류별로 규정된 최대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 장에 규정된 면허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지원서 검토와 시험 관리, 면허 교부 등 처리 직무를 기준으로 종별로 나눌 수 있다.

위원회는 면허 교부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을 취소하였거나 시험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응시자가 납부한 수수료 일부 또는 전체를 몰수하는 절차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 1.5절 면허의 거절, 일시정지 및 취소

### 1장 일반 규정

#### 475. 절의 적용

(a) 이 법전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의 규정은 면허 거절에 적용되며, 면허 거절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면허 신청서에 고의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음.

(2) 범죄의 유죄 판결.

(3)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로 부정 또는 사기, 기만을 포함하는 행위의 실행.

(4) 해당 사업 또는 전문업 면허 소지자가 실행할 경우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가 되는 행위의 실행.

(b) 이 법전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의 규정은 (a)호의 (1)과 (2) 목에 명시된 사유로 인한 면허의 정지와 취소에 적용된다.

(c) 도덕성의 결여 또는 신청자의 성격 또는 평판, 개성, 습관과 관련된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가 거부되거나 정지, 취소되지 않는다.

#### 476. 면책

(a) (b) 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의 어떠한 조항도 3 절 4 장(6000 항에서 시작) 또는 9 절(23000 항에서 시작함) 또는 8 절 5 장(19800 에서 시작함)에 규정된 사람에 대한 면허 교부 또는 등록에 적용되지 않는다.

(b) 494.5 항은 3 절 4 장(6000 항에서 시작)에 따라 변호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의 면허 교부와, 8 절 5 장(19800 항에서 시작) 또는 9 절(23000 항에서 시작)에 의거한 사람의 면허 교부 또는 등록에 적용된다.

#### 477. “위원회” 및 “면허”

이 절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a) “위원회”는 “국(bureau)”, “위원회(commission)”, “위원회(committee)”, “과(department)”, “국(division)”, “시험 위원회”, “프로그램”, “사무소(agency)”를 포함한다.

(b) “면허”는 이 법전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전문업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증, 등록증 또는 기타 수단을 포함한다.



**478. “신청서” 및 “자료”**

(a) 이 절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신청서”는 제출한 원본 문서 또는 작성한 서류, 그리고 신청자 또는 신청을 지원하는 다른 사람이, 당시 또는 나중에, 제공 또는 접수한 증빙 서류를 포함하여 기타 모든 증빙서류 또는 문서를 포함한다.

(b) 이 절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자료”는 사업 또는 전문업의 자격, 직무, 의무와 밀접히 관련된 진술 또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2장  
면허의 거절**

**480. 거절의 근거 및 재할 증명서 취득의 효력**

(a) 위원회는 신청자가 다음을 근거로 이 법전이 적용되는 면허를 거절할 수 있다.

(1) 범죄의 유죄 판결. 이 항에서 유죄는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이나 불항쟁의 답변후 유죄 판결을 의미한다. 항소 기간이 경과하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형법 1203.4 항에 따른 후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유예 명령이 내려질 때, 위원회는 유죄 확정 후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로 부정 또는 사기, 기만을 포함하는 행위를 실행함.

(3) (A) 해당 사업 또는 전문업 면허 소지자가 실행할 경우 면허의 일시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가 되는 행위를 실행함.

(B) 범죄 또는 행위가 신청한 사업 또는 전문업의 자격 또는 직무, 의무와 밀접히 관련된 경우에만 이 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b) 이 법전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482 항 (a)호에 따라 면허 거부를 검토할 때, 형법 4852.01 항과 후속항에 따라 재할 증명서를 획득한 경우, 중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면허를 거절할 수 없다. 또는 재할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개발한 모든 해당 재할 기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c) 이 법전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1203.4 항, 1203.4a항, 또는 1203.41항에 따라 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면허를 거절할 수 없다. 형법1203.4 항, 1203.4a항, 또는1203.41항에 따라 기각 판결을 받은 신청자는 기각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d) 위원회는 신청자가 이 법전에 규정된 면허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실에 대하여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경우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480.5. 면허 교부의 신청 - 수감의 경우**

(a) 이 절에서 규정한 모든 면허 교부 요건을 충족한 개인이 해당 면허를 수감 생활이 종료시에 신청한 경우, 그렇지 않았더라면, 면허를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면허 요건을 수감 생활 중에 완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감 신청 처리를 지연하거나 면허 교부를 거절할 수 없다.

(b) 이 항은 면허의 회복을 위한 청원에 적용하거나 480항에 의거한 위원회의 면허 거절 권리를 제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c) 이 항은 2절 2장(1000항으로 시작)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의 개인의 면허 교부에 적용하지 않는다.

**481. 범죄 및 직업 적합성 기준**

이 법전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는 면허의 거절 또는 정지, 취소를 검토할 때 범죄 또는 행위가 그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전문업의 자격 또는 직무,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482. 재활 기준**

이 법전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할 때 재활을 평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a) 480 항에 따라 위원회가 면허 거절을 검토할 때.

(b) 490 항에 따라 면허의 일시 정지 또는 취소를 검토할 때.

각 위원회는 신청자 또는 면허 취득자가 제시한 모든 정당한 재활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484. 신청자의 도덕성 증명**

이 법전에 의거하여 면허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면허 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485. 면허 거절 시 절차**

이 장 또는 496 항에 따라 면허 신청의 거절 시 위원회는 다음을 실행해야 한다

(a) 정부 법전, 2 편 3 절 1 부 5 장(11500 항에서 시작)에 따라 문제에 관한 진술서를 보관하고 제공한다

(b) 신청이 거절된 신청자에게 다음을 기술하여 그 사실을 통지한다

(1) 거절 사유

(2) 신청자는 거절 통지 후 6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문 요청을 할 경우 정부 법전 2 편 3 절 1 부 5 장(11500 항에서 시작함)에 따라 청문의 권리가 있다. 6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문 요청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청문 권리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거절 통지는 민사 소송에서 소환 통지에 대해 승인된 방식이나 신청자가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신청서 또는 기타 서류에 기재된 최근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우편 통지는 우편 발송일에 통지 행위가 완료된다.

**486. 결정 또는 통지의 내용**

위원회가 이 장 또는 496 항에 따라 면허 신청을 거절한 경우 위원회는 485 항 (b)호에 따라 결정서 또는 통지서로 신청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a) 결정의 효력 발생일 또는 485 항 (b)항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1 년으로 규정된,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위원회가 규정한 더 빠른 날짜 또는 늦은 날짜가 없을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b) 제출된 모든 합당한 증거는 재신청 시 검토될 것이다. 그 결정 또는 485 항 (b)호에 따른 통지와 함께 위원회는 482 항에 따라 수립된 재할 관련 기준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487. 청문 및 시간**

신청자가 청문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가 서면으로 청문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동의하지 않는한 청문이 요청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그러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청문회 사무국은 청문회 실시 시기가 최대 180 일 이내인 시험 또는 면허 교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 청문회 실시 시기를 최대 45 일 연장할 것을 명령하거나 합당한 사유를 제시할 때 그 요청을 승인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둘 이상의 명령이 내려지거나 둘 이상의 요청이 승인될 수 없다.



**488. 청문 요청**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485 항 (b)호에 따라 신청자가 요청한 청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a) 신청자가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할 때 유효한 면허를 교부한다.
- (b) 신청자가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할 때 유효한 면허를 교부하거나 즉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집행 정지하거나 면허 정지가 포함될 수 있는 감호 조건을 면허에 부과한다.
- (c) 면허 교부를 거절한다.
- (d) 면허의 거절 또는 교부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조치를 취한다.

**489. 청문 없이 신청의 거부**

480 또는 496 항에 명시된 사유를 근거로 면허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법률로 부여된 소비자국의 모든 기관은 과거 1 년 이내에 그리고 정부 법전 2 편 3 절1 부 5 장(11500 항에서 시작)에 따라 절차가 실행된 후 그 기관이 동일한 신청자의 신청을 동일한 사유로 거절할 적이 있을 경우 청문 없이 그러한 사유를 근거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3장  
면허의 정지 및 취소**

**490.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

(a)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조치 이외에 위원회는 면허가 교부된 사업 또는 전문업의 자격 또는 직무,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그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면허 소지자가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사유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b) 다른 모든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범죄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교부된 사업 또는 전문업의 자격 또는 직무,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만, (a)목 하에서 부여되는 권한과 관계없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면허 소지자에게 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

(c) 이 항에서 유죄는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이나 불항쟁의 답변 후 유죄 판결을 의미한다. 항소 기간이 경과하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형법 1203.4 항에 따른 후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유예 명령이 내려질 때, 위원회는 유죄 확정 후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 이로써, 주 의회는 이 항의 적용이 Petropoulos 대 부동산국(2006) 142 Cal.App.4th 554 의 판결에 따라 불명확해졌고, 그 소송의 판결에 따라 상당히 많은 법령과 규정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면허 소지자로 인하여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잠재적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주 의회는 이 항이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를 규제하는 독립적 근거가 되고, 2008 년 법령 33 장에 의한 이 항의 개정이 기존 법률의 변경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 법률의 공표임을 확인하고 선언하였다.

**490.5.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 불이행 시 면허의 일시 정지**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 또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복지 및 기관법 11350.6 항에 따라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491.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절차**

490 항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사유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시 위원회는 다음을 실행해야 한다.

- (a) 정부 법전 11522 항의 규정 사본을 과거 면허 소지자에게 보낸다.
- (b) 482 항에 따라 수립된 재활 관련 기준의 사본을 과거 면허 소지자에게 보낸다.

**492. 징계 조치 또는 면허 거절에 대한 약물 치료 프로그램의 영향**

법률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 법전에 따라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거나 자동차법 11 절, 12 장 5 조(23249.50 항으로 시작)에 따른 알코올 및 약물 문제 평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더라도 이 법의 2 절(500 항에서 시작) 또는 그 절에 따라서 발의된 법안에 따라 설치한 기관의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조치의 시행을 금지하지 않아야 하며, 또는 체포에 관한 기록으로 직업적 비행의 증거가 기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으로 인한 면허 거절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이 항은 이 법률의 2 절(500 항에서 시작) 또는 그 절에서 따라서 발의된 법안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93. 비도덕적 범죄 유죄 판결 기록의 증거 효과**

법률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해당 면허 소지자의 자격과 직무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사유로 법률에 따라 소비자국의 위원회가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 징계 조치를 시행하는 절차에서 범죄 유죄 판결 기록이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의 결정적 증거이자 유일한 증거이며, 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거나 유죄 판결이 해당 면허 취득자의 자격과 직무,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죄의 실행을 둘러싼 정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면허”는 “자격증”, “허가증”, “권한”, “등록”을 포함한다.

**494. 일시 정지 또는 제한 명령**

(a) 위원회 또는 행정법 단독 판사는 (h)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원 시 면허를 일시 정지하거나 의무적인 생체액 검사, 감독, 교정 교육 등을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면허 제한을 부과하는 잠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청원은 위원회가 만족할 만큼 다음을 설명하는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 취득자가 이 법전의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태만행위를 행하였거나 면허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면허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제한 없이 면허 활동을 계속하도록 허용할 경우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복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b) 통지할 경우 통지된 문제를 심리하기 전에 공중에게 심각한 위해를 입힐 수 있다고 청원과 보조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이 항에 규정된 잠정 명령을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 없이 내릴 수 없다.

(c) (b)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소지자에게 최소 15 일 전에 잠정 명령의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청원의 근거로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b)호 규정에 따라 통지 없이 잠정 명령이 내려진 경우 면허 소지자는 통지 없이 잠정 명령이 내려진 후 20 일 이내에 청원에 대한 청문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최초 잠정 명령 후 2 일 이내에 청문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하며 청원을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를 받아야 한다. 통지 없이 잠정 명령이 내려진 후 20 일 이내에 위원회가 청문회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면허 소지자가 청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해 잠정 명령이 해제되어야 한다.



(d) 잠정 명령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에서 면허 취득자는 다음을 할 수 있다.

(1)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정부 법전 11523 항에 규정된 사법 심사의 복사 비용에 대한 규정에 따라 계산된 비용을 지불하고 입수할 수 있는 소송에 관한 기록을 입수할 수 있다.

(3) 진술서와 기타 증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4) 구두 변론을 할 수 있다.

(e) (h)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또는 행정법 단독 판사가 그 진술 제출 후 5 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잠정 명령 청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항에 의거 잠정 명령을 받는데 필요한 입증의 정도는 증거 기준의 우위이어야 한다. 잠정 명령이 통지 없이 이미 내려진 경우 위원회는 그 명령의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 해제 또는 수정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f) 위원회는 잠정 명령이 내려진 후 15 일 이내에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 없이 잠정 명령이 내려진 경우 시간은 통지 청문 후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항변 통지서를 제출할 경우 기관이 항변 통지서 접수 후 30 일 이내에 청문이 개최되어야 한다. 그 문제의 제출 후 30 일 이내에 그 고소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 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해 잠정 명령이 해제되어야 한다.

(g) 잠정 명령은 민사 소송법 1094.5 항에 따라 사법 심사를 받아야 하며 새크라멘토 또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의 카운티 상급 법원에서만 그에 대한 심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잠정 명령의 심사는 잠정명령 시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의 결정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재량권의 남용은 피고인 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처리하였거나 법원이 잠정 명령이 전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에 확정된다.

(h) 위원회는 단독 판단에 따라 잠정 명령의 청원에 대한 청문을 행정 청문회 사무국의 행정법 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통지된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행정법 판사가 청문회를 주재하고 증거의 인정과 배제를 결정하고 위원회에 법률 문제를 조언해야 한다. 위원회는 청문회의 실시와 관련된 다른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만 그 권한의 일부 또는 전체를 행정법 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청원이 행정법 판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판사가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에 관한 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행정법 단독 판사가 내린 판결은 위원회에 제출될 때 최종 판결로 확정된다. 행정법 판사가 통지 없이 잠정 명령을 내릴 경우 그 판사는 통지된 청문회를 주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판사가 주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행정법 판사가 그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잠정 명령의 청원에 대한 행정법 단독 판사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g)호에 따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i) (a) 또는 (b)호에 따라 내려진 잠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별도의 징계 조치 사유를 구성하며 (f)호 규정된 통지된 청문회에서 그리고 청문회의 일부로 심리될 수 있다. 잠정 명령의 미준수 주장은 고발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다. 잠정 명령의 위반은 면허 소지자에게 잠정 명령과 그 조건이 통지되었고 위반 당시 그 명령이 시행 중이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확정된다. 잠정 명령 위반에 대한 청문 결과는 기관의 최종 결정 심사의 일환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기관에서 내린 잠정 명령이 면허 소지자 사업 또는 전문업의 완전한 정지보다 약한 조치를 규정하고 면허 소지자가 (f)호에서 규정한 고발에 대한 청문 이전에 잠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기관은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하고 위반 증거를 바탕으로 잠정 명령을 수정 또는 확대할 수 있다.

(j)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혹은 불항쟁의 답변 후 유죄 판결은 이 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공증된 유죄 판결 기록은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 증거이다. 위원회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k) 이 항에서 규정하는 잠정 명령은 다른 법률 규정에서 정한 금지 명령 구제를 구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그러한 권한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l) 위원회의 경우 행정관이 잠정 명령의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국 또는 프로그램의 경우 상황에 따라 국장 또는 프로그램 행정관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m) 이 항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위원회” 는 22 항에서 기술된 모든 기관과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의 관할 구역의 모든 연합 보건 기관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정골의학 위원회와 주 카이로프랙틱 면허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 항의 규정은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 발의학 위원회(Board of Podiatric Medicine), 주 체육 위원회(State Athletic Commission)에 적용되지 아니 한다.



**494.5. 면허 소지자가 확인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을 때 기관의 조치, 정의, 확인 명단 정보의 수집과 배포, 시기, 통지, 응시자와 면허 소지자의 이익제기, 배포 양식, 기관 간의 협정, 수수료, 구제 수단, 정보에 대한 문의와 정보 공개, 법규정의 분리가능성**

(a) (1) (2), (3), (4) 목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정부 면허 발부 기관은,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확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면허의 발급, 재활성, 복권, 또는 갱신을 거절하고,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

(2) 차량관리국은 만약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확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 면허의 발급, 재활성, 복권, 갱신, 또는 거절에 관한 이 항의 참조 내용은 차량관리국에 적용할 수 없다.

(3)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는, 만약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확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면허의 발급, 재활성, 복권, 또는 갱신을 거절하고, 면허를 정지를 권고할 수 있다. 임시 면허의 발급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면허에 대한 이항의 규정에서는, 면허의 발급, 재활성, 복권, 갱신, 또는 정지의 거절과 관련해서, “할 수 있다”라는 용어는 “해야 된다”로 대체 되어야 한다.

(4) 주류통제국(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은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확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면허의 발급, 재활성, 복권, 또는 갱신을 거절하고,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

**(b) 이 항의 목적상**

(1) “확인 명단”이란, 세무 및 조세법 7063 항과 19195 항에 따라, 조세형평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 또는 면허세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서 제공한 가장 많이 조세를 체납한 500인의 명단이다.

(2) “면허”는 자격증, 등록증, 또는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에서 발급한 전문업 또는 직업 행위를 수행에 대한 승인서이다. “면허”는 차량법 6절 1장 (12500항으로 시작)에 의거한 운전 면허증을 포함한다. “면허”는 차량법 3 절 (4000항으로 시작)에 의거해 발급한 차량 등록증을 포함하지 않는다.

(3) “면허 소지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증으로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에서 발급한 승인서로 전문업 또는 직업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개인을 말한다.

(4)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이란 101항, 1000항 또는 19420항에 명시된 모든 기관, 검찰, 보험국, 차량국,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부동산국, 및 면허증,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 개인에게 전문업과 직업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그외 기타 사무소, 위원회 (board, Commission) 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동차국 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경찰국에서 발급하는 모든 자격증, 사업 또는 직업 관련 면허증, 허가증, 면허증이 포함된다. 주정부 하청업자 면허 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는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c) 조세형평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와 면허세위원회(Franchise Tax Board)는 각각 모든 주정부 면허발급 기관에 각각의 확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확인 명단에는 이름, 소셜 시큐리티 번호, 또는 납세자 ID번호, 확인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의 가장 최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d) 다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주정부의 면허 발급기관은, 조세형평위원회와 면허세위원회가 제공한 확인 명단의 이름과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의 이름을 대조할 목적으로,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납세자 ID 번호를 신청자에게서 수집하여야 한다.

(e) (1) 각 주정부의 면허 발급기관은 조세형평위원회와 면허세위원회가 제공한 가장 최근의 확인 명단에서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만약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확인 명단 중에 있다면, 주정부의 면허 발급기관은 즉시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보내서, 기관이 면허의 발급을 중단 또는 보류하거나 면허의 갱신을 중단 또는 보류할 계획임을 알려야 한다. 사전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1013항에 의거하여, 확인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주정부의 면허 발급기관에 접수된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의 가장 최근 주소지로 배달되어야 한다.

(A) 주정부의 면허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면허증을 발급받았을 것이라면 확인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신청자에게 90일 동안 유효한 임시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B) 임시 면허증의 90일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면허 기간중 오직 한번의 임시 면허증만을 발급해야 하며, 임시 면허 기간은 일반 면허 기간의 최초 90일과 동일하다. 이 항의 규정을 준수한 경우에만 정규 기간의 면허 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C) 이 항에 의거하여,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 신청 또는 갱신이 거절된 경우, 주정부의 면허 발급기관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납부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f) (1) 주정부의 면허 발급기관은, 이 항에 의거하여, (e)호의 (2)목에서 명시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적어도 90일 이후 늦어도 120일이 되기 전에 면허의 발급을 거절하거나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 주정부의 면허 발급기관 (h)호에 의거하여 해제 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부법전 2편 3절 1부의 행정절차법 (4.5장(11400항으로 시작) 및 5장(11500항으로 시작) 행정심판 절차는 면허의 거절, 정지, 갱신 거절 또는 이 항에 따른 임시 면허의 교부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2) 다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하청업자 면허 위원회를 제외하고, 101항에 명시된 위원회, 국, 자문위원회가 이 항에 의거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비자국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임시 면허를 발급하거나 면허를 정지하거나, 면허의 발급, 재활성, 복권, 갱신을 거절해야 한다.

(g) 각 주의 면허 발급기관은 통지서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조세형평위원회의 확인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를 위해서, 통지서는 조세형평위원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면허의 발급, 또는 면허의 유효성의 유지를 위한 필요 조건이 조세형평위원회의 해제서임을 강조해야 한다. 면허세위원회의 확인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를 위해서, 통지서는 면허세위원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면허의 발급, 또는 면허의 유효성의 유지를 위한 필요 조건이 면허세위원회의 해제서임을 강조해야 한다.

(1) 통지서는, 신청자가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면허를 발급 받았을 경우라면,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e)호 (2)목 (A)하위 목의 규정대로, 역일 기준 90일 동안 유효한 임시 면허를 발급할 것이며, 해당 기간의 만료시,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조세형평위원회나 면허세위원회 어느 쪽으로부터든, 해제서를 받지 않는 한 면허가 거절될 것임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통지서는, 면허 소지자에게, 이 항에 의거하여 면허가 정지 될 것이며,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지정 해제서와 더불어 면허 복권을 위한 신청서와 수수료를 받을 때까지 면허 정지 상태가 유지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

(3) 통지서는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에게 이 항에 의거하여 면허 신청이 거절되거나 면허가 정지될 경우,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야 한다.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또한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조세형평위원회나 면허세위원회의 명단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이 양식의 사본은 이 항에 의거하여 보내는 모든 통지서와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h) 만일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확인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오른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면,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는, 조세형평위원회나 면허세위원회 어느쪽이든 해당하는 곳에 해제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적시에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다음 요건을 만족시키면, 조세형평위원회나 면허세위원회는 즉시 해제서를 해당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보내야 한다.

(1) 세무 및 조세법 6832항과 19008항에 의거하여,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미납 세금의 납부 또는 미납 세금의 분할 납부 계약에 들어감으로써 조세의 의무를 준수하였다.

(2)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e)호(2)목에 서 명시한 사전 통지를 수령한 날짜로부터 45일 이전에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조세형평위원회나 면허세위원회 중 어느쪽이든 해당하는 곳에서,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조세형평위원회나 면허세위원회에게 보낸 해제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해제를 완료하기 위한 검토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이다. 이 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제가 언제 이루어지든, 그 해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면허증이 오인으로 정지 된 경우,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해당 면허증을 오인으로 잘못 정지 시켰던 그 날짜로 소급하여 복권시켜야 하고 그 정지가 면허 기록부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3)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현재의 재정상 곤란 때문에 미납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 “재정상 곤란”이란 조세형평위원회나 면허세위원회 중 어느쪽이든 해당하는 곳에서 판정한 재정상 곤란으로,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미납 세금을 전혀 납부 할 수 없고, 세무 및 조세법 6832항과 19008항에 규정된 세금 분할 납부 요건을 맞출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재정상 곤란이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는, 판정 목적으로, 조세형평위원회나 면허세위원회 중 어느쪽이든 해당하는 곳에서 요청한, 합당한 사업상 및 개인적인 비용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i)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는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과 조세형평위원회나 면허세위원회의 통지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며, 90일 후에 임시 면허증의 시효가 소멸되고, 면허 정지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조세형평위원회나 면허세위원회의가 그 기간 중에 반드시 조치를 취하려면 시간이 필요함을 인지해야한다.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합당한 사유없이 처리를 지체한다면, 직접적으로, 조세형평위원회나 면허세위원회가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의 해제 요청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해제서의 발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 항에서 규정한 성실함을



구성하지 않는다.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는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과 조세형평위원회나 면허세위원회의 통지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며, 합당한 사유 없이 어떤 지연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할 부담을 져야 한다.

(j) 조세형평위원회나 면허세위원회는 이 항에 의거한 용도를 위해 해제서 양식을 제작해야 한다.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미납 세금의 납부 또는 미납 세금의 분할 납부 계약에 들어감으로써 조세의 의무를 준수하였거나, (h)호 (3)목에 규정된 현재의 재정상 곤란이 존재함을 인정받았을 때, 조세형평위원회나 면허세위원회 중 어느쪽이든 해당하는 곳은 즉시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에게 해제서 양식을 송달하고 해당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에 해제서를 보내야 한다. 이 호의 규정에 따라서 조세형평위원회와 면허세위원회로부터 해제서를 받은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업무일 이내에 해제를 처리해야 한다. 만약 조세형평위원회나 면허세위원회가 해제서의 발급 후에 면허 소지자가 세금 분할 납부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다면, 조세형평위원회나 면허세위원회 중 어느쪽이든 해당하는 곳은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과 면허 소지자에게 조세형평위원회와 면허세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면허 소지자가 조세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해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조세형평위원회와 면허세위원회는,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이 이 호의 규정을 준수하기위한 전산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에 조세형평위원회나 면허세위원회 중 어느쪽이든 해당하는 곳이 정한 양식으로 면허 소지자가 세금 분할 납부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통보해야 한다. 이 통보를 받은 즉시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은 면허 소지자에게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에서 정한 양식으로 면허 소지자의 면허증이 정한 날짜에 정지될 것이며, 그 날짜는 통지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또한 면허 소지자에게 이 호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해제서가 교부될 때까지 면허증이 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통보해야 한다.



(k) 조세형평위원회와 면허세위원회는 이 항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과 유관기관 협정을 맺을 수 있다.

(l) 다른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은 해당 국장이나 이사회의 승인 아래 이 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이 정지된 면허증 소지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는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이 이 항의 규정을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이 부과하는 다른 수수료와 함께 적립되며, 연례 예산 법안에서 변제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m) (h)호에서 명시된 절차는 임시 면허의 교부나 면허 거절 또는 면허 정지에 대한 이의시 가능한 유일한 행정 구제책이다.

(n)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이, 이 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거절되거나 정지된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 또는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 면허가 부여된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의 면허 상태에 관한 문의를 받을 때는 면허 소지자가 세무 및 조세법 7063 항과 19195 항에 따라 제공한, 가장 많이 조세를 체납한 체납자 500인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응대해야 한다. 이 항에 의거하여 주정부 사무소, 위원회, 국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민법 3절 4부 1.8편의 1977정보처리법(Information Practices Act of 1977)(1798 항으로 시작)의 규정에 따른다.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이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나 다른 매체에, 이 항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거절되었거나 정지되었음을 공개할 때, 면허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가까이에 면허 거절, 정지 또는 임시 면허의 사유가 면허 소지자의 세금 체납때문이라고 눈에 띄게 굵은 활자체로 공개해야 한다.

(o) 이 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칙과 규율은 행정 주정부 법전 2편 3절 1부의 3.5장(11340으로 시작)의 행정절차법의 법제정 규율에 따른 응급 규율로서 주정부 사무소, 위원회, 또는 국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 이 규율의 채택은 공공 평화, 보건, 안전 또는 공공 복지의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응급상황이라고 간주된다. 이 규율은 국무 장관의 제기로 즉시 발효되어야 한다.

(p) 조세형평위원회, 면허세위원회 및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은 이 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규율을 채택해야 한다.



(q) (1)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이나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의 임원, 직원, 보조 직원, 전직 임원, 전직 직원, 전직 보조 직원은 이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세형평위원회나 면허세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단 일반 대중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의 거절, 갱신의 거절, 면허의 정지 또는 임시 면허의 교부들을 공개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이 받은 정보의 공개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이 항에 의하여 승인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범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호의 규정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가 이 항에 의거하여 변호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이 항에 따른 면허의 정지, 갱신의 거절, 임시 면허의 발급은 연방 의사 데이터뱅크(National Practitioner Data Bank)의 보고 요건상 면허 소지자의 거부나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연방 의사 데이터뱅크(National Practitioner Data Bank) 또는 의료통합 및 보호 데이터뱅크(Healthcare Integrity and Protection Data Bank)에 보고하지 말아야 한다.

(3) 확인 명단에서 지정 해제되면, 신청자의 면허 신청 정지나 취소 또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는 3 업무일 이내에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나 다른 매체에서 기록이 지워져야 한다. 이 목의 규정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r) 이 항의 어떤 규정이 또는 그것의 적용이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무효한 경우, 무효한 규정이나 그것의 적용을 제외하면 효력을 발하는 또는 그 무효성이 이 항의 다른 규정이나 그 적용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이 항의 규정은 분리가능하다.

(s) 이 항에서 신청자에게 부여된 재심의 권리는 면허 소지자에게도 또한 부여된다.

(t) 이 항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 항에 따른 면허 정지에 관한 주정부 면허 교부 기관의 정책, 관례, 및 절차는 가족법 17520 항에 따른 면허의 정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u) 이 항의 모든 규정은, 법원에서, 캘리포니아 헌법의 위반한 해당 미납 세금의 납부 전에 세금의 징수를 재심의하도록 허용하고 세금의 징수를 금지한다고 해석될 수 없다.

(v) 이 항은 세무 및 조세법 7063 항과 19195 항에 의거한 가장 많이 조세를 체납한 500인의 명단에 오른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2012년 7월 1 일부로 적용되어야 한다.





**494.6. 노동법 위반 - 면허증 관련 처벌의 근거**

(a)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면허 소지자가 노동법 244항 (b)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판결을 내리고, 해당 면허 정지와 취소가 면허 소지자의 직원들에게 미치는 피해와 면허 소지자가 통지서를 받은 뒤 위반 사항을 성심껏 고친 노력을 감안한 경우, 이 법으로 규제하는 사업 면허는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b) (a)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국 사무소에서 교부한 면허 소지자가 노동법 244항 (b)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나온 경우 해당 면허 교부 사무소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c) 이 항에 따르면, 장래의 직원이나 현재의 직원에게, 보수를 받고 일하는 첫번째 근무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고용확인서(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면허 정지나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장  
공개 견책**

**495.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정지나 취소의 근거를 구성하는 면허 취득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행위에 대한 공개 견책 및 법적 절차**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증을 교부할 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은 면허 또는 자격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사유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면허 취득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견책할 수 있다. 공개 견책 또는 공개 견책 및 일시 정지, 공개 견책 및 취소의 절차는 정부 법전 2 편 3 절 1 부 5 장(11500 항에서 시작)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또는 주 보건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면허 취득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해당 절차는 보건안전법 100171 항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5 장  
시험의 보안**

**496. 면허의 거절, 취소 또는 취소의 사유**

위원회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면허 시험의 부정에 관한 123 항을 위반한 사실을 사유로 면허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 제한할 수 있다.



**498. 면허 관련 처벌 조치의 사유로서 사기, 기만, 또는 허위 사칭**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사기, 기만, 중요한 사실의 고의적 부실 표시 또는 중요한 사실의 고의적 누락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 제한할 수 있다.

**499. 타인의 신청 관련한 면허 취득자의 행위에 따른 면허 관련 처벌 조치**  
 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면허 신청을 돕기 위해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신청에 관한 중요한 사실의 진술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사실을 사유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 제한할 수 있다.



# 이미용 규정



캘리포니아 규정집 16 편 9 절

2016 년 7 월까지의 수정 조항 포함

정  
가



## 1조 관리

### 901. 시험 신청 및 면허의 처리 시간

(a) 평가 및 일정: 위원회는 이발사 또는 미용사, 피부미용사, 매니큐어사,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강사 면허 교부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청서 (Form # F-34555-BOC, Application for Examination, Rev. 7/92) 접수 후 6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서가 완벽하여 시험을 위해 회부되었는지 또는 불완전하여 어떤 특정 정보가 필요한지 통지하여야 한다.

(1) 불완전한 신청서의 보충 정보가 위원회로 회송될 때 위원회는 신청서가 완벽한지 접수 후 5 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신청서가 아직 불완전할 경우 위원회는 접수 후 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어떤 특정 정보가 필요한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시험: 위원회는 신청자가 면허 교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시험을 치루는 날에 결정하여야 한다.

(c) 면허 교부: 위원회는 신청자가 시험에 통과하는 날 신청자에게 면허를 교부하여야 한다.

(d) 처리 시간: 이 항의 입안 전 2 년 동안 위원회의 실제 업무 수행을 기준으로 볼 때 신청서 접수로부터 이미용 위원회가 면허 교부를 결정할 때까지 이발사 또는 미용사, 피부미용사, 매니큐어사,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강사 면허 교부 시험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최소, 보통, 최대 시간은 다음과 같았다.

- (1) 최소: 4 일
- (2) 보통: 49 일
- (3) 최대: 397 일

참고: 인용 근거: 정부 법전 15376 항 및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정부 법전 15376 항 및 사업 및 전문업법 7321, 7321.5, 7324, 7326, 7330, 7337, 7342, 7391 항.

### 902. 도제 신청의 처리 시간

(a) 평가: 위원회는 도제 면허 교부를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서면으로 신청서(form 35A-03, Application for Licensure as a Licensed Apprentice and for Approval of Trainers and Establishments, Revised 5/94)를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신청서의 하자 여부 또는 어떤 특정 정보가 필요한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하자있는 신청서의 보안을 위해 해당 정보가 위원회로 회송될 때 위원회는 신청서가 완벽한지 여부를 접수 후 5 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A) 신청서가 아직 불완전할 경우 위원회는 접수 후 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어떤 특정 정보가 필요한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b) 면허 교부의 통지: 위원회는 수수료와 작성된 신청서가 접수된 후 3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면허 요건의 충족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c) 처리 시간: 이 항에 대한 실제 업무 수행을 기준으로 볼 때 신청서 접수로부터 이미용 위원회가 면허 교부를 결정할 때까지 도제 면허 교부 신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최소, 중간, 최대 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최소: 1 일
  - (2) 중간: 15 일
  - (3) 최대: 48 일

**참고:** 인용 근거: 정부 법전 15376 항 및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정부 법전 15376 항 및 사업 및 전문업법 7334 항.

**903. 시설 신청의 처리 시간**

- (a) 평가. 위원회는 시설 면허를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서면으로 신청서 접수 후(Form #03M-201,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License, Rev. 7/92) 30 일 이내에 신청서의 하자 여부 그리고 어떤 특정 정보가 필요한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하자있는 신청서의 보완을 위해 해당 정보가 위원회로 회송될 때 위원회는 신청서가 완벽한지 여부를 접수 후 5 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A) 신청서가 아직 불완전할 경우 위원회는 접수 후 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어떤 특정 정보가 필요한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b) 처리 시간. 이 항의 입안 전 2 년 동안 위원회의 실제 업무 수행을 기준으로 볼 때 신청서 접수로부터 위원회가 면허 교부를 결정할 때까지 시설 면허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최소, 중간, 최대 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최소: 11 일
    - (2) 보통: 52 일
    - (3) 최대: 265 일

**참고:** 인용 근거: 정부 법전 15376 항 및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정부 법전 15376 항 및 사업 및 전문업법 7347 항.



**904. 시행**

(a) 규칙 및 규정 12 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보건 및 안전 규칙의 사본은 다음 장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 (1) 학교와 시설의 접수 구역.
- (2) 학교의 이론 강의실.

(b) 시설 면허 또는 이동 설비차 면허의 소지자와 그러한 시설이나 이동 설비차의 관리자는 단독으로 그리고 그러한 시설이나 이동 설비차의 모든 사람 또는 종업원 또는 근무자와 공동으로 그러한 시설 또는 이동 설비차의 보건 및 안전 규칙을 이행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c)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이발사 또는 미용사, 피부미용사, 매니큐어사,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강사, 도제는 보건 및 안전 규칙을 이행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d) 학교의 학생을 제외하고 이용 또는 미용, 피부미용, 매니큐어, 전기분해 요법 행위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위원회의 공식 담당관 요청 시 합당한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합당한 증명서는 사진이 부착된 운전 면허증 또는 주 또는 연방 정부나 기타 인정된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될 수 있다.

(e) 유효한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징계 조치의 사유가 된다.

**참고:** 인용 근거: 정부 법전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313, 7317, 7404 항.

**905. 소비자 정보 메시지의 게시**

(a) 다음 소비자 정보 메시지는 보건 및 안전 규칙 사본의 첫 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야 하고 또한 904 항에 따라 모든 시설 내에 눈에 잘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소비자 메시지**

이 시설은 캘리포니아 주 이미용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보건 및 안전(비위생적 환경 및 기구 사용 후 기구 살균 소독 미실시)
- 무능력 및 태만
- 서비스의 부실 표시 또는 거짓 광고
-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이발, 미용, 또는 전기분해 요법을 시술하는 행위



- 소비자 고발 안내서(Consumer Complaint Guide)를 받고 싶거나 이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미용 위원회로 전화를 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전화: (800) 952-5210 주소: P.O. Box 944226, Sacramento, California 94244-2260.

(b) 소비자 정보 메시지 제목, “소비자 메시지” 는 크기가 최소 36 포인트인 굵은 활자체로 인쇄하여야 한다. 소비자 정보 메시지의 본문은 크기가 최소 14 포인트인 굵은 활자체로 인쇄하여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129(e) 및 7404(b)항.

## 2 조. 시험 자격

### 909. 교육 이수 증명서

(a) 신청자가 시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승인한 캘리포니아 주의 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기재한 모든 시험 신청서는 그 교육의 이수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b) 교육의 이수 증명서는 신청자가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학교에서 작성한 문서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과정 제목.
- (2) 학생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 (3) 학교 이름과 주소, 위원회에서 부여한 학교 코드.
- (4) 교육 시작일과 교육을 이수한 최종 날짜.
- (5) 학생이 받은 총 교육 시간.
- (6)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 규정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한다.

(A) 신청자가 다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 받은 학교의 이름, 학교 코드, 교육 받은 시간 수, 교육 시작 일자 및 교육 종료 일자가 서류에 기재되어야 한다.

(B) 신청자가 전과하여 학점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 과정의 이름과, 교육 시간 수, 교육 시작 일자 및 교육 종료 일자, 받은 학점 시간 수가 서류에 기재되어야 한다.

(C) 신청자가 매니큐어사 또는 미용사 면허 소지에 대한 학점을 받은 경우 면허 종류와 면허 번호, 만료 일자, 받은 학점 시간 수가 서류에 기재되어야 한다.



(D) 신청자가 다른 주에서 교육 및/경험으로 학점을 받은 경우 그 학점을 부여한 위원회에서 발급한 문서의 사본이 서류에 첨부되어야 한다.

(7)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과정 커리큘럼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진술서.

(8)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학교와 학생이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한, 서류의 모든 정보가 진실이며 틀림이 없다는 진술서. 이 진술문은 아래와 같은 문구로 작성되어야 한다. “We, the undersigned, certify under penalty of perjury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at al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true and correct.”(우리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여기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진실이며 틀림이 없음을 아래 서명하여 확약합니다.)

(9) 문서는 학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사람의 이름과 직위가 명확하게 인쇄 또는 타이핑되어야 한다.

(c) 캘리포니아 주에서 승인된 학교에서 작성한 교육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는 (b)호에 명시된 번호로 명확하게 식별되고 그 호에 명시된 순서로 기재되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21, 7321.5, 7324, 7326, 7330, 7331, 7337,7391 항

### 910. 타주의 신청자

(a) 타주에서의 면허 관련 행위, 교육이나 직업 훈련 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허가 받은 학교에서 보충 교육 또는 그러한 교육의 조합을 근거로 면허 시험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자격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면허 관련 행위에 대한 학점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양식(Form #03E-145, Affidavit of Experience-Form C, Rev1/91)사용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러한 면허관련 현장 실습 행위를 확인하는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진술서에 그러한 현장 실습 행위를 하였던 주 또는 국가의 면허 기관이 그 행위에 면허가 필요한 경우 그러한 행위에 종사할 수 있는 면허를 신청자가 취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다른 주 또는 국가의 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이 주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그러한 시간에 대한 학점을 인정 받으려는 신청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양식(Form #03B-144, Out-of-State Beauty School Training Record-Form B, Rev. 8/94) 사용하여 교육을 받은 학교가 이수한 각 과목의 교육 시간 수와 교육 시기를 기재하고 입증한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캘리포니아 주에서 허가 받은 학교에서 이수한 보충 교육에 대한 학점을 인정 받으려는 신청자는 그러한 학교에서 이수한 각 과목의 교육 시간 수를 기재하고 입증한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사업 및 전문업법 3 절 10 장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고용된 시험 신청자는, 반드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고용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 관련 행위는 시험 자격을 취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c) 미군에서 해당 교육, 직업 훈련, 또는 경험을 쌓은 시험 신청자는, 평가를 위해, 군 경력 인증서(V-Met)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기록을 시험 신청자의 시험 자격에 대한 증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35,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21, 7321.5, 7324, 7326, 7330, 7331, 7337 항

### 3 조. 도제

#### 913. 도제 교육 프로그램의 승인

(a) 이발 또는 미용, 전기분해요법, 스킨케어, 네일케어 도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공동 도제 위원회 또는 사용자나 노동자 일방의 단독 위원회, 개인 고용주를 도제 프로그램 스폰서라고 한다.

(b) 위원회로부터 이발 또는 미용, 스킨 케어, 전기분해요법의 도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도제 프로그램 스폰서 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제 프로그램의 서면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도제 프로그램의 과목을 확인한다. 도제 프로그램 승인 요청서는 고용주 또는 프로그램 스폰서가 개인이 아닐 경우 그 조직의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2) 캘리포니아 도제 협의회가 프로그램 스폰서의 도제 프로그램 제공을 승인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3)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제 규정의 준수를 입증하는 교육 프로그램안의 세부 개요를 제출한다.

(4) 프로그램 스폰서와 도제 간 계약서 사본(이하 “도제 계약서”)을 제출한다. 도제 계약서는 1939 Shelley-Maloney 도제 노동기준법 (노동법 3070 항 이하 참조) 및 그에 따라 채택한 규정의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c) 도제 프로그램 스폰서는 이 항의 (b)호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 정보의 변경 후 10 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위원회는 도제 프로그램 스폰서 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승인 요청서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서에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또는 어떤 특정 정보가 필요한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불완전한 신청서의 해당 정보가 위원회에 다시 돌아오면, 위원회는 신청서가 완벽한지 여부를 접수 후 5 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신청서가 아직 불완전할 경우 위원회는 접수 후 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어떤 특정 정보가 필요한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 위원회는 작성된 신청서가 접수된 후 3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f) 이 항의 입안 전 2 년 동안 위원회의 실제 업무 수행을 기준으로 볼 때 신청서 접수로부터 이미용 위원회가 승인서 교부를 결정할 때까지 도제 프로그램의 승인 요청서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최소, 중간, 최대 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최소: 1 일
- (2) 중간: 15 일
- (3) 최대: 48 일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및 정부 법전 15376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33, 노동법 3070 및 3078 항. 정부 법전 15376 항.**

**913.1. 승인의 취소: 도제 프로그램 스폰서**

(a) 위원회는 법률 규정과 이미용법(사업 및 전문업 7301 항 이하 참조)의 규정에 따라 도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도제 프로그램 스폰서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b)(1) 도제 프로그램 스폰서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절차는 도제 프로그램 스폰서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사유를 설명하는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조항의 자세한 참조를 포함하여 위반의 내용을 기술하고 위원회의 도제 프로그램 스폰서 승인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예비 판결문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적절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는 통지서에 위반을 해소할 합리적인 시간을 정하는 해소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 프로그램 스폰서가 명시된 시간 내에 해소 명령을 따를 경우 위원회는 사유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취소해야 한다.



(3) 사유를 설명하는 통지서에 대해 징계 명령이나 해소 명령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위반의 중대성과 해당 도제 프로그램 스폰서의 도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제에 대한 영향, 공중에 대한 영향, 도제 프로그램 스폰서의 선의, 과거 위반 이력 등의 요소와 관련하여 명령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c) 사유를 설명하는 통지서에 도제 프로그램 스폰서가 사유를 설명하는 통지서의 어느 항목에 대해 항변하는 청문회를 원할 경우 30 일 이내에 서면 통지서를 위원회 행정관에게 발송하여 청문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후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을 경우 사유 통지서에 포함된 명령은 사유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d) 사유 통지서에 항변하는 청문회는 프로그램 스폰서의 서면 청문 요청서를 접수한 후 60 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청문회는 위원회(Board)가 선정한 위원회(committee) 앞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청문 종결 시 위원회(committee)는 청문 결과와 확정, 명령에 대한 서면 결정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한 결정서는 청문 종결 후 45 일 이내에 프로그램 스폰서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33 항.

#### 914. 도제 프로그램 신청서 제출 및 처리 시간

(a) 예비 도제는 위원회에 도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form 35A-03, Application for Licensure as a Licensed Apprentice and for Approval of Trainers and Establishments, Revised 5/94)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b) 위원회는 도제 면허 교부를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서면으로 신청서(Form #35A-03, Application for Licensure as a Licensed Apprentice and for Approval of Trainers and Establishments, Revised 5/94)를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신청서가 완전한지 또는 불완전하여 어떤 특정 정보가 필요한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불완전한 신청서의 해당 정보가 위원회로 회송될 때 위원회는 신청서가 완벽한지 여부를 접수 후 5 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신청서가 아직 불완전할 경우 위원회는 접수 후 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어떤 특정 정보가 필요한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 위원회는 작성된 신청서가 접수된 후 3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d) 이 항의 입안 전 2 년 동안 위원회의 실제 업무 수행을 기준으로 볼 때 신청서 접수로부터 이미용 위원회가 면허 교부를 결정할 때까지 도제 면허 교부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최소, 중간, 최대 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최소: 1 일
- (2) 중간: 15 일
- (3) 최대: 48 일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정부 법전 15376 항. 참조: 정부 법전 15376 항 및 사업 및 전문업법 7334 항.

**914.1 도제 신청 접수 및 신청 자격**

도제 면허 지원자가 이전에 특정 분야에서 면허 시험에 응시했으며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 받은 적 있다면, 그 도제 면허 지원자는 똑같은 분야의 도제 과정에 지원할 자격이 없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34 항.

**914.2 도제 신청 접수 및 재등록**

(a) 도제 기간은 2 년이다. 도제 과정 이수 중 도제가 어느 때이건 이수를 중단한다면, 도제 프로그램 스폰서는 제적한 날로부터 10 일 안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b) 2 년이 지난 뒤에도 도제가 규정 교육 시간 3,200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관련 교육을 완료하지 못해서, 이 조의 법령 923 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등록 취소가 통보되고, 도제 면허증을 위원회에 반납했다면, 그 지원자는 그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한번 더 재등록할 수 있다. 2 번 등록 한 후에는 더이상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34 항.

**915. 관련 교육**

(a)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모든 도제 프로그램은 관련 교육의 실무교육과 강의로 구성되어야 한다.

(b) 이발사 도제의 관련 교육은 2 년 동안 최소 216 시간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교육 시간 중 최소 144 시간은 이용 이론 교육이어야 하며 최대 72 시간은 선택 교육일 수 있다. 선택 교육 72 시간은 강의 교육, 세미나, 이용과 관련된 시범 교육으로 실시될 수 있다. 선택 교육은 과정 이수 증명서 또는 등록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c) 미용 또는 스킨케어, 네일케어, 전기분해요법 도제의 관련 교육은 2 년 동안 최소 220 시간의 강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강의 교육 시간 동안 다음 과목이 교육되어야 한다.

(1) 미용 도제의 관련 교육은 미용과 관련된 다음 과목을 교육하여야 한다. 과목: 미용 화학, 보건 안전 및 유해 물질, 전기 이론, 소독 및 위생, 세균학, 해부 및 생리학, 습식 헤어스타일링, 가열식 헤어스타일링, 파마, 스트레이트파마, 헤어커팅, 염색 및 탈색, 두피 및 헤어 트리트먼트, 페이스, 눈썹손질 및 제모, 화장,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2) 스킨케어 도제의 관련 교육은 스킨케어와 관련된 다음 과목을 교육하여야 한다. 과목: 미용화학, 보건 안전 및 유해 물질, 전기 이론, 소독 및 위생, 세균학, 해부학, 생리학, 피부 분석 및 질환, 페이스, 눈썹손질 및 제모, 화장.

(3) 네일케어 도제의 관련 교육은 네일케어와 관련된 다음 과목을 교육하여야 한다. 과목: 미용 화학, 보건 안전 및 유해 물질, 소독 및 위생, 세균학, 해부 및 생리학, 습식 및 오일 매니큐어, 손 및 팔 마사지, 페디큐어, 인조 손톱 부착.

(4) 전기분해요법 도제의 관련 교육은 전기분해요법과 관련된 다음 과목을 교육하여야 한다. 과목: 보건 안전 및 유해 물질, 소독 위생 및 살균, 세균학, 해부 및 생리학, 전기, 전기분해요법, 열분해요법, 고주파 및 직류.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33 및 7334 항.

### 916. 교육 시간 및 일정

(a) 사업 및 전문업법 7335 항의 2 년은 최소 3,200 시간의 도제 교육을 의미한다. 정규 도제는 승인된 프로그램 하에서 주당 최소 32 시간의 고용과 교습을 의미한다. 근무일 1 일당 8 시간 30 분 이상의 학점이 허용되지 않으며 주당 5 일 이상의 학점이 허용되지 않는다. 최대 교육 시간은 주당 42 시간 30 분이다.

(b) 2 년제 도제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도제 면허 교부로 시작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33, 7334, 7345 항.



**917. 예비 도제 교육**

사업 및 전문업법 7334 항에 규정된 최소 도제 교육 시간은 법률 및 위원회 규정, 기본 고객 보호 및 위생, 소독 절차에 관한 교육 39 시간이다. 도제 면허 교부 신청자는 도제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예비 도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34 항.

**918. 도제 교육 강사의 행위 범위**

(a) 면허에 도제 면허의 행위 범위가 포함되지 않는 한 그 면허 취득자는 도제를 교육할 수 없다.

(b) 면허 보유자는 한번에 최대 두사람의 도제를 감독할 수 있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32 항과 7336 항.

**919. 위원회 승인 강사 및 시설**

(a) 도제를 교육하고 싶은 면허 소지자는 도제를 고용하거나 교육하기 전에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유권자가 동일한 여러 곳의 시설에서 도제를 교육하려는 시설은 여러 곳의 시설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소유권자가 동일한 시설에는 기업형 체인점, 개인 소유의 여러 시설, 프랜차이즈 그룹 또는 합자 회사가 있다. 강사와 시설의 승인 신청은 위원회 양식(form 35<sup>a</sup>-03, Application for Licensure as a Licensed Apprentice and for Approval of Trainers and Establishments, Revised 5/94)을 사용해야 한다.

(1) 소유권자가 동일한 여러 시설에서 도제 교육을 실시하려는 시설은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시설 이름, 장소, 위원회 교부 면허 번호, 책임자 또는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b) 도제 교육 강사 승인의 자격 요건:

(1)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서 교부한 현재 유효한 면허가 있어야 한다.

(2) 도제 교육 강사를 하려는 면허 소지자는 보류 중인 징계 조치가 없고 위원회 징계 조치로 인한 감호 처분 중이 아니거나 신청 직전 2년 이내에 과거 징계 조치로 인한 감호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3) 면허 취득자는 480 항의 거절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4) 면허 취득자는 사업 및 전문업법의 3 절 10 장 12 조에 따라 부과된 미납 벌금이 없어야 한다.



(c) 도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시설에서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시설 승인 신청은 (a)호에 명시된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d) 시설 승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은 위원회에서 교부한 현재 유효한 면허가 있어야 한다

(2) 시설은 보류 중인 징계 조치가 없고 위원회 징계 조치로 인한 감호 처분 중이 아니거나 신청 직전 2 년 이내에 과거 징계 조치로 인한 감호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3) 480 항의 거절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면허 소지자는 사업 및 전문업법의 3 절 10 장 12 조에 따라 부과된 미납 벌금이 없어야 한다.

(5) 시설이 소유권자가 동일한 여러 장소에서 도제를 교육하려면 시설 간에 도제 고용에 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e) 위원회는 도제 강사 또는 도제 시설로 승인을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서면으로 신청서(form 35<sup>a</sup>-03, Application for Licensure as a Licensed Apprentice and for Approval of Trainers and Establishments, Revised 5/94)를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신청서가 완전한지 또는 불완전하여 어떤 특정 정보가 필요한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불완전한 신청서의 해당 정보가 위원회로 회송될 때 위원회는 신청서가 완벽한지 여부를 접수 후 5 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신청서가 아직 불완전할 경우 위원회는 접수 후 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어떤 특정 정보가 필요한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f) 위원회는 작성된 신청서가 접수된 후 3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g) 이 항의 입안 전 2 년 동안 위원회의 실제 업무 수행을 기준으로 볼 때, 이미용 위원회가 신청서 접수로부터 면허 교부를 결정할 때까지 승인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최소, 중간, 최대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최소: 1 일

(2) 중간: 15 일

(3) 최대: 48 일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32, 7333, 7334, 7336 항



**920. 도제 훈련의 기록**

도제 교육 강사는 요청 시 도제 일일 근무 기록을 위원회 또는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무 기록에는 고용된 도제의 이름과 도제가 근무한 날짜, 근무 시간, 그러한 날에 수행한 근무 과정, 강사 이름이 기재되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33 및 7334 항.

**921. 이발사 도제 과정의 커리큘럼**

(a) 이미용법 7316 항에 따라, 이발사 도제 과정에 등록된 도제를 위한 교육과정은 3200 시간의 기술 교육과, 이발사의 모든 실무를 포함하는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 이 항의 목적상, 기술 교육이란 시범, 강의, 학생의 참여, 또는 시험을 통한 수업을 의미한다. 실습이란 학생이 다른 사람이나 마네킹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습 교육이란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의 시간을 의미한다.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은 다음과 같은 시간동안 진행되어야 한다.

(1) 헤어드레싱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 2800 시간

헤어드레싱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헤어스타일링 (기술 교육 95 시간과 실습 450 시간):

헤어스타일링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헤어 분석, 머리 감기기, 핑거 웨이빙, 핀 컬링, 콤 아웃, 스트레이트닝, 웨이빙, 가열식 빗이나 가열식 아이언을 이용하는 컬링, 블로우 드라이어 스타일링.

파마와 스트레이트 파마 (기술 교육 40 시간과 실습 120 시간):

파마와 스트레이트 파마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헤어 분석, 산과 알칼리액 파마, 수산화나트륨과 다른 베이스 용액을 사용하는 화학적인 스트레이트 파마.

염색 및 탈색 (기술 교육 65 시간과 실습 50 시간):





염색 및 탈색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또한 반영구염색, 준영구염색, 일시 염착제 포함): 헤어 분석, 패치 테스트와 모발 테스트, 안전예방책, 재료 혼합, 딥팅, 탈색, 하이라이트와 로라이트, 염색 제거제 사용.

헤어커팅 (기술 교육 20 시간과 실습 300 시간):

헤어커팅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가위, 면도칼 (쉐이퍼), 전동 클리퍼/트리머, 습식 및 건식 커팅을 위한 슐(테이퍼링) 가위의 사용.

(2) 면도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 200 시간  
 면도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준비와 실행 (기술 교육 100 시간과 실습 40 시간)

준비와 실행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면도를 위해 고객의 헤어 준비, 고객의 피부 상태 진단, 면도 기술 실행, 면도 후 살균제 바르기, 고객의 얼굴 마사지하기, 롤링 크림 마사지.

(3) 보건과 안전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 200 시간 보건과 안전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법과 규정 (기술 교육 20 시간)

법률 및 규정 과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미용법 및 위원회의 규칙과 규정집.

보건과 안전 고려사항 (기술 교육 45 시간)

화학약품을 다루는 교육과정과 시설에서 보건 문제를 비롯한 보건과 안전/유해 물질 문제, 재료안전 자료,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 화학물질로 인한 부상 예방, 보건안전법과 관련 부처, 세균학과 HIV/AIDS 와 B 형 간염을 비롯한 전염병의 예방.



소독과 위생관리 (기술 교육 20 시간)

소독과 위생관리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기술자 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적절한 절차를 포함하는 소독과 위생관리 방법, 시설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적절한 살균 방법.

소독은 전체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하며, 모든 기구와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부학과 생리학 (기술 교육 15 시간)

해부학과 생리학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c) 위원회에서는 직업 윤리, 세일즈 기술, 고객자료 관리, 에티켓, 및 부스 임차인, 독립적인 하청업자, 직원, 고용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조세정보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관련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및 7334(f)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6(a) 항 및 7321.5(d) (2), 항. 7362(b) 항, 7362.5(a) 항 및 7389 항: 노동법 3078 항.

### 921.1. 미용사 도제 과정 커리큘럼.

(a) 이미용법 7316 항에 따라, 미용사 도제 과정에 등록된 도제를 위한 교육과정은 3200 시간의 기술 교육과, 미용사의 모든 실무를 포함하는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 이 항의 목적상, 기술 교육이란 시범, 강의, 학생의 참여, 또는 시험을 통한 수업을 의미한다. 실습이란 학생이 다른 사람이나 마네킹을 대상으로 전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습 교육이란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의 시간을 의미한다.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은 다음과 같은 시간동안 진행되어야 한다:

(1) 헤어드레싱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 2600 시간

헤어드레싱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헤어스타일링 (기술 교육 95 시간과 실습 450 시간):

헤어스타일링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헤어 분석, 머리 감기기, 핑거 웨이빙, 핀 컬링, 콤 아웃, 스트레이트닝, 웨이빙, 가열식 빗이나 가열식 아이언을 이용하는 컬링, 블로우 드라이어 스타일링.



파마와 스트레이트 파마 (기술 교육 40 시간과 실습 210 시간):  
 파마와 스트레이트 파마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헤어 분석, 산과 알칼리액 파마, 수산화나트륨과 다른 바탕 용액을 사용하는 화학적인 스트레이트 파마.

염색 및 탈색 (기술 교육 65 시간과 실습 215 시간):  
 염색 및 탈색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또한 반영구 염색, 준영구 염색, 일시 염착제 포함): 헤어 분석, 패치 테스트와 모발 테스트, 안전예방책, 재료 혼합, 틴팅, 탈색, 하이라이트와 로라이트, 염색 제거제 사용.

헤어커팅 (기술 교육 20 시간과 실습 300 시간):  
 헤어커팅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가위, 면도칼 (쉐이퍼), 전동 클리퍼/트리머, 습식 및 건식 커팅을 위한 숄(테이퍼링) 가위의 사용.

(2) 보건과 안전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 200 시간  
 보건과 안전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법과 규정 (기술 교육 20 시간):  
 법률 및 규정 과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미용법 및 위원회의 규칙과 규정집.

보건과 안전 고려사항 (기술 교육 45 시간):  
 보건과 안전과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화학적 조성 등을 다루는 미용화학, 화장품의 용도, 손톱, 헤어, 스킨 케어 준비, 기초적인 화학적 구성 성분의 이해, 화학적 피부 박리,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 화학약품을 다루는 교육과정과 시설에서 보건 문제를 비롯한 보건과 안전/유해 물질 문제,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 화학물질로 인한 부상 예방, 인체공학, 보건안전법과 관련 부처, 미용업에서 전기 이론, 세균학과 HIV/AIDS 와 B 형 간염, 포도상구균 감염을 비롯한 전염병 및 재료안전 자료.



소독과 위생관리 (기술 교육 20 시간):

소독과 위생관리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기술자 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적절한 절차를 포함하는 살균과 위생관리 방법, 시설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적절한 살균 방법.

살균은 전체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하며, 모든 기구와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부학과 생리학 (기술 교육 15 시간):

해부학과 생리학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3) 피부미용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 200 시간

피부미용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손, 전기, 화학 페이스셜 (기술 교육 25 시간 실습 65 시간):

손, 전기, 화학 페이스셜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클렌징, 과학적 처리 방법, 팩, 마스크를 비롯한 손 페이스셜. 전기적 치료요법, 피부관리 광선, 페이스셜 및 스킨 케어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적 기구를 포함하는 전기 페이스셜 (하지만, 신체 또는 얼굴 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자극을 주기 위해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화학적 페이스셜은 화학적 피부박리, 팩, 마스크, 스크럽 등이 포함된다. 교육시, 미용 목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표피라고 불리는 죽은 세포, 피부의 가장 최상층임을 강조해야 한다. 모든 실습은 피부박리에 관한 법률 992 항에 의거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눈썹미용과 화장 (기술 교육 25 시간 실습 55 시간):

눈썹미용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왁스, 전동 및 수동 핀셋, 불필요한 털 제거용 제모제를 사용 등 아치형 눈썹손질과 제모술.

화장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피부 분석, 보완 교정 화장술, 속눈썹과 눈썹의 틴팅, 인조속눈썹의 사용.



(4)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 200 시간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기술 교육 10 시간 실습 34 시간):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과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손톱 분석을 포함하는 수용성 및 지용성  
매니큐어, 손/발 및 팔/발목마사지.

인조손톱과 네일랩 (기술 교육 25 시간 (손톱) 실습 120 시간):  
아크릴재질을 포함한 인조손톱: 액체 및 파우더 브러쉬온, 인조  
네일팁, 네일랩, 네일보수.

(c) 위원회에서는 직업 윤리, 세일즈 기술, 에티켓, 자료관리, 고객 서비스  
기록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관련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및 7334(f)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6(b) 항 및 7321(d) (5), 항; 7362(b) 항; 7362.5(b) 항 및 7389 항;  
노동법 3078 항.

**921.2. 전기분해요법 과정 커리큘럼**

(a) 이미용법 7316 항에 따라, 전기분해요법 도제 과정에 등록된 도제를  
위한 교육과정은 3200 시간의 기술 교육과, 전기분해요법을 구성하는 모든  
실무를 포함하는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 이 항의 목적상, 기술 교육이란 시범, 강의, 학생의 참여, 또는 시험을  
통한 수업을 의미한다. 실습이란 학생이 다른 사람이나 마네킹을 대상으로  
전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습 교육이란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의 시간을 의미한다.

(1) 전기분해요법, 열분해요법, 혼합/이중 요법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  
400 시간 전기분해요법, 열분해요법, 혼합/이중요법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전기분해요법 (기술 교육 45 시간과 실습 120 시간)**  
 전기분해요법 과목은 단침 및 복침 삽입 기술을 이용한 털의 제거, 직류 사용, 피부 반응, 아나포레시스, 카타포레시스, 전기분해요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의 병력 평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열분해요법 (기술 교육 45 시간과 실습 120 시간)**  
 열분해요법 과목은 자동 수동 열분해요법 장비를 이용한 털의 제거, 삽입 기술, 고강도와 저강도의 고주파의 사용, 피부 반응, 열분해요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의 병력 평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혼합/이중요법 (기술 교육 45 시간과 실습 120 시간)**  
 혼합/이중요법 과목은 고주파와 직류의 조합을 이용한 털의 제거, 삽입 기술, 피부 반응, 아나포레시스, 카타포레시스, 혼합/이중 요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의 병력 평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전기 (기술 교육 15 시간)**  
 전기 과목은 전류의 성질을 다룬다. 전기 장치 운용 원칙, 전기 설비 운영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안전 예방책, 올바른 설비 보수 유지법.

(2) 보건과 안전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 200 시간  
 보건과 안전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법과 규정 (기술 교육 20 시간)**  
 법률 및 규정 과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미용법 및 위원회의 규칙과 규정집.

**보건과 안전 고려사항 (기술 교육 45 시간)**  
 보건과 안전과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세균학과 HIV/AIDS 와 간염, 헤르페스, 포도상구균 감염을 비롯한 다른 전염병과 예방책, 인체공학, 전기안전수칙, 및 재료안전 자료.



**소독 (기술 교육 25 시간)**

소독 과목은 테크니션 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적절한 절차와 기술 및 시설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살균 방법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소독과 위생관리는 전체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하며, 모든 기구와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소독 시간과 날짜를 반드시 모니터하고 기록해야 한다

**해부학과 생리학 (기술 교육 25 시간)**

해부학과 생리학 과목은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피부학, 피부 및 헤어 분석, 순환계, 신경계, 내분비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c) 위원회에서는 직업 윤리, 상담, 전후 트리트먼트 케어, 세일즈 기술, 에티켓, 자료관리, 고객 서비스 기록, 사업 기술, 및 독립적인 하청업자, 직원, 고용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조세정보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관련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및 7334(f)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6(f) 항 및 7330(d) (3), 항, 7362(b) 항, 7366 항 및 7389 항: 노동법 3078 항.

**922. 전학 또는 전과**

도제는 프로그램 스폰서의 변경 또는 승인된 관련 교육반에서 다른 교육반으로 전과 혹은 승인된 시설과 강사에서 다른 시설과 다른 강사로 전학을 요청할 수 있다. 도제와 프로그램 스폰서는 그 사실을 5 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33 및 7336 항.

**923. 면허의 반납**

면허 시험에 합격한 도제 또는 도제 교육 프로그램 등록을 취소한 도제, 도제 등록이 만료된 도제는 발급받은 도제 면허와 신분증 사진을 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35 항.



**924. 도제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a) 도제 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중단 시 도제 프로그램 스폰서는 도제 프로그램 이수 또는 중단 증명서를 도제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도제 프로그램 이수 또는 중단 증명서는 강사와 도제, 도제 프로그램 스폰서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b) 도제 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중단 증명서는 프로그램 스폰서가 작성하며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과정 제목.
- (2) 도제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 (3) 도제 면허 번호 및 소셜시큐리티 번호
- (4) 프로그램 스폰서 이름 및 위원회에서 부여한 스폰서 코드.
- (5) 이수한 총 관련 교육 시간.
- (6) 도제 교육을 이수 또는 중단한 날짜.
- (7) 과목별로 정해진 실무 교육(OJT)을 도제가 이수한 총 시간 수.
- (8) 사전 위원회 승인 도제 프로그램에서 받은 모든 교육.
- (9) 도제가 커리큘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진술.
- (10)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한,

서류의 모든 정보가 진실이며 정확하다는 진술서. 이 진술문은 아래와 같은 문구로 작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여기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진실이며 정확하다고 아래 서명하여 확약합니다.

("We, the undersigned, certify under penalty of perjury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at al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true and BARBERING AND correct.")

(c) 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면 도제는 신청서와 함께 도제 이수 증명서와 기타 모든 자격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21, 7321.5, 7324, 7326, 7330, 7333, 7337 항.

**925. 교사 책임에 대한 진술**

도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의 소유자는 도제 강사인 직원에게 서면으로 강사의 책임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강사 책임에 대한 진술서에는 노동법 3078 항 (a), (b), (c), (d), (e)호에 규정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나 그에 국한되지 않는다. 강사 책임에 대한 진술서는 시설 소유자와 도제 강사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시설 구내에 보관해야 한다. 강사 책임에 대한 진술서는 요청 시 위원회 또는 그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32, 7333, 7336 항.

**926. 사전 교육의 도제 학점**

(a) 사전 캘리포니아 도제 프로그램에서 받은 교육을 근거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사업 및 전문업법 7321 ~ 7330 항에 따라 시험 자격을 획득하려는 도제는 다음과 같은 자격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위원회가 승인한 도제 프로그램에서 사전 교육이 실시되었다.
  - (2) 위원회가 승인한 도제 프로그램의 재등록 직전 3 년 이내에 사전 교육이 실시되었다.
  - (3) 사전 학점이 부여되기 전에 도제와 강사, 학교 대표, 프로그램 스폰서가 서명하고 유효한 이수 또는 중단 증명서가 등록 프로그램 스폰서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4) 3200 시간의 도제 교육 과정 이수 시 시험 신청서와 함께 각 등록 기간에 대한 유효한 이수 또는 중단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 (b) 이수한 교육 학점을 취득하려면 도제는 승인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서 성실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부적절한 활동으로 해고되지 않았다.
  - (2) 도제 면허를 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프로그램 스폰서에게 반납하였다.
  - (3) CCR 915 항에 따라 관련된 보충 교육 수업에 출석하였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33, 7334, 7345 항.

**4 조. 시험**

**928. 시험의 예비지원서**

(a) 시험 예비 지원서는 지원자가 승인된 이발 또는 미용, 전기분해요법 학교에서 필수 과정 수업 시간과 커리큘럼 필수 과목을 75 퍼센트 이상(매니큐어사 과정 학생의 경우 60 퍼센트) 이수한 날 또는 누구든지 이발 또는 미용, 스킨케어, 네일케어 도제 면허를 취득하고 필수 도제 교육 시간의 75 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날로부터 역일 기준 7 일 이내에 우편 소인이 찍힌 시험 예비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시험 예비 지원서는 위원회 양식(Form PRE1, Request for Pre-Application, Rev. 1/05)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c) 예비 지원서 양식을 제출할 때 다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998 항에 규정된 예비 지원 수수료.

(2) 909 항에 규정된 교육 증명 서류 또는 924 항에 규정된 도제 이수 증명서(도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된 수수료와 지원자의 시험 자격 증명서 일체.

(3) 지원자가 교육을 이수한 학교 또는 지원자가 교육을 이수한 도제 프로그램 스폰서 앞으로 주소가 기재되고 소인이 찍힌 봉투.

(d) 예비 지원서에는 학생/도제가 교육 과정/도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예상 날짜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학생/도제가 예비 지원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커리큘럼 요건과 이수 시간 수를 이수하였음을 확약하고 학생/도제 및 학교/도제 프로그램 스폰서가 서명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e) 예비 지원서를 접수하고 30 일 이내에 위원회는 서면으로 지원자가 교육을 이수한 학교/도제 프로그램 스폰서의 지원자에게 예비 지원서가 완벽한지 여부 그리고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어느 정보 또는 서류가 필요한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서가 완벽할 경우 통지서 (PRE1 양식에 위원회에서 기입)에 지원자의 시험 예정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2) 예비 지원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누락된 사항이 수정되어 지원서가 다시 제출될 때까지 예비지원자들과 함께 치르는 지원자의 시험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다.

(f) 교육 증명 서류/도제 이수 증명서 및 PRE1 양식 중 위원회에서 기입하는 부분이 지원자의 과정/도제 예상 이수 날짜 이후 업무일 기준 3 일 이내 소인이 찍혀 위원회로 발송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원자는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없으며 지원자는 일반 지원자들과 함께 치르는 시험 일정에 시험을 치러야 한다.

(g) 교육 증명 서류/도제 이수 증명서를 접수하고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위원회는 서면으로 그 사실 또는 보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통지하여야 한다.



(1) 교육 증명 서류/도제 이수 증명서가 완벽할 경우 위원회는 지원자에게 시험 응시 허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2) 교육 증명 서류/도제 이수 증명서가 불완전할 경우 지원자는 예정 일자에 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며 완전한 교육 증명 서류/도제 이수 증명서가 접수될 때 시험 일정이 다시 확정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및 7337.5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37.5항.**

**931. 통역사 및 통역사/모델**

(a) 이발사 또는 미용사, 피부미용사, 매니큐어사, 전기분해 요법 시술사 시험의 지원자는 10 학년 수준으로 영어를 말하거나 읽고 쓸 수 없는 경우 시험 시간에 통역사 또는 통역사/모델을 쓸 수 있다.

(b) 지원자는 시험 지원서와 함께 또는 시험일로부터 30 일 이전에 지원자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양식(form #03B-125, form G, Request for Use of an Interpreter or Interpreter/Model)을 사용해서 통역사 또는 통역사/모델의 사용 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 지원자가 통역사 또는 통역사/모델로 지정한 사람은 시험 날짜로부터 15 일 이전에 위원회에서 규정한 양식(Form #03A-126, Form H, Rev 8/94)을 사용하여 그 사람이 선서 또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작성한 통역사 또는 통역사/모델의 역할을 하겠다는 요청서를 1 1/2 x 1 1/2 인치의 서명 사진 2 매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d) 통역사 또는 통역사/모델은 영어와 지원자의 모국어에 모두 능통하여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이 사실을 서면으로 확약하여야 한다.

(e) 통역사는 필기 시험만 통역할 수 있다.

(f) 통역/모델은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역할 수 있고 실기 시험의 모델을 하여야 한다.

(g) 통역사 또는 통역사/모델은 한 사람이 2 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다

(h) 이발 또는 미용 강사 시험에는 통역사를 사용할 수 없다.

(i)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험을 치를 권리가 있으며 의학적으로 인증된 서류를 가진 모든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가 제공된다.



- (j)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역사 또는 통역사/모델을 할 수 없다.
  - (1) 15 세 미만이 사람
  - (2) 현재 이발사 과정 또는 미용사 과정의 학생이거나 과거에 학생이었던 사람.
  - (3) 캘리포니아 주 또는 다른 주에서 교부한 이발 또는 미용 분야의 운영자 또는 강사 면허를 현재 소지하고 있거나 과거에 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
  - (4) 이발 도제 교육 프로그램에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과거에 등록한 적이 있는 사람.
  - (5) 미용 도제 교육 프로그램에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과거에 등록한 적이 있는 사람.
  - (6) 과거에 전기분해요법 운영 또는 시술 교육생이었던 사람.
  - (7) 현재 이발사 과정 또는 미용사 과정, 전기분해요법 학교의 소유자 또는 직원이거나 과거에 소유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 (k) 통역사 또는 통역사/모델 역할을 담당할 사람은 그 날로부터 1 년 동안 통역사 또는 모델 서비스를 제공한 이발 또는 미용 분야의 면허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 (l) 위원회가 이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상당히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 (m) 다른 언어로 통역을 하지 않고 시험을 지원자에게 읽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n) 위원회가 통역사 또는 통역사/모델이 시험 중에 답을 알려주거나 시험 중에 통역 대신에 지원자에게 다른 중요한 도움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역사 또는 통역사/모델의 자격이 박탈되고 지원자의 시험이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38 및 7340항.

### 932. 시험의 합격 점수

- (a) 시험은 실기와 필기 시험으로 구성된다.
- (b) 지원자는 실기 및 필기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획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절대 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위원회와 위원회의 시험 도급업체의 감독에 따라 과목 전문가의 권고를 기준으로 합격 점수를 결정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338, 7340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38 및 7340 항.

**934. 시험 점수 이의신청**

(a) 필기 또는 실기 시험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은 지원자는 시험 성적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b) 이의신청은 시험 성적 통지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중요한 절차적 오류 또는 시험 관리 중 불리한 환경 조건에 관한 이의신청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c) 이의신청의 검토는 1 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피지명자가 실시하며 지원자의 이의신청을 뒷받침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승인한 후 30 일 이내에 지원자에게 이의신청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응하여 위원회는 지원자가 요구되는 능력을 입증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면허의 교부를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및 7340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40 및 7341항.

**5조. 이동 설비차**

**937. 면허 교부 및 운영**

(a) 이동 설비차 운영 면허 신청서는 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제공하는 양식 (Form #03A-202, Application for License to Operate A Mobile Unit, Rev 1/93)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 시 사업 및 전문업법 7355(b)항에서 요구하는 증거 또는 진술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b) 이동 설비차 운영 면허를 받은 지리적 반경에는 이동 설비차가 서비스 제공을 허가 받은 도시와 카운티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동 설비차가 운영되는 영구적 주소에서 50 마일 이상 확장할 수 없다.



- (c) 이용 및 미용 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보건 및 안전 규칙은(이러한 규정의 12 조에 규정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동 설비차에 적용된다.
- (d) 모든 보관 캐비닛 문에는 안전 걸쇠가 있어야 한다.
- (e) 보관 캐비닛에 보관되지 않는 모든 장비는 이동 설비차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 (f) 이동 설비차가 이동 중일 때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g)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동 설비차에 출입할 수 있는 승강 시설이 있어야 한다.
- (h) 이동 설비차의 소유자는 이동 설비차로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에 관한 모든 지역 및 주,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i) 요청 시 위원회의 공식 담당관에게 날짜와 장소, 서비스 시간을 표시한 이동 일정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j) 위원회는 이동 설비차 운영 면허 신청서를 접수하고 역일 기준 10 일 이내에 신청서가 하자가 없어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또는 신청서가 누락된 것이 있어 어떤 특정 정보나 문서가 필요한지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k) 위원회는 누락된 부분이 없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역일 기준 21 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결정은 누락된 부분이 없는 신청서의 접수 통지일로부터 역일 기준 7 일 이내에 사업 및 전문업법 7355(a)항에 의거하여 최종 승인을 위한 이동 설비차에 대한 신청자와 위원회 또는 그 담당관 간에 잡은 검사 일정 약속에 따라 달라진다.
- (l) 최종 승인을 위한 검사는 사업 및 전문업법 7345 및 7357(b)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및 7357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45, 7355, 7357 항.

## 6 조. 학교

### 940. 미용 학교의 장비

- (a) 미용 학교가 갖추어야 할 최소 장비는 다음과 같다:
  - (1) 스킨케어와 전동 페이스셜 수업을 하기위한 전기 설비

주의: 신체 또는 얼굴 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자극을 주기 위해 이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헤어가 있는 머리 마네킹	10
(3) 시간 기록계나 시간 스캐너	1
(4) 샴푸 대야	5
(5) 드라이어	6
(6) 페이스셜 의자 또는 페이스셜 카우치	2
(7) 매니큐어 작업대	6
(8) 열 헤어스트레이트너	
(A)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빗	3
(B) 스토브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빗용)	1
(C) 전기 컬링 아이언	1
(D)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컬링 아이언 (최소 두가지 크기)	3
(E) 스토브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컬링 아이언용)	1
(9) 헤어스타일링 의자나 이발소 의자	15
(b) 이발학교가 갖추어야 할 최소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헤어가 있는 마네킹 머리	7
(2) 시간 기록계나 시간 스캐너	1
(3) 샴푸 대야	3
(4) 드라이어	4
(5) 헤어스타일링 의자나 이발소 의자	8
(6) 전기 컬링 아이언	1
(7)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빗	1
(8)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컬링 아이언 (최소 두가지 크기)	2
(9) 스토브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빗용)	1
(10) 수건 스티머	1
(c) 전기분해요법 이발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시간 기록계나 시간 스캐너	1
(2) 손씻을 싱크대	2
(3) 서비스 테이블	3
(4) 전기분해 제모기:	
(A) 고주파 열분해	2
(B) 혼합 제모기	2
(C) 복침	1
(5) 확대 램프/소형 확대경/양안 돋보기	3
(6) 높이조정 스툴	3
(7) 유틸리티 스탠드	3
(8) 주사바늘 회수용 용기	1개 /테이블당
(9) 건조 열 소독기	1
(10) 가압스팀멸균처리기	1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62.1 항, 7362.2 항, 및 7362.3 항.



**941. 학교의 승인**

(a) 사립 중고등교육과정 이후 학교가 위원회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으로 구성된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가 위원회에서 승인한 교육 과정 또는 미용 학교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학교 승인에 대한 사업 및 전문업법 7362.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진술하고 학교의 소유자가 서명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문서.

(2) 사립 중고등 이후 교육 및 직업 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and Vocatio-nal Education)에서 학교에 교부한 유효한 최신 기관 승인 증명서 사본.

(b) (a)호의 규정에 따라 승인 요청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 10 일 이내에 위원회는 승인되었음을 또는 승인 요청서에 누락된 정보가 있으며 승인 요청서를 완전하게 갖추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c) 모든 새 학교와 소유권 또는 위치가 변경된 학교는 (a)호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d) 승인된 학교가 사업 및 전문업법 7362 또는 7362.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역일 기준 7 일 이내에 위원회에 어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62 및 7362.1항.**

**7 조. 평생 교육**

**950.1. 이발사 과정의 커리큘럼**

(a) 이발사 과정에 등록된 학생의 커리큘럼은 이미용법 7316 항에 규정된 모든 행위에 관한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 1500 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 이 항의 목적 상 기술 교육은 시범, 강의, 수업 참여 또는 시험을 통한 수업을 의미하며 실습은 학생이 다른 사람 또는 마네킹을 대상으로 전체 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습 교육이란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의 시간을 의미한다.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헤어 드레싱에 대한 기술 교육 및 실습 1100 시간

헤어 드레싱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헤어스타일링(기술 교육 65 시간 및 실습 240 시간):

헤어스타일링 과목은 다음 기술과 절차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기술과 절차를 다루어야 한다. 모발 분석, 샴푸, 핑거 웨이빙, 핀 컬링, 콤아웃, 스트레이트닝, 웨이빙, 뜨거운 빗과 뜨거운 컬링 아이언을 사용한 컬링, 블로우 드라이어 스타일링.

파마 및 스트레이트 파마(기술 교육 40 시간과 실습 105 시간):

파마와 스트레이트 파마 과목은 다음 기술과 절차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기술과 절차를 다루어야 한다. 모발 분석, 산 및 알칼리 파마, 스트레이트 파마, 수산화나트륨과 기타 염기 용약 사용.

염색 및 탈색(기술 교육 60 시간 및 실습 50 시간):

염색 및 탈색 과목은 다음 기술과 절차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기술과 절차를 다루어야 한다(또한 반영구적 염색 및 준영구적, 일시적 염색): 모발 분석, 패치 테스트 및 모발 테스트, 안전 조치, 약품 혼합, 틴팅, 탈색, 하이라이트 및 로우라이트, 염료 제거제 사용.

헤어커팅(기술 교육 20 시간 및 실습 80 시간):

헤어커팅 과목은 다음 기술과 절차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기술과 절차를 다루어야 한다. 습식 커팅과 건식 커팅 시가위, 면도칼(세이퍼), 전기 클리퍼/트리머, 숄가위 사용.

(2) 면도에 대한 기술 교육 및 실습 200 시간

면도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준비 및 면도(기술 교육 100 시간 및 실습 40 시간):

준비 및 면도 과목은 다음 기술과 절차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기술과 절차를 다루어야 한다. 고객 수염의 면도 전 준비, 고객 피부 상태 평가, 면도 기술의 실행, 페이스 서비스 후 애프터셰이브 소독제 바르기, 고객 얼굴의 마사지, 롤링 크림 마사지.



(3)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기술 교육 200 시간  
 보건 및 안전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의 기술 교육을 마쳐야 한다

법률 및 규정(기술 교육 20 시간)

법률 및 규정 과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미용법 및 위원회의 규칙과 규정집.

보건 및 안전 사항(기술 교육 45 시간)

시설 내 화학물질 및 보건, 물질 안전 자료, 유해 화학 물질 사고 방지, 화학 물질에 의한 부상 방지, 보건 및 안전 법률 및 기관, 세균학, HIV/AIDS 및 B 형 간염 등 전염병 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 안전 및 유해 물질.

소독 및 위생(기술 교육 20 시간)

소독 및 위생 과목은 다음 기술과 절차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기술과 절차를 다루어야 한다. 소독 및 위생(소비자 및 기술자의 보건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절차, 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적절한 소독 절차 포함).

소독은 전체 교육 기간 동안 강조되어야 하며 모든 기구와 장비의 사용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해부 및 생리학(기술 교육 15 시간)

해부 및 생리학 과목은 다음 문제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인체 해부학, 인체 생리학.

(c) 위원회에서는 직업 윤리, 세일즈 기술, 고객자료 관리, 에티켓, 및 부스 임차인, 독립적인 하청업자, 직원, 고용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조세정보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관련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및 73629(b)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6, 7321.5(d)(1), 7362.5(a), 7389 항.

## 950.2. 미용 과정의 커리큘럼

(a) 이미용법 7316항에 따라, 미용사 도제 프로그램에 등록된 도제를 위한 교육과정은 1600 시간의 기술 교육과, 미용기술을 구성하는 모든 실무를 포함하는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 이 항의 목적상, 기술 교육이란 시범, 강의, 학생의 참여, 또는 시험을 통한 수업을 의미한다. 실습이란 학생이 다른 사람이나 마네킹을 대상으로 전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습 교육이란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의 시간을 의미한다.

(1) 헤어드레싱 기술 교육과 실습 1100 시간

헤어드레싱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헤어스타일링(기술 교육 65 시간 및 실습 240 시간)

헤어스타일링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모발 분석, 머리 감기기, 핑거 웨이빙, 핀 컬링, 콤 아웃, 스트레이트닝, 웨이빙, 가열식 빗이나 가열식 아이언을 이용하는 컬링, 블로우 드라이어 스타일링.

파마와 스트레이트 파마 (기술 교육 40 시간과 실습 105 시간)

파마와 스트레이트 파마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모발 분석, 산과 알칼리용액 파마, 수산화나트륨과 다른 베이스 용액을 사용하는 화학적인 스트레이트 파마.

염색 및 탈색 (기술 교육 60 시간 및 실습 50 시간)

염색 및 탈색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또한 반영구 염색, 준영구 염색, 일시 염착제 포함): 헤어 분석, 패치 테스트와 모발 테스트, 안전예방책, 재료 혼합, 톤팅, 탈색, 하이라이트와 로라이트, 염색 제거제 사용.

헤어커팅 (기술 교육 20 시간과 실습 80 시간)

헤어커팅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가위, 면도칼 (쉐이퍼), 전동 클리퍼/트리머와 습식 및 건식 커팅을 위한 솔(테이퍼링) 가위의 사용.



(2) 보건과 안전 기술 교육과 실습교육 200 시간  
 보건과 안전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s:

법률 및 규정(기술 교육 20 시간)

법률 및 규정 과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미용법 및 위원회의 규칙과 규정집.

보건과 안전 고려사항 (기술 교육 45 시간)

보건과 안전과목은 다음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화학적 조성 등을 포함한 미용화학, 화장품의 용도, 손톱, 헤어, 스킨 케어 준비, 기초적인 화학적 구성 성분의 이해, 화학적 피부 박리,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

화학약품을 다루는 교육과정과 시설에서 보건 문제를 비롯한 유해 물질 문제,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 화학물질로 인한 부상 예방, 인체공학, 보건안전법과 관련 부처, 미용업에서 전기 이론, 세균학과 HIV/AIDS 와 B 형 간염, 포도상구균 감염을 비롯한 전염병 및 재료안전 자료.

소독과 위생관리 (기술 교육 20 시간)

소독과 위생관리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기술자 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적절한 절차를 포함하는 살균과 위생관리 방법, 시설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적절한 살균 절차. 소독은 전체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어야하며, 모든 기구와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부 및 생리학 (기술 교육 15 시간)

해부학과 생리학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3) 피부미용 기술 교육 및 실습 200 시간

피부미용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손, 전기, 화학 페이스 (기술 교육 25 시간 실습 40 시간):

손, 전기, 화학 페이스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클렌징, 과학적 마사지, 팩, 마스크를 비롯한 손 페이스. 전기적 치료요법, 피부관리 광선, 페이스 및 스킨 케어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적 기구를 포함하는 전기 페이스; 하지만, 신체 또는 얼굴 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자극을 주기 위해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화학적 페이스는 화학적 피부박리, 팩, 마스크, 스크럽 등이 포함된다. 교육시, 미용 목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표피라고 불리는 죽은 세포, 피부의 가장 바깥 쪽 세포층임을 강조해야 한다. 모든 실습은 피부박리에 관한 법률 992 항에 의거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눈썹미용 및 화장 (기술 교육 25 시간 실습 30 시간)

눈썹미용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기 위해 왁스, 전동 및 수동 핀셋, 또는 제모제 사용을 포함하는 아치형 눈썹손질과 제모. 화장 과목은 다음 기술과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피부 분석, 보완 교정 화장술, 인조속눈썹의 사용, 속눈썹과 눈썹의 틴팅. 단 해당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산업안전보건국, 또는 미국 환경보호부에 의해 미승인, 금지, 불법으로 공시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4)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기술 교육과 실습교육 100 시간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기술 교육 10 시간 실습 25 시간)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과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손톱 분석을 포함하는 수용성 및 지용성 매니큐어, 손/발 및 팔/발목마사지

인조손톱과 네일랩 (기술 교육 25 시간 (손톱) 실습 120 시간)

아크릴재질을 포함한 인조손톱: 액체 및 파우더 브러쉬온, 인조 네일팁, 네일랩, 네일보수



(c) 위원회에서는 직업 윤리, 세일즈 기술, 에티켓, 자료관리, 고객 서비스 기록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관련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7362항, 및 7362,1(c)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6(b)항, 7321(d) (1)항, 7362항, 7362.5(b) 항 및 7389항.

### 950.3. 스킨케어 과정의 커리큘럼

(a) 스킨케어 과정에 등록된 학생의 커리큘럼은 이미용법 7316 항에 규정된 모든 행위에 관한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 600 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 이 항의 목적상, 기술 교육이란 시범, 강의, 학생의 참여, 또는 시험을 통한 수업을 의미한다. 실습이란 학생이 다른 사람이나 마네킹을 대상으로 전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습 교육이란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의 시간을 의미한다.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페이셜에 대한 기술 교육 및 실습 350 시간

페이셜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손, 전기 및 화학 페이셜(기술 교육 70 시간과 실습 140 시간)  
 손, 전기 및 화학 페이셜 과목은 다음 기술과 절차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기술과 절차를 다루어야 한다: 세정과 과학적 마사지, 팩, 마스크를 포함하는 손 페이셜. 전기 페이셜에는 페이셜 및 스킨 케어용 피부재생 램프와 전기 기구 등 전기 치료법 사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를 신체 또는 얼굴의 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자극하는데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화학적 페이셜에는 화학적 피부 각질 제거, 팩, 마스크, 스크럽이 포함된다. 교육 시 표피라고 하는 죽은 세포인 얼굴 피부의 최상위층만 미용 목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모든 행위는 각질 제거에 관한 992 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준비(기술 교육 15 시간) 준비 과목은 다음 문제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고객 상담, 접수 절차, 금기, 직업 정신, 고객 기록 관리, 서비스 사전 및 사후 관리, CPR/AED, 살롱 및 스파 기술.



## (2)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기술 교육 200 시간

보건 및 안전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의 기술 교육을 마쳐야 한다.

## 법률 및 규정(기술 교육 10 시간)

법률 및 규정 과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미용법 및 위원회의 규칙과 규정집.

## 보건 및 안전 사항(기술 교육 40 시간)

보건 및 안전 과목은 다음 기술과 절차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기술과 절차를 다루어야 한다: 시설 내 화학 물질 및 보건 교육, 물질 안전 자료, 유해 화학 물질 사고 방지 및 화학 물질로 인한 부상 방지, 보건 안전 법률 및 기관, HIV/AIDS 와 B 형 간염 등 전염병, 화학 성분 및 화장과 스킨 케어 조제품의 용도, 기초 화학적 구성, 화학적 피부 각질 제거, 물질의 물리 및 화학적 변화, 전류, 전기 장치의 작동 원리, 전기 장비 사용시 여러 안전 조치.

## 소독 및 위생(기술 교육 10 시간)

소독 및 위생 과목은 다음 기술과 절차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기술과 절차를 다루어야 한다: 소비자와 기술자의 보건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절차. 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적절한 소독 절차.

소독은 전체 교육 기간 동안 강조되어야 하며 모든 기구와 장비의 사용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 해부 및 생리학(기술 교육 15 시간)

해부 및 생리학 과목은 다음 문제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인체 해부학, 인체 생리학, 세균학, 피부 분석 및 질환.

## (3) 제모와 화장에 대한 기술 교육 및 실습 50 시간

제모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눈썹 미용(기술 교육 25 시간 및 실습 50 시간)**

눈썹 미용 과목은 다음 문제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눈썹 그리기 및 제모 기법, 모발 분석, 약성, 핀셋 제모, 수동 또는 전기 제모기.

**화장(기술 교육 20 시간 및 실습 40 시간)**

화장 과목은 다음 문제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피부 분석, 기초 및 교정 화장, 인조 속눈썹 부착.

(c) 위원회에서는 직업 윤리, 세일즈 기술, 고객자료 관리, 에티켓, 및 부스 임차인, 독립적인 하청업자, 직원, 고용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조세정보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관련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362, 736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6(c)(1), 7324(d)(1), 7362, 7364, 7389항.**

**950.4. 네일케어 과정의 커리큘럼**

(a) 네일케어 과정에 등록한 학생의 커리큘럼은 이미용법 7316항에 규정된 모든 행위에 관한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 400 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 이 항의 목적 상 기술 교육은 시범, 강의, 수업 참여 또는 시험을 통한 수업을 의미하며 실습은 학생이 다른 사람 또는 마네킹을 대상으로 전체 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습 교육이란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의 시간을 의미한다.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네일 케어에 대한 기술 교육 및 실습 300 시간

네일 케어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기술 교육 60 시간 및 실습 60 시간, 네일 180 시간)**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과목은 다음 기술과 절차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기술과 절차를 다루어야 한다. 손과 팔 마사지를 포함한 습식 및 오일 매니큐어, 발과 발목 마사지를 포함한 전체 발 매니큐어, 액체, 젤, 파우더 브러시온을 포함한 인조 네일 부착, 네일 팁, 네일 랩 및 회복, 네일 분석.





**(2) 보건 및 안전의 기술 교육 및 실습 100 시간**

보건 및 안전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법률 및 규정(기술 교육 10 시간)**

법률 및 규정 과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미용법 및 위원회의 규칙과 규정집.

**보건 및 안전 사항(기술 교육 25 시간)**

보건 및 안전 과목은 다음 기술과 절차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기술과 절차를 다루어야 한다. 화학 성분 및 네일 케어 조제품의 용도를 포함한 매니큐어사 행위에 관련된 화학, 보건 및 안전/유해 물질(시설 내 화학물질 및 보건, 물질 안전 자료, 유해 화학 물질 사고 방지, 화학 물질에 의한 부상 방지, 보건 및 안전 법률 및 기관, 인체공학, HIV/AIDS 및 B 형 간염 등 전염병에 대한 교육 포함).

**소독 및 위생(기술 교육 20 시간 및 실습 10 시간)**

소독 및 위생 과목은 다음 기술과 절차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기술과 절차를 다루어야 한다. 소비자 및 기술자의 보건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절차. 필수적인 최소 10 가지의 행위에는 979 및 980 항에 규정된 기구와 장비의 소독에 필요한 모든 직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소독은 전체 교육 기간 동안 강조되어야 하며 모든 기구와 장비의 사용 전에 실시되어야 하고 980.1, 980.2, 980.3 항에서 자세히 규정한 페디큐어 발 스파 및 족욕기 소독 절차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균학과 해부, 생리학(기술 교육 10 시간)**

해부 및 생리학 과목은 다음 문제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세균학과 해부학, 생리학, 네일 분석 및 질환.



(c) 위원회에서는 직업 윤리, 세일즈 기술, 고객자료 관리, 에티켓, 및 부스 임차인, 독립적인 하청업자, 직원, 고용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조세정보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관련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362, 7365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6(c)(2), 7326(d)(1), 7362, 7365, 7389항.

**950.5. 전기분해요법 과정의 커리큘럼**

(a) 전기분해 요법 과정에 등록된 학생의 커리큘럼은 이미용법 7316 항에 규정된 전기분해요법 기술을 구성하는 모든 행위에 관한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 600 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 이 항의 목적상, 기술 교육이란 시범, 강의, 학생의 참여, 또는 시험을 통한 수업을 의미한다. 실습이란 학생이 다른 사람이나 마네킹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습 교육이란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의 시간을 의미한다. 기술 교육과 실습 교육은 다음과 같은 시간동안 진행되어야 한다.

(1) 전기분해요법, 열분해 요법, 혼합/이중 치료법 및 전기에 관한 기술 교육 및 실습 400 시간

전기분해요법, 열분해 요법, 혼합/이중 치료법 및 전기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의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전기분해요법(기술 교육 45 시간 및 실습 60 시간)

전기분해요법의 과목에는 단일 및 복수 바늘 삽입 기법을 사용한 탈모, 직류의 사용, 피부 반응 및 아나포레시스, 전기 이동,

전기분해요법 치료 적합성에 대한 고객의 병력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열분해 요법(기술 교육 45 시간 및 실습 60 시간)

열분해 요법의 과목에는 자동 및 수동 열분해 요법 장비를 사용한 탈모, 삽입 기법, 고강도 및 저강도 고주파 전류 사용, 피부 반응,

열분해 요법 치료의 적합성에 대한 고객의 병력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혼합/이중 치료법(기술 교육 45 시간 및 실습 60 시간)

혼합/이중 치료법 과목에는 고주파와 직류를 함께 사용하는 탈모, 삽입 기법, 피부 반응과 아나포레시스, 전기 이동, 혼합/이중 치료법 시술의 적합성에 대한 고객 병력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기술 교육 15 시간)

전기 과목에는 전류의 특성, 전기 장치의 작동 원리, 전기 장비를 작동할 때 적용해야 할 여러 안전 조치, 올바른 장비 유지 보수.

(2)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기술 교육 200 시간

보건 및 안전 교육의 필수 과목은 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의 기술 교육을 마쳐야 한다.

법률 및 규정(기술 교육 20 시간)

법률 및 규정 과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미용법 및 위원회의 규칙과 규정집.

보건 및 안전 사항(기술 교육 45 시간)

보건 및 안전 과목에는 세균학, HIV/AIDS, 간염, 헤르페스, 포도상 구균 감염, 기타 전염병 및 예방, 인체 공학, 전기 안전 및 물질 안전 자료를 포함해야 하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살균(기술 교육 20 시간)

살균 과목에는 소비자와 기술자의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는 적절한 절차와 기법,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살균이 포함해야 하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소독 및 위생은 전체 교육 기간 동안 강조되어야 하며 모든 기구와 장비의 사용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살균 시간과 날짜를 모니터하고 기록해야 한다.

해부 및 생리학(기술 교육 20 시간)

해부 및 생리학 과목에는 인체 해부학과 생리학, 피부병학, 피부 및 모발 분석, 순환계, 신경계, 내분비계를 포함해야 하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c) 위원회에서는 직업 윤리, 상담, 전후 트리트먼트 케어, 세일즈 기술, 에티켓, 자료관리, 고객 서비스 기록, 사업 기술, 및 독립적인 하청업자, 직원, 고용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조세정보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영역의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및 7362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6(f), 7330(d)(1), 7362, 7366, 7389항

**950.10. 특수 면허와 교육 전과에 대한 학점**

(a) 한 교육 과정에서 다른 과정으로 전과하는 학생 또는 일반 교육 과정에 등록하는 특수 면허(예: 매니큐어사 또는 피부미용사) 소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수한 총 시간에 대한 학점과 각 과목당 필요한 최소 시간의 기술 교육과 최소 실습에 대한 이수 학점과 이수에 필요한 남은 학점을 인정 받아야 한다.

(1) 총 이수 시간 학점.

(A) 미용사 과정에서 피부미용사 과정으로 전과. 미용사 과정에서 피부미용사 과정으로 전과하는 학생은 미용사 과정에 등록한 기간 동안 취득한 총 이수 시간의 35 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점을 받는다.

(B) 미용사 과정에서 매니큐어사 과정으로 전과. 미용사 과정에서 매니큐어사 과정으로 전과하는 학생은 미용사 과정에 등록한 기간 동안 취득한 총 이수 시간의 20 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점을 받는다.

(C) 피부미용사 과정에서 미용사 과정으로 전과. 피부미용사 과정에서 미용사 과정으로 전과하는 학생은 피부미용사 과정에 등록한 기간 동안 취득한 총 이수 시간의 65 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점을 받는다. 미용사 과정에 등록하는 피부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피부미용사 과정에 필요한 총 이수 시간의 65 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점을 받는다.

(D) 매니큐어사 과정에서 미용사 과정으로 전과. 매니큐어사 과정에서 미용사 과정으로 전과하는 학생은 매니큐어사 과정에 등록한 기간 동안 취득한 총 이수 시간의 70 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점을 받는다. 미용사 과정에 등록하는 매니큐어사 면허 소지자는 매니큐어사 과정에 필요한 총 이수 시간의 70 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점을 받는다.

(2) 필요한 최소 시간의 기술 교육과 최소 실습 시간에 대한 이수 학점과 이수에 필요한 남은 학점. 한 과정에서 다른 과정으로 전과하는 학생 또는 일반 교육 과정에 등록한 특수 면허 소지자는 새 과정에서 각 해당 과목에 필요한 최소 기술 교육 시간과 최소 실습에서, 이전 과정의 등록 기간 동안 학생 또는 면허 소지자가 취득한 시간 수와 실습을



차감하여, 필요한 최소 기술 교육 시간과 최소 실습에 대한 이수 학점과 이수에 필요한 남은 학점을 인정 받는다. 학생이 새 과정의 해당 과목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시간 또는 실습을 취득한 경우, 그 학생이 그 과목 이수에 필요한 교육과 실습 시간은 0 시간이다.

(b) 학생이 특수 과정의 이수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학점과 그 외 추가적으로 이수한 교육과 실습의 시간 수의 합이 미용 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최소 시간 수와 같아질 때까지, 미용 과정의 학생에게 특별 과정의 학점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c) 2009 년 1 월 1 일 이전에 도제로서 받은 교육은 학교 교육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도제 프로그램에서 학교 교육 과정으로 이전될 수 있는 최대 시간 수는 도제가 전학하는 학교의 합리적으로 판단에 따라 800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도제로서 취득한 각 시간당 50%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009 년 1 월 1 일 이후에 도제로서 받은 교육은 학교 교육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d) 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도제 프로그램의 교육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67항*.

**950.12. 유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업무 수행**

(a)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1 학년 교육을 마칠 때까지 유료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학년은 각 과정에 지정된 총 교육 시간의 10 퍼센트에 해당된다.

(b)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고객이 지불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 교육과 실습을 마칠 때까지 유료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c) 이 항의 목적상, 기술 교육이란 시범, 강의, 학생의 참여, 또는 시험을 통한 수업을 의미한다. 실습이란 학생이 다른 사람이나 마네킹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및 7362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62(b), 7362.5, 7364, 7365, 7366항*.



**961. 온라인 교육과 교재 및 학생용 참고서**

(a) 인가받은 학교는 교육시 주 연합 미용이사 위원회(NIC)에서 인증을 받은 교재와 참고서를 사용해야 한다. 인가받은 학교는, NIC 에서 먼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교재 대신 다른 교육 자료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b) 학생 개개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NIC 승인을 받은 교재 1 권 이상 또는 NIC 승인을 받은 온라인 프로그램에 접속.

(2) 이미용법과 이미용위원회 법규정집.

(c)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용할 수 있다.

(1) NIC 승인 교재와 참고서 목록.

(2) 학생이 소유한 한권의 교재나 접속 가능한 한 개의 온라인 프로그램 외에 다른 두 권의 교재 (승인받은 책이 세 권 미만인 경우 이발사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항, 736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62항.**

**8.5 조 인턴 프로그램**

**962. 정의**

(a) 사업 및 전문업법 (c)(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7395.1 항의 목적 상 “성실”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1) 면허 취득자는 이미용 위원회에서 교부하고 현재 유효한 이발사 또는 미용사, 피부미용사, 매니큐어사 면허를 유지한다.

(2) 이미용법 11 조에 의거한 면허 관련 징계가 현재 없거나 보류 중인 징계도 없다.

(3) 면허 취득자는 이미용법 12 조에 따라 부과된 미납 벌금이 없다.

(b) 사업 및 전문업법의 (g)(3)호에 규정된 7395.1 항의 목적상, “적절한 교육”이라 함은 학생 인턴이 이 절의 950.2-950.4 항에 규정된 의무적 최소 실습과 최소 시간의 기술 교육의 60 퍼센트를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c) 사업 및 전문업법 (g)(3)호에 규정된 7395.1 항의 목적 상, “화학 트리트먼트”라 함은 제품의 준비 및/또는 제품의 적용을 포함하여 화학트리트먼트를 통하여 모발 또는 피부, 네일의 분자 구조를 변경하는 모든 제품 또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트리트먼트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 (1) 파마
- (2) 소프트 파마
- (3) 스트레이트 파마
- (4) 수산화나트륨 및 기타 염기 용액
- (5) 염색 및 탈색(반영구적 및 영구적)
- (6) 화학적 피부 각질 제거 제품
- (7) 탈모제 제품
- (8) 눈썹 및 속눈썹 틴팅 제품

(d) 사업 및 전문업법 (g)(3)호에 규정된 7395.1 항의 목적 상,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감독”이라 함은 지정된 면허 소지자가 작업 현장에서 작업 과정을 감독하는 경우에 학생 인턴은 보조 역할로만 유료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말한다. 학생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는 학생 인턴을 감독하는 지정된 면허 소지자의 행위 범위 내이어야 한다.

(e) 사업 및 전문업법 (g)(3)호에 규정된 7395.1 항의 목적 상, “직접 감독을 받는”이라 함은 지정된 면허 소지자가 작업 현장에서 작업 과정을 감독하지 않는 한 학생 인턴은 화학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없음을 말한다. 학생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는 학생 인턴을 감독하는 지정된 면허 소지자의 행위 범위 내이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95.1항.

**962.1. 미용 인턴 프로그램의 참여 통지**

(a) 미용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과 면허 취득자의 962 항에 규정된 성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참여하는 각 학교의 책임이다. 참여하는 시설 또는 면허 소지자의 “성실성”이 변화할 경우 시설 또는 면허 소지자는 그 프로그램의 참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b) 미용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와 시설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인턴 프로그램 참여를 지속하려면 매년 참여 통지를 갱신하여야 한다. 이 통지서는 학교에서 작성하며 다음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 (1) 학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위원회에서 부여한 학교 코드.
- (2) 시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위원회에서 교부한 면허 번호.



(3) 시설의 소유자 이름.

(4) 서류의 모든 정보는 진실이며 정확하고 학교와 시설은 이 조와 사업 및 전문업법 7395.1 항의 모든 요건을 준수한다고 기재하고 학교와 시설이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한 진술서. 이 진술문은 아래와 같은 문구로 작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여기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진실이며 정확하다고 아래 서명하여 확약합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16 편 9 절 8.5 조와 사업 및 전문업법 7395.1 항의 모든 요건을 준수합니다.(We, the undersigned, certify under penalty of perjury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at al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true and correct. We have complied with all requirements of Article 8.5 of Division 9 of Title 16 of the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and Section 7395.1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5) 문서는 학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사람의 이름과 직위가 명확하게 인쇄 또는 타이핑되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95.1항.

### 962.2. 코팅된 학교 신분증

(a) 승인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동안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은 사진이 부착되고 코팅된 학교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b) 사진이 부착되고 코팅된 학교 신분증의 최소 크기는 2.5인치 x 3.5인치 (6.35 x 8.89cm) 이고 다음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학생 인턴의 이름(이름, 중간 이름 이니셜, 성), 1.5인치X1.5인치(3.81 X 3.81cm) 크기의 인턴의 얼굴 전체가 나온 최근 컬러 사진, 14 포인트로 인쇄된 “학생 인턴(STUDENT EX-TERN)”이라는 글자, 학생 인턴이 등록된 미용 학교의 이름.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95.1항.

## 9 조. 면허

### 965. 면허증의 게시

(a) 모든 기술자의 면허는 눈에 잘 띄게 주 작업장에 게시되어야 한다.

(b) 모든 시설 면허는 눈에 잘 띄게 접수 구역에 게시되어야 한다.

(c) 사업 및 전문업법 7316 항에 규정된 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사람도 만료되었거나 어떠한 사유로든지 효력이 정지된 면허를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 게시된 그러한 모든 면허는 요청 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6, 7317, 7332, 7342, 7397, 7414, 7415, 7417, 7418, 7419, 7420 항.





## 10 조. 징계 절차

### 969. 특정 직무의 위임

법률에 따라 위원회에 부여된 다음의 권한과 재량권은 이 조항에 의거하여 행정관이나 행정관의 부재 시 행정관 대리인에게 위임되고 부여된다:

고발의 접수 및 제출, 청문회 통지서와 피고인에게 보내는 진술서, 문제에 대한 진술서의 교부, 항변 통지서의 접수 및 제출, 정부 법전 11508 항에 따른 청문회 시간과 장소의 결정, 소환장 및 문서 지참 소환 영장의 발부, 청문회 결정 및 일정 수립과, 정부 법전 11500 ~ 11528 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인 청문회 전에 그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위원회 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필요한 기타 직무의 수행, 동 법전의 11518 항에 의거한 결정의 인증 및 발송.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0 및 7403항*.

### 970. 밀접한 관련성 기준

사업 및 전문업법 1.5 절(475 항에서 시작)에 의거한 동 법 3 절 10 장에 따라 교부된 면허의 거절, 정지, 취소의 목적 상, 범죄나 그 행위의 증거가 존재하고, 면허 취득자가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복리에 부합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면허에 의해 승인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불가한 경우, 그러한 범죄 또는 행위는 면허 소지자의 자격 또는 직무, 의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범죄 또는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a) 사업 및 전문업법 3 절 10 장의 규정 위반.

(b) 음란 행위, 약물 또는 마약의 사용이나 판매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면허에 의해 승인된 직무 또는 의무 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직무 또는 의무 수행 중에 행한 형사범죄.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135, 163.5항, 1.5 절(475 항 이하 참조), 7321, 7321.5, 7324, 7326, 7330, 7333, 7404항*.

### 971. 재활의 기준

(a) 사업 및 전문업법 3 절 10 장에 따라 제출된 신청에 대하여 사업 및 전문업법 480 항에 따라 면허 거부를 검토하는 경우 신청자의 재활과 현재 면허 자격을 평가할 때 위원회는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거부 사유로서 검토 중인 행위 또는 범죄의 본질 및 심각도
- (2) 사업 및 전문업법 480 항에 따라 거부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 거부 사유로 검토 중인 행위 또는 범죄 이후에 행해진 모든 행위에 대한 증거.
- (3) (1) 또는 (2)목에 언급된 행위 또는 범죄의 실행 이후 경과된 시간.
- (4) 신청자에게 합법적으로 부과된 가석방 또는 감호, 변상, 기타 제재의 조건을 준수하는 정도.

(5)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재할의 증거

(b) 사업 및 전문업법 490 항에 의거한 동 법의 3 절 10 장에 따라 교부된 면허의 일시 정지 또는 취소를 검토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사람의 재할과 현재 면허 자격을 평가할 때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행위 또는 위법 행위의 본질과 심각도.
- (2) 모든 범죄 기록.
- (3) 행위 또는 위법 행위 이후 경과한 시간.
- (4) 신청자에게 합법적으로 부과된 가석방 또는 감호, 변상, 기타 제재의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5) 해당될 경우, 형법전의 1203.4 항에 따른 범죄 기록 삭제 소송의 증거.

(6) 해당 되는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재할의 증거

(c) 면허 회복의 청원을 검토할 경우 위원회는 (b)목에 규정된 재할 기준을 고려하여 청원자가 제출한 재할 증거를 평가하여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1.5 절 (475항 이하 참조), 7321, 7321.5, 7324, 7326, 7330, 7333, 7404항.

### 972. 징계 지침

행정절차법(정부 법전 11400 항 이하 참조)에 따른 징계 조치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참조로 여기에 포함된 “징계 지침”(2010 년 10 월)의 징계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독자적 재량으로 특정 케이스에 관한 사실이 그러한 일탈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경우 감호의 표준 조건을 포함하여 이러한 지침으로부터 벗어난 재량권의 행사는 적절하다. 예: 정상 참작 요인의 존재, 그 케이스의 나이, 증거의 문제.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404 항.

**973. 즉각적 정지의 사유**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 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대표는 위원회 행정관 또는 그 피지명자에게 면허 시설이나 학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즉시 면허를 일시 정지하고 면허를 감호 처분하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 (a) 페디큐어 풋 스파, 또는 족욕기, 족탕기가 현저히 깨끗하지 않음.
- (b) 스크린 또는 제트, 발판, 임펠러의 제거 시 발 매니큐어 풋 스파에 찌꺼기가 있음.
- (c) 매니큐어 및/또는 페디큐어 장비의 소독 및 위생에 부적합한 청소 재료가 시설 현장에서 발견됨.
- (d) 페디큐어 청소 일지가 없음.
- (e)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장비에 대한 보건 및 안전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이력이 있음.
- (f) 매니큐어 및/또는 페디큐어 도구가 현저히 깨끗하지 않음.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 항.

**973.1. 즉각적인 정지 절차**

위원회의 행정관 또는 피지명자는 위원회 담당관이 실시한 검사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담당관은 신속한 전자 전송 수단을 사용하여 행정관 또는 그 피지명자에게 증거 사진을 전송하여야 한다. 증거 사진 수취 시 행정관 또는 그 피지명자가 공중의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행정관 또는 그 피지명자는 즉각적 정지 서면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 항.

**973.2. 즉각적 정지 통지서의 내용**

즉각적 정지 통지서에는 다음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 (a) 위반한 특정 조항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위반의 내용을 설명하는 진술.



(b) 정지 처분이 즉각적으로 집행되며 면허가 1 년간 감호 처분된다는 진술.

(c) 감호 처분의 집행 일자

(d)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 항.

**973.3. 감호 기간 및 조건**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 항 및 규정 973 항에 따라 면허가 즉각적인 일시 정지되고 감호 처분을 받은 면허 소지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a) 감호 처분 중인 면허 소지자는 매월 다음을 기재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서명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모든 페디큐어 청소 일지 사본

(2) 해당되는 경우, 규정 973.4항에서 정의한 위원회 승인 교정 교육의 이수 증명서.

(b) 감호 처분을 받은 면허 소지자의 시설은 분기별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더 자주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시설의 소유자는 검사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검사 비용은 시설의 스테이션 당 \$42 이다. 스테이션은 페디큐어 작업대 또는 매니큐어 작업대이다.

(c) 감호 처분 중인 면허 소지자는 모든 행정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 납부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d)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 항에 따라 면허가 일시 정지되고 감호 처분을 받은 면허 소지자는 8 시간의 위원회 승인 교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 항

**973.4. 교정 교육**

교정 교육은 위원회가 승인한, 페디큐어 및 매니큐어 장비의 소독 및 위생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이어야 한다. 교정 교육 과정은 위원회의 보건 및 안전법 및 규정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 항

**973.5. 교정 교육 과정의 승인**

(a) 위원회로부터 교정 교육 과정을 승인 받으려면 교육 기관은 다음 정보를 기재한 과정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정 내용에 대한 설명. 과정 내용은 보건 및 안전법 및 위원회 규정을 다루어야 한다. 이 과정은 발 매니큐어 및 매니큐어 장비의 안전과 위생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2) 과정의 교육 방법. 각 과정의 교수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예) 강의, 세미나, 시청각 교육 등

(3) 과거 교육과 훈련, 경험에 비추어 강사가 규정된 교육 과정의 내용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증명서 승인 신청서와 함께 강사의 이력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4) 교육 과정 승인 신청서에는 교육 기관의 이름과 교육이 실시되는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b) 승인된 교정 교육 과정의 수정 또는 변경은 이 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위원회는 이 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 과정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교육 과정의 교육 기관이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위원회의 서면 승인서를 획득할 때까지 승인의 취소는 지속되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 항.**

### 973.6. 이의신청 과정

(a) 즉각적 일시 정지와 감호 처분을 받은 면허 소지자는 면허 정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역일 기준 30 일 이내에 위원회의 징계재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비공식 재심 청문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b) 규정된 기간 이내에 요청서 접수 시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북부와 남부 중 일시정지/감호 처분을 받은 면허 소지자에게 가까운 지역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 이 항에 의거한 이의신청은 다음 정기 징계 재심 청문회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c) 위원회 직원은, 적어도 청문회가 열리기 30일 이전에 청문회의 날짜, 시간, 장소를 기재한 서면 통지서를 감호 처분된 면허 소지자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감호 처분을 받은 면허 소지자는 징계 재심 청문회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서면으로 동의하여 30 일 통지를 보류할 수 있다.

(d) 감호 중인 면허 소지자는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 또는 공식 대리인을 청문회에 동반할 수 있다. 감호 중인 면허 소지자는 서면 정보 및/또는 구두 증언을 징계재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감호 중인 면허 소지자는 즉각적 정지/감호 처분된 면허의 다음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이미용법 또는 위원회에서 채택한 규정의 위반
  - (2) 해당되는 경우, 시정 기간
  - (3) 벌금 금액.
- (e) 징계재심위원회는 즉각적 정지 명령과 감호 처분을 확인 또는 수정, 해제할 수 있다. 징계 재심 청문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실의 인정과 법률적 결론을 근거로 한 서면 결정서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감호 처분을 받은 면허 소지자와 면허 소지자의 변호사에게 우송되어야 한다. 즉각적 정지와 감호 명령에 대한 징계재심위원회의 수정 판결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며 이에 대하여 이 항의 (h)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항소할 수 있다.
- (f) 징계재심위원회가 즉각적 일시 정지 및 면허의 감호 처분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징계재심위원회는 즉각적 일시 정지 및 감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 결정은 청문회 종료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g) 일시 정지된/감호 처분 중인 면허 소지자가 징계 재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97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합당한 불출석 사유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면허의 정지/감호 처분은 최종 결정이 되며 그 처분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h) 징계재심위원회가 즉각적 정지 및 감호 처분 명령을 확인하거나 수정할 경우 면허 소지자는 사업 및 전문업법 7411항에 따라 행정법 판사 앞으로 청문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징계재심위원회가 즉각적 일시 정지와 감호 처분 명령을 기각할 경우 행정법 판사 앞으로 제출된 요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i) 위원회는 감호 기간이 종료될 때 즉각적 정지와 감호 처분을 받은 각 면허 소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403.2 항

## 11 조. 행정 벌금 및 인용

### 974. 행정 벌금 유효료

- (a) 사업 및 전문업법과 캘리포니아 규정집 6 편 9 절에 명시된 항에 대한 위반 시 행정 벌금이 아래와 같이 부과될 수 있다.



항	위반			면제 가능성
	1차	2차	3차	
7313. 검사를 위한 시설의 출입	250	500	750	없음
7317. 무면허 시설	500	1,000	1,000	없음
7317. 무면허자	1,000	1,000	1,000	없음
7317. 만료된 시설 면허	250	300	500	없음
7317. 만료된 개인 면허	250	300	500	없음
7317. 면허가 만료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개인	25	50	100	없음
7317. 무면허 시설에서 근무하는 개인	250	300	500	없음
7320. 의료 행위	1,000	1,000	1,000	없음
7320.1 불법인 금속 기구의 사용	250	500	500	없음
7320.2 불법 트리트먼트 방법	500	500	500	없음
7336. 도제 감독 없음	100	150	200	없음
7348. 시설을 관리하는 면허 소지자 없음	100	150	200	없음
7349. 무면허자 고용	1,000	1,000	1,000	없음
7349.1 이발소 표시등의 불법 사용	25	50	100	없음
7350. 시설 - 주거용/출입구/금지된 용도	50	100	150	없음
7351. 화장실 요건 - 청결/창고/바닥/환기	50	100	150	없음
7352. 세면 시설에 비누/타월/손건조기 없음	50	100	150	없음
7358. 이동 설비차를 관리하는 면허 소지자 없음	100	150	200	없음
7359. 이동 설비차에 무면허자 고용	1,000	1,000	1,000	없음
7360. 이동 설비차 - 주거/금지된 용도	50	100	150	없음
7400. 주소 변경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음	50	100	150	없음
7404(l). 점검의 방해	200	300	500	없음
904(d).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없음	50	100	150	없음
905. 소비자 정보. 게시하지 않음/인쇄 크기가 규격과 다름(보건 및 안전)	50	100	150	없음



920. 도제 교육 기록 없음/불완전함	100	150	200	없음
965. 면허증의 게시	50	100	150	없음
978(a)(1),(a)(2),(a)(3),(a)(4). 보관 용기, 캐비닛, 용기	50	100	150	없음
978(a)(5). 용기의 소독제가 부족하여 완전히 담글 수 없음	100	150	200	없음
978(a)(6). 전기분해요법 기구용 스팀/건열 멸균기 없음	500	1,000	1,500	없음
978(b). 사용할 소독제가 없음	250	300	500	없음
978(c). 소독제 제조사 라벨이 부착된 용기 없음	250	300	500	없음
979.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와 장비의 소독	100	250	500	없음
980(a). 전기 제품의 부적절한 소독	100	250	500	없음
980(b). 소독된 전기 제품의 부적절한 보관	50	100	150	없음
980(c). 오염된 전기제품의 부적절한 보관	50	100	150	없음
980.1. 발 매니큐어 스파의 부적절한 소독 (의자당)	500	500	500	없음
980.1(c)(7). 980.1(d)(8).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일지 980.1(e)(4).	100	150	200	없음
980.1(g). 일지에 “비사용” 의자를 기록하지 않음. 의자에 해당 알림판을 게시하지 않음.	50	100	150	없음
980.2. 관 없는 풋 스파의 부적절한 소독 (1 개당)	500	500	500	없음
980.2(b)(7). 980.2(c)(6).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일지 980.2(d)(3).	100	150	200	없음
980.2(f). 일지에 “비사용” 의자를 기록하지 않음. 의자에 해당 알림판을 게시하지 않음.	50	100	150	없음
980.3. 월풀이 아닌 발대야의 부적절한 소독 (1 개당)	100	150	200	없음
980.3(b)(6).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일지	50	100	150	없음
980.3(e). 대야나 욕조의 부적절한 보관	50	100	150	없음





980.4 발대야와 발욕조에 일회용 라이너의 사용 후 부정확한 살균 처리	500	500	500	없음
980.4(a)(2).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일지	50	100	150	없음
980.4(a)(4). 발욕조대야당 5개의 규정 라이너 준비 규정의 위반	250	300	500	없음
981(a). 비살균 물품을 버리지 않음	100	150	200	없음
981(b). 새 물품이나 일회용 도구들의 부적절한 보관	50	100	150	없음
981(c). 의류에 기구나 물품을 넣거나 달고 다님	50	100	150	없음
982. 전기분해 요법 기구의 부적절한 살균	100	150	200	없음
983. 개인 청결	50	100	150	없음
984. 전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서비스 행위	100	250	500	없음
985. 넥스트립 또는 수건을 사용하지 않음	50	100	150	없음
986. 목덜미개/솔이 청결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임	50	100	150	없음
987. 수건	50	100	150	없음
988. 액체 용품, 크림, 파우더, 화장품	50	100	150	없음
989. 금지된 유해 물질/제품의 사용	500	500	500	없음
990. 머리받이 및 트리트먼트 테이블	50	100	150	없음
991. 침습적 시술의 수행	500	500	500	없음
992. 침습적 피부 각질 제거/표피	500	500	500	없음
993. 금지된 기구	300	400	500	없음
994. 청결 및 보수	50	100	150	없음
995(b),(c),(d),(e). 배관 표준	50	100	150	없음

(b) (a)호에 면제 가능 하지 않다고 표시된 위반은 위원회가 그 위반이 사업 및 전문업법 7407 항에 따라 시정될 수 없고, 따라서 사업 및 전문업법 7409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1 차 위반에 대한 벌금을 회피할 수 없는 위반을 말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406, 7407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406, 7407, 7409 항.



**974.1. 징계재심위원회**

- (a) 위원회의 징계재심위원회는 3 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 (b) 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복수의 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c) 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징계재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매년 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동시에 위원이 임명된다.
- (d)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재심위원회보다 먼저 열리는 비공식 소환 재심 청문회의 날짜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및 7410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410 항.

**974.2. 징계재심위원회에 이의신청**

- (a) 소환된 사람은 사업 및 전문업법 7411항에 규정된 청문을 요청하는 이외에 위반 통지일 또는 소환장 발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징계재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비공식 소환 재심 청문회의 개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b) 기간 내에 서면 요청서를 접수할 때 위원회 직원은 기록 상 소환된 사람의 주소와 가까운 지역에서 청문회 요청서 접수 후 최소 45 일 이내에 열리는 다음 청문회에 소환된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위원회 직원은 청문회 개최 최소 30 일 전에 청문회의 날짜, 시간, 장소를 기재한 서면 통지서를 소환된 사람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 (c) 소환된 사람은 청문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 시 변호사 또는 공식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 또한 서면 정보 및/또는 구두 증언을 징계재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d) 소환된 사람은 소환 또는 위반 통지의 다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이미용법 또는 위원회에서 채택한 규정의 위반:
  - (2) 해당될 경우, 시정 기간
  - (3) 벌금 금액.
- (e) 비공식 소환 재심 청문회 종료 시 징계재심위원회는 청문을 계속하거나 소환된 사람이 추가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록을 공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징계재심위원회가 청문을 계속하기로 결정할 경우 청문은 기록 상 소환된 사람의 주소와 가까운 지역에서 열릴 다음 청문회까지 계속된다. 위원회 직원은 (b)목에 따라 계속되는 청문회의 날짜, 시간, 장소를 소환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징계재심위원회가 추가 서면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록의 공개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경우 소환된 사람은 다음에 예정된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동일한 징계재심위원회에 추가로 서면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그 기록을 마감하고 그 문제를 다음에 예정된 청문회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f) 징계재심위원회는 벌금을 포함하여 그 소환을 확인, 수정, 기각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환장에 기록된 위반 또는 통지서의 위반, 행정 벌금이 증가되지 아니 한다. 징계재심위원회는 그 문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이전 위반 이력을 고려할 수 있다. 해당하는 경우, 비공식 소환 재심 청문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실의 인정을 근거로 한 서면 결정서가 소환된 사람과 그 변호사에게 우송되어야 한다. 그 결정의 효력 발생일은 소환된 사람에게 결정서가 우송된 후 30 일이며 그 효력 발생일이 결정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결정서는 부과된 벌금을 포함하여 발부된 소환에 대한 최종 결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g) 소환된 사람이 비공식 소환 재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975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합당한 불출석 사유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그 행정 벌금은 최종 결정이 되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h) 징계재심위원회가 벌금을 포함하여 소환 또는 위반 통지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소환된 사람은 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사업 및 전문업법 7411 항에 따라 행정법 판사 앞으로 청문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재심위원회가 소환 또는 위반 통지 전체를 취소하는 경우 행정법 판사 앞으로 제출되는 모든 청문회 요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410, 7412, 7413 항.

### 975. 합당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

위원회는 사업 및 전문업법 7413항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합당한 사유”를 정의한다. 질병 또는 자동차 사고, 사망, 직계 가족의 중병이나 기타 심각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위원회에서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모든 조건은 서면으로 입증되어야 한다(예: 의사의 진단서, 공식 사고 보고서, 부고).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413 항.



**976. 소환 및 무면허 활동**

위원회에서 교부한,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면허 없이 미용 또는 미용, 관련 업종, 또는 전기분해요법에 보수를 받고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나 회사, 법인에 대하여 시정 명령 또는 행정 벌금 납부 명령을 포함하는 소환장이 부과될 수 있다. 이 항에 의거하여 발부된 모든 소환은 동 법 125.9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125.9, 148, 7317 항.

**12 조. 보건 및 안전**

**977. 보건 및 안전 관련 용어의 정의**

다음의 용어들은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가압스팀멸균기 — 고압력 포화증기를 이용해서 도구, 장비 및 그 외 물품을 소독하는 기구.

일반의약품 —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 대중이 구입할 수 있는 미용, 이발, 전기분해 요법 제품.

화장품 — 사람들의 외모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

오염된 — 혈액이나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감염원이 물품의 표면에 묻어있거나 눈에 보이는 먼지, 모발, 피부 조각이 존재하는 상태.

진피 — 표피 바로 아래 세포층- 살아있는 피부세포층.

살균하다 또는 살균 — 기구나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해로운 박테리아, 바이러스 병원균을 제거하는 행위.

소독제 — 미국 환경보호국 (EPA) 등록 제품으로, 미국환경보호국에서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인증한 제품. 그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EPA 등록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구를 살균할 수 있도록 액체로 되어있거나 전기 기구나 가위를 살균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나 물티슈 형태여야 한다.

건식 열소독기구 — 거의 또는 전혀 수증기가 없고온 에어를 사용해서 설비와 물품을 소독하는 기기.



표피— 피부의 가장 바깥쪽 세포층; 죽은 세포층.

전기 기구— 이발, 미용, 전기분해 요법을 위해 작동시키려면 전기가 필요한 기구로서, 전기 코드, 무선 충전기, 건전지를 사용하는 모든 기구. 클리퍼, 드라이어, 컬링 아이언, 스트레이트너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 외에 다른 기구들도 있다.

발대야 — 풋스파 의자에 앉아서 페디큐어하는 동안 고객이 발을 담구는 물 담는 용기. 고온스타일링 기구— 헤어 스타일링을 할때 열을 이용하는 기구.

열스타일링 기구 — 헤어 스타일링을 위해서 열을 사용하는 기구.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 이발, 미용, 전기분해 요법을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서 어떤 형태의 전기도 사용하지 않는기구. 가위, 면도칼, 큐티클니퍼, 큐티클 푸셔, 네일 클리퍼, 메탈파일, 메탈스무더, 빗, 헤어클립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 외에 다른 기구들도 있다.

유독성이 있는 — 인체에 들어오거나 접촉하면 병을 일으키거나 사망의 원인 될 수도 있는 물질.

위생적인—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

오염된— 더러운; 깨끗하지 않은.

소독하다 또는 소독— 가압스팀멸균처리기 또는 건식 열소독기구를 사용해서 전파나 전염이 가능한 인자(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포자)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죽이는 과정.

욕조 — 물을 채워서, 페디큐어하는 동안, 고객이 발을 담글 수 있는 독립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오픈 형 그릇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978. 최소 장비 및 용품**

(a) 시설 및 학교는 다음의 최소 장비와 용품을 보유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헤어 서비스를 실습하는 장소라면 한 개 이상 뚜껑이 달린 머리카락 처리용 쓰레기통 배치. 머리카락은 반드시 뚜껑이 달린 용기에 처리해야 한다.

(2) 밀폐된 공중 구역에 더러워진 타월과 가운, 시트를보관하는 폐쇄형 용기.

(3) 깨끗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 수건, 가운, 작업복, 린넨, 및 시트를 보관하는 폐쇄형 캐비닛, 서랍, 또는 용기.

(4) 기구와 장비를 소독하는데 사용하는 소독제 용기. 반드시 “소독제” 라고 표시된 라벨을 붙여야 한다.



(5) (4)번 항목에서 명시된 용기에는 기구를 완전히 담글 수 있는 충분한 소독제가 들어 있어야 한다.

(6) 전기분해요법이 시술될 경우, 982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압스팀멸균기 또는 건식 열소독기구.

(b) 시설과 학교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소독재를 혼합하여야 하고 항상 사용 할 수 있도록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c) 제조업체 라벨이 부착된 소독제 용기가 항상 시설 또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남은 소독제를 다 사용했다면, 제조업체 라벨이 부착된 빈 소독제 용기가 남아 있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979.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의 소독**

(a) 가위를 제외하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소독가능한, 모든 기구는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

(1) 눈에 보이는 찌꺼기를 제거한다.

(2) 비누 또는 세제와 물로 세척한다.

(3)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종이 타월로 완전히 기구의 물기를 제거한다.

(4) 그런 다음,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가 입증된 EPA 등록 소독제에 완전히 담군다.

(5) 면허 소지자 또는 학생은 기구를 소독제에서 꺼낼 때 보호장갑을 착용하거나, 집게를 사용해야 한다.

(b) (a) 항목에서 명시된 소독제는 다음과 같이 다루어야 한다.

(1) 항상 뚜껑을 닫아 두어야 한다.

(2) 탁해보이거나 찌꺼기가 떠다니면,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c) 고객에게 사용했거나 더러워진 기구는 “더러운”, “때묻은”, 또는 “오염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d) 소독된 모든 기구는 “깨끗한” 또는 “소독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e) 소독한 기구는 소독할 수 없는 용기, 파우치, 또는 홀더에 두지 말아야 한다.

(f) 가위는 다음 절차에 따라 소독해야 한다.

(1) 보이는 찌꺼기를 제거한다.

(2) 비누 또는 세제와 물로 세척한다

(3)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가 입증된 EPA 등록 소독제를 뿌리거나 물티슈 형태의 소독제로 닦는다.



(g) 소독한 가위는 소독할 수 없는 용기, 파우치, 또는 홀더에 두지 말아야 한다.

(h) 이 항에 명시된 기구를 982 항의 요건에 따라 살균한 경우, 이 항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980. 전기 기구의 소독.**

(a) 클리퍼와 다른 전기 기구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전에 소독해야 한다.

(1) 우선, 보이는 찌꺼기를 제거한다.

(2)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가 입증된 EPA 등록 소독제를 뿌리거나 물티슈 형태의 소독제로 닦는다.

(b) 모든 소독한 전기 기구는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c) 고객에게 사용했거나 더러워진 전기 기구는 “더러운”, “때묻은”, 또는 “오염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가열식 스타일링 기구는 제외).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980.1. 월풀 풋스파와 공기방울 족욕기 청소와 살균 절차**

(a) 이 항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월풀 풋스파” 또는 “스파”는 순환하는 물을 사용하는 모든 족욕기로 정의된다.

(b) 공기방울 족욕기는 공기방울 스트림 시스템을 사용하여 물을 순환시키는 족욕기로 정의된다.

(c) 각 월풀 풋스파 또는 공기방울 족욕기는 고객에게 사용 후 다음 순서의 절차에 따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1) 족욕기에서 물을 완전히 빼낸다.

(2) 족욕기의 안쪽 벽을 문질러 닦고 깨끗한 솔과 액체 비누(비누 제품 라벨이 부착된 제품), 물로 눈에 보이는 찌꺼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3) 물로 스파 족욕기를 헹군다.

(4) 스파 족욕기를 깨끗한 물로 다시 채운다.

(5) 족욕기의 물은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소독제를 넣어서 최소 10 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6) 스파 족욕기의 물을 빼고 행군 다음 깨끗한 종이 타월로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

(7)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사용 후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d) 매일 일과 종료시, 마지막 고객 이용 후 월풀 풋스파 또는 공기방울 족욕기는 다음의 순서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1) 스크린과 기타 모든 분리 가능한 부품을 분리한다.

(2) 스크린과 족욕기의 안쪽, 기타 분리 가능한 부품, 그 부품의 후면에서 눈에 보이는 찌꺼기를 깨끗한 솔과 액체 비누(비누 제품 라벨이 부착된 제품), 물을 사용해서 문질러 닦아낸다.

(3) 깨끗한 스크린과 기타 모든 분리 가능한 부품을 다시 삽입한다.

(4) 따뜻한 물과 세제(세제 제품 라벨이 부착된 제품)를, 족욕기에 채우고 스파 시스템을 통하여 최소 10 분 동안(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세제를 순환시킨다.

(5) 세제 용액을 배출하고 족욕기를 행군다.

(6) 족욕기에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우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병원용 액체 소독제를 넣어서 최소 10 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7) 물을 배출시키고 행군 다음 깨끗한 새 종이 타월로 닦아 족욕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8)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하루 일과 종료시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e) 최소 일주일에 한 번, (d) (1 ~ 6) 항목에 규정된 절차를 시행 한 후 각 월풀 풋스파와 공기방울 족욕기의 물을 배출하지 않고 다음의 절차를 순서대로 시행해야 한다.

(1) 소독제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 기구의 전원을 끄고 소독제를 최소 6 시간 동안 그냥 둔다.

(2) 최소 6 시간 동안 소독제를 그대로 둔 다음 소독제를 배출하고 깨끗한 물로 행군다.

(3) 깨끗한 물로 족욕기를 다시 채우고 시스템에서 물을 배출시킨다.

(4)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매주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f) 고객이나 위원회 담당자가 요청시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를 제공해야 한다.





(g) “비사용중” 월풀 스파는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반드시 그 풋스파가 비사용중임을 표기해야 한다. 그 풋스파에는 “비사용중” 표지판을 의자에 올려 전시해야 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h) 이 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 벌금 및/또는 징계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항을 준수하지 않은 각각의 월풀 풋스파 또는 공기방울 족욕기에 대해 별도로 위반 처리가 될 수 있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980.2. 파이프 없는 풋스파의 청소 및 소독 절차. 980.2. 파이프 없는 풋스파의 청소 및 소독 절차.**

(a) 이 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파이프 없는” 풋스파는 발판, 임펠러, 임펠러 장치와 프로펠러가 장착된 기구로 정의 된다.

(b) 각각의 파이프 없는 풋스파는 고객에게 사용 후 다음 순서의 절차에 따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1) 스파 족욕기에서 물을 완전히 빼낸다.

(2)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발판과 모든 분리 가능한 부품을 분리한다.

(3) 임펠러, 발판, 족욕기 안쪽 및/또는 기타 부품. 부품 뒤 또는 아래를 깨끗한 솔과 액체 비누 (비누 제품 라벨이 부착된 제품), 물을 사용해서 보이는 모든 찌꺼기를 문질러 닦아낸다. 그런 다음 깨끗한 물로 헹군다.

(4) 깨끗이 청소된 발판 또는 기타 부품을 다시 조립한다.

(5) 족욕기에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우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병원용 액체 소독제를 넣어서 최소 10 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6) 물을 배출시키고 헹군 다음 깨끗한 새 종이 타월로 닦아 족욕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7)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사용 후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c) 매일 일과 종료시, 마지막 고객 이용 후 파이프 없는 풋스파는(b) (1 ~ 7) 항에서 설명한 순서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1) 따뜻한 물과 세제 (그러한 라벨이 붙어있는 세제 제품)를, 족욕기에 채우고 스파 시스템을 통하여 최소 10 분 동안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세제를 순환시킨다.

(2) 세제 용액을 배출하고 족욕기를 헹군다.

(3) 족욕기에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우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병원용 액체 소독제를 넣어서 최소 10 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4) 물을 배출시키고 행군 다음 깨끗한 새 종이 타월로 닦아 족욕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5) 족욕기가 완전히 마를때까지 둔다.

(6)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하루 일과 종료시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d) 최소 일주일에 한 번, (c) (1 ~ 3) 항목에 규정된 절차를 시행 한 후 각각의 파이프 없는 풋스파의 물을 배출하지 않고 다음의 절차를 순서대로 시행해야한다:

(1) 소독제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 기구의 전원을 끄고 소독제를 최소 6 시간 동안 그냥 둔다.

(2) 최소 6 시간 동안 소독제를 그대로 둔 다음, 행군 다음 깨끗한 새 종이 타월로 닦아 족욕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3)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매주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e) 고객이나 위원회 담당자가 요청시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를 제공해야 한다.

(f) “비사용중” 월풀 스파는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반드시 그 풋스파가 비사용중임을 표기해야 한다. 그 풋스파에는 “비사용중” 표지판을 의자에 올려 전시해야 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g) 이 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 벌금 및/또는 징계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항을 준수하지 않은 각각의 파이프 없는 풋스파에 대해 별도로 위반 처리가 될 수 있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과 7406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980.3. 월풀이 아닌 발대야 또는 발욕조의 청소 및 소독**

(a) 이 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월풀이 아닌 발대야” 또는 “발욕조” 는 모든 대야, 욕조, 족욕기, 싱크 등 페디큐어 서비스 시 고객의 발을 씻기 위해 물을 담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장비를 의미한다.

(b) 각각의 월풀이 아닌 발대야 또는 발욕조는 고객에게 사용 후 다음 순서의 절차에 따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1) 발대야 또는 발욕조에서 물을 완전히 빼낸다.

(2) 발대야 또는 발욕조 안쪽 면을 깨끗한 솔과 액체 비누 (비누 제품 라벨이 부착된 제품), 물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찌꺼기를 문질러 닦아낸다.



(3) 발대야 또는 발욕조를 깨끗한 물로 헹군다.

(4) 발대야 또는 발욕조에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우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의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정확한 양(혼합 지침을 확인하려면 제조업체의 라벨 확인)의 EPA 등록 병원용 액체 소독제를 넣어서 최소 10 분 동안 순환시켜야 한다.

(5) 물을 배출시키고 헹군 다음 깨끗한 새 종이 타월로 닦아 대야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6)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사용 후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c) 고객이나 위원회 담당자가 요청시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를 제공해야 한다.

(d) 이 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 벌금 및/또는 징계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항을 준수하지 않은 각각의 월풀이 아닌 발대야 또는 발욕조에 대해 별도로 위반 처리가 될 수 있다.

(e) 모든 소독한 대야나 욕조는 깨끗하고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청결” 또는 “소독 완료” 라벨을 달아서 보관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과 7406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980.4 일회용 발대야 또는 발욕조용 라이너**

(a) 발대야 또는 발욕조 전용으로 깔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회용, 사용 후 버릴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한 라이너는 사용 즉시 만약의 감염이나 재사용을 막기 위해 버려야 한다.

(1) 페디큐어 대야용 라이너를 버리고나면 발대야 또는 발욕조를 깨끗한 솔과 액체 비누 (비누 제품 라벨이 부착된 제품), 물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찌꺼기를 문질러 닦아야 한다. 발대야 또는 발욕조를 깨끗한 물로 헹군 다음 깨끗한 새 종이 타월로 닦아 대야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에 이러한 절차를 기록한다. 이 일지에는 각 청소 날짜, 시간, 소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사용 후 청소를 시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3) 고객이나 위원회 담당자가 요청시 페디큐어 장비 청소 일지를 제공해야 한다.

(4) 라이너를 사용하는 시설이나 학교는 반드시 발 욕조 대야당 다섯 (5) 개의 라이너를 준비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과 7406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981. 기구 및 용품**

(a) 고객의 신체와 직접 닿고 소독할 수 없는 모든 기구와 용품(버퍼, 푸미스 스톤, 왁스 스틱, 발가락 분리대, 장갑, 면패드, 스폰지, 에머리보드, 넥스트립을 포함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음)은 한 사람의 고객에게 사용 후 즉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b) 새 제품과 일회 사용 후 폐기할 수 있는 기구들은 깨끗하고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새 제품” 이라는 라벨을 붙여서 보관해야 한다.

(c) 시설 또는 학교에서 근무 또는 교육 중인 사람은 사업 및 전문업법 7316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행위를 하는 동안 의류 또는 유니폼에 어떠한 기구 또는 용품도 넣거나 달고 다니지 않아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9(e) 항.

**982. 전기분해 요법 기구의 살균**

(a) 학교와 시설에서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에 소독할 수 있는 모든 전기분해 요법 기구는, 일회용, 사전 소독, 사용 후 폐기 제품인 바늘/와이어 필라멘트를 제외하고, 다음에 나오는 방법 중 한 방법으로 살균해야 한다.

(1) 비누나 세제를 사용해서 물로 세척하고 (초음파 장비도 사용 가능),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소독한다.

(A)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 (FDA) 등록 가압스팀멸균기 사용.

(B)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 (FDA) 등록 건식 열소독기구 사용.

(C) 반드시 각각의 소독된 패키지에서 소독 과정이 완료되었는지 표시해 주는 화학적 (색변화)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2) 모든 소독된 기구는 사용 할 때까지 소독된 패키지 안에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이 패키지는 손상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소독 완료” 또는 “살균”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3) 고객에게 사용했거나 더러워진 기구는 “더러운”, “때묻은”, 또는 “오염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4) 멸균장비는 매주 점검을 통하여 제조업체 지침에서 요구하는 온도에 도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 일회용, 사전 소독, 사용 후 폐기 전기분해 요법 바늘/와이어 필라멘트는, 사용 즉시, 사용 전이라도 오염이 되었거나, 열어 보았을 때 손상되었을 경우, 반드시 구멍 방지 바늘 처분 용기에 넣어야 한다. 3/4 이상 바늘 처분 용기가 차면 유해 폐기물로 처리해서 버리고 새 것으로 교환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983. 개인 청결**

(a) 고객을 대하는 면허 소지자와 학생은 항상 의복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b)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면허 소지자와 학생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수행하기 바로 전에 비누와 물 또는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알콜 베이스의 손세정제를 사용해서 손을 철저히 씻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984. 질병 및 감염**

(a) 시설 또는 학교는 면허 소지자나 학생이 고객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된 것을 인지하고서, 시설이나 학교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담당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b) 시설 또는 학교는 고객이 면허 소지자와 학생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된 것을 인지하고서 그 고객에게 면허 소지자와 학생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c) 면허 소지자 또는 학생과 고객 간에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 또는 기생충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감기 또는 인플루엔자, 열을 동반하는 기타 호흡기 질환, 해열 후 24 시간까지.

연쇄상구균 인두염 (“패혈성 인두염”), 치료 시작 후 24 시간 또한 해열 후 24 시간까지.

화농성 결막염 (“핑크 아이”), 의사나 다른 자격증있는 임상 의가 업무 복귀를 승인할 때 까지.

백일해 (“우핑코프”), 5 일 간의 항생제 치료가 끝날 때까지.

수두 (“치킨팍스”), 발진이 생긴 후 6 일까지 또는 병소가 마르고 딱지가 생긴 경우 이 보다 일찍.

유행성이하선염, 이하선이 붓기 시작한 후 9 일까지.

폐결핵, 지역 보건당국이 전염성이 없다고 확신할 때까지.

농가진 (박테리아 피부 감염), 치료 시작 후 24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기생증 (머릿니), 첫번째 치료 후 다음 날 아침까지.

옴 (“옴벌레”),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d) HIV/AIDS 와 B 형 간염 (HBV) 등 혈액 매개 질환은 이 장의 목적상 전염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 시설 또는 학교에서 근무 또는 교육하는 사람은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찰과상이나 베인 상처 등), 피부 감염이나 발진이 있는 사람의 피부나 두피에 서비스하지 아니한다. 또한 시설 또는 학교에서 근무 또는 교육하는 사람의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피부 감염이나 발진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장갑을 착용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없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보건안전법 121365 항.

**985. 넥스트립**

위생적인 넥스트립 또는 수건은 고객의 케이프 같은 보호용 덮개가 고객의 목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986. 목털이개 및 브러시**

(a) 시설이나 학교에서 고객에게 사용하는 목 또는 손톱 털이개와 다른 모든 메니큐어 브러시는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척해야 한다.

- (1) 눈에 보이는 모든 찌꺼기를 제거한다.
- (2) 비누 또는 세제로 물로 깨끗이 세척한다.
- (3) 먼지털이개와 브러시를 말린다.
- (4) 깨끗한 먼지털이개와 브러시를 “청결”이라고 라벨을 붙여서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다.

(5) 고객에게 사용되었거나 오염된 모든 털이개와 브러시는 “더러운”, “때문은”, 또는 “오염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b) 시설이나 학교에서 고객에게 사용하는 천연 섬유, 페이셜, 아크릴, 겔, 네일아트와 화장용 브러시는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척해야 한다.

- (1) 눈에 보이는 모든 찌꺼기를 제거한다.
- (2) 모너머, 메이크업 브러시 액체/스프레이 클리너, 알콜 등의 세정제를 사용해서 세척한다.
- (3) 브러시를 말린다.
- (4) 깨끗한 브러시를 “청결”이라고 라벨을 붙여서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다.

(5) 고객에게 사용되었거나 오염된 브러시는 “더러운”, “때문은”, 또는 “오염된”이라고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987. 수건**

(a) 수건, 시트, 로브, 린넨, 또는 작업복은 한 번 사용한 후 뚜껑이 달린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세탁과 위생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b) 수건, 시트, 로브, 린넨, 또는 작업복은 일반 상업 세탁 또는세탁이나 행굼 과정에서 화씨160 도 이상의 물에 25 분이상 담가두는 과정이 포함된 비상업적 세탁으로 세척해야 한다. 만약 제조사의 세탁기, 건조기, 세제, 린스 에이드 및 다른 첨가제 지침에 따라 상업적 세탁에서 찬물에서도 미생물을 줄여주는 화학약품을 사용한다면 이것 또한 가능하다. 세탁 세제가 반드시 항균세제일 필요는 없다.

(c) 모든 깨끗한 수건, 시트, 로브, 린넨, 또는 작업복은 깨끗하고 노출되지않는 캐비넷이나 용기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988. 액체 용품, 크림, 파우더, 화장품**

(a) 모든 액체 용품, 크림, 왁스, 샴푸, 젤, 및 기타 화장 조제품은 깨끗하고 뚜껑이 달린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파우더는 깨끗한 쉐이커에 보관할 수 있다

(b) 모든 병과 용기에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잘 알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유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모든 병과 용기에는 추가로 명확하게 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제조자 부착 라벨이 붙어있는 용기에 둔채 그대로 사용하는 유독성 물질의 경우는 추가로 라벨을 붙일 필요가 없다.

(c) 화장 조제품의 일부를 고객에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나머지가 오염되지 않는 방식으로 용기에 덜어내야 한다.

(1) 이 조항은 병원균을 전파하지 않는다고 입증된 화장조제품 ( 메니큐어 제품, 인조 모노머액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펜슬 화장품은 사용전에 깎아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989. 금지된 유해 물질/제품의 사용**

시설 또는 학교에서는

(a) 미국 식품의약안전국에서 화장품으로 사용을 금지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구내에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b) 메타클리산메탈액 및/또는염화메틸렌을 구내에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c) 미국 식품의약안전국(FDA) 또는 미국 직업안전보건국(EPA)에서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990. 머리받이, 샴푸트레이, 대야 및 트리트먼트 테이블**

(a) 의자의 머리받이는 고객이 바뀔 때마다 깨끗한 타월이나 종이로 덮어야 한다.

(b) 샴푸트레이와 대야는 샴푸가 끝난 후 비누와 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하며, 관리를 잘해서 항상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c) 트리트먼트 테이블에는 사용 후에 반드시 깨끗한 전용 트리트먼트 테이블 종이, 깨끗한 수건, 또는 깨끗한 시트를 깔아야 한다. 수건이나 시트는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즉시 트리트먼트 테이블에서 제거해서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용기에 넣고, 세탁과 위생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용 트리트먼트 테이블 종이는 한 번 사용 후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991. 침습적 시술**

(a) 면허 소지자와 학생은 고객의 표피 이상의 피부를 제거, 파괴, 절개, 또는 피어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 기기, 기계, 또는 그 외 다른 기술, 또는 이상의 것들의 조합을 사용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행위는 침습적 시술로 간주될 것이다.

(b) 침습적 시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근육을 눈에 띄게 수축시키는 전기의 시술.

(2) 구입하려면 의료면허가 필요한 국부 로션, 크림, 세럼 또는 이 외 다른 물질의 사용.

(3) 전기분해 요법 바늘/와이어 필라멘트를 제외한 금속 바늘을 피부에 삽입하는 행위.

(4) 표피 아래 층의 피부를 긁어내거나 벗겨내는 행위.

(5) 면도날이 끝에 달린 도구나 비슷한 도구를 사용해서 피부를 제거하는 행위.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7316 항, 7320 항, 7320.1 항.

**992. 피부 각질제거**

(a) 미용 목적으로 오직 표피라고 불리는 피부의 가장 바깥쪽 세포층만을 어떠한 방법 또는 수단을 이용해서든 제거할 수 있다.

(b) 표피 외에 피부의 살아있는 세포층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박피 기술은 금지되어있다.

(c) 피부 각질제거 용도로는 의료 목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일반의약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d)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모든 각질제거 제품은 반드시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7316 항, 및 7320 항.

**993. 금지된 기구**

(a) 시설이나 학교는 굳은 살을 제거할 용도로 또는 기타 유사한 시술을 위해 예리한 칼날이 끝에 달린 기구를 구내에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b) 시설이나 학교는 기미 제거와 기타 유사한 시술을 위해 바늘과 유사한 도구를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7320 항, and 7320.1 항.

**994. 청결 및 유지보수**

(a) 시설이나 학교는 바닥, 벽, 목조부, 천장, 가구, 비품, 건물 부착된 설비를 청결하고 관리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b) 시설이나 학교는 쓰레기, 잘라낸 머리카락 더미 또는 폐기물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항.

**995. 건물 표준**

(a) 시설 및 학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24편1203항 2부에 따라 적절한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b) 냉온수 상수도의 공급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24 편601.3.1항 5부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

(c) 시설 및 학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24편 601.3.3항 5부에 따라 음용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d) 시설 및 학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24편601.3.2 항 5 부에 따라 세면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e) 시설 및 학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24편422.6, 422.7항 5부와 표 422.1 에 따라 공중 화장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e) 및 7352 항.



**998. 수수료 요율표**

위원회는 다음 수수료(달러화 기준)를 부과한다.

- (a) 이발사:
  - (1) 예비 지원 수수료 . . . . . 9
  - (2) 지원 및 시험 수수료 . . . . . 75
  - (3) 최초 면허 수수료 . . . . . 50
  - (4) 면허 갱신 수수료 . . . . . 50<sup>1</sup>
  - (5) 면허 갱신 과태료 . . . . . 25<sup>1</sup>
- (b) 미용사:
  - (1) 예비 지원 수수료 . . . . . 9
  - (2) 지원 및 시험 수수료 . . . . . 75
  - (3) 최초 면허 수수료 . . . . . 50
  - (4) 면허 갱신 수수료 . . . . . 50<sup>1</sup>
  - (5) 면허 갱신 과태료 . . . . . 25<sup>1</sup>
- (c) 피부미용사:
  - (1) 예비 지원 수수료 . . . . . 9
  - (2) 지원 및 시험 수수료 . . . . . 75
  - (3) 최초 면허 수수료 . . . . . 40
  - (4) 면허 갱신 수수료 . . . . . 50<sup>1</sup>
  - (5) 면허 갱신 과태료 . . . . . 25<sup>1</sup>
- (d) 매니큐어사:
  - (1) 예비 지원 수수료 . . . . . 9
  - (2) 지원 및 시험 수수료 . . . . . 75
  - (3) 최초 면허 수수료 . . . . . 35
  - (4) 면허 갱신 수수료 . . . . . 50<sup>1</sup>
  - (5) 면허 갱신 과태료 . . . . . 25<sup>1</sup>
- (e) 전기분해요법 기술사:
  - (1) 예비 지원 수수료 . . . . . 9
  - (2) 지원 및 시험 수수료 . . . . . 75
  - (3) 최초 면허 수수료 . . . . . 50
  - (4) 면허 갱신 수수료 . . . . . 50<sup>1</sup>
  - (5) 면허 갱신 과태료 . . . . . 25<sup>1</sup>
- (f) 도제 지원 및 면허 수수료<sup>2</sup> . . . . . 25
- (g) 시설:
  - (1) 지원 및 최초 면허 수수료 . . . . . 50
  - (2) 면허 갱신 수수료 . . . . . 40<sup>1</sup>
  - (3) 면허 갱신 과태료 . . . . . 20<sup>1</sup>
- (h) 이동 설비차:
  - (1) 지원 수수료 . . . . . 50
  - (2) 최초 면허 수수료 . . . . . 100
  - (3) 면허 갱신 수수료 . . . . . 40<sup>1</sup>
  - (4) 면허 갱신 과태료 . . . . . 20<sup>1</sup>



<sup>1</sup> 이 수수료는 2007 년 12 월 21 일 또는 이후에 만료되는 모든 면허에 적용된다.

<sup>2</sup> 도제 면허는 갱신할 수 없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7337.5(b), 7421 항. 참조: 사업 및 전문업법 7415, 7417, 7418, 7420, 7423, 7423.5, 7424, 7425 항.**

## 13 조. 수입

### 999. 부도 수표에 대한 수수료

지불되지 않고 되돌아온 개인 수표에 대한 수수료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소비자국에서 그 금액을 정한다. 부도 수표의 상환 이외에 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 인용 근거: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 민법전 1719 항 및 정부 법전 6157 항.**







## 발행

California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P.O. Box 944226  
Sacramento, CA 94244-2260  
(800) 952-5210  
[www.barbercosmo.ca.gov](http://www.barbercosmo.ca.gov)

2016 이미용 법률 및 이미용 규정집의 재판매를 금지합니다.  
모든 사본은 반드시 무상으로 배포되어야 합니다.